

225474124467  
448841489972  
83426781  
5247125  
6148486525565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2020 Vol.19, No.2 통권 제57호

Quarterly Journal

2020 Vol.19, No.2 통권 제57호



##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



외교부

www.mofa.go.kr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외교부



## 국제법 동향과 실무 논문 모집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통고
- **원고작성:** 한글(HWP) 또는 MS-Word로 작성한 원고로 A4용지 15매 내외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기타 인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기고요령을 참조
- **원고제출:** 매분기말의 전월 말(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논문 파일을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e-mail이나 우편으로 제출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계간지담당자앞**  
 전화: (02) 2100-7536  
 전송: (02) 2100-7967  
 전자우편: shkwon15@mofa.go.kr

- **게재결정:**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법 동향과 실무 인터넷 열람 안내

[www.mofa.go.kr](http://www.mofa.go.kr)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에 게재된 전체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http://www.mofa.go.kr))를 통해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발간부수로 인하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문의처** 국제법규과

전화: (02) 2100-7536  
전송: (02) 2100-7967  
전자우편: shkwon15@mofa.go.kr



225474124467

448841489972

83426781

5247125

6148486525565

# 국제법 동향과 실무

[www.mofa.go.kr](http://www.mofa.go.kr)

**2020** Vol.19, No.2 통권 제57호

Quarterly Journal



외교부



**Contents**

▶ **조약체결 및 국제회의 동향**

- 2020년 1/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 5
- 2020년도 1/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 8
- 해양경제계획정 관련 몬트리올대학 법대 주관 전문가 워크숍 참석 ..... 김재우 10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 대한 국내학계의 최근 논의 동향 분석  
- 시제법의 확장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 정동은 16
- 최근 국제형사재판소 판결 동향과 시사점 - *Al Hassan* 사건 항소심재판부 판결과  
아프가니스탄 수사개시 허가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박미경 40

▶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 UN 문서

- 총회 ..... 51
  -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 연대 관련 결의
  -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의 새 기관, 아루샤 지부의 건설에 관한 결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품, 백신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전세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 안전보장이사회 ..... 53
  - 비확산/북한에 관한 결의
  - 남수단 상황 관련 결의
- 사무총장 ..... 54
  - 에이즈 대응의 불평등 해소와 다음 단계의 준비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유엔 총회 제출, 2020. 4. 1. 배포)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연설 (2020. 4. 18.)
  -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 (2020. 5. 18.)
- 국제법위원회 ..... 56
  - 국제법위원회 제72차 회기

(2)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J ..... 67
  - ICJ,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 채택
  - ICJ,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 연장 결정

- ICJ,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기간 동안 재판소 임무 이행을 위한 조치 일련의 채택
- ICJ, *파테말라의 유지, 도서 및 해양에 관한 청구(파테말라/벨리즈)*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 및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 ICJ,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사건(Somalia v. Kenya)* 공개심리 연기
- ICJ,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감비아 v. 미얀마*) 사건의 최초 소송서류 제출 기한 연장
- ICJ,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 (가이아나 v. 베네수엘라)* 사건 공개심리 화상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LOS .....</li> <li style="padding-left: 20px;">- ITLOS, 새 사무차장에 프랑스 출신의 Antoine Ollivier 선출</li> <li style="padding-left: 20px;">- ITLOS, 토머스 멘사 전 ITLOS 재판관 서거 발표</li> <li>• PCA .....</li> <li style="padding-left: 20px;">- <i>후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우크라이나 v. 러시아)</i> 사건에 관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중재재판 판정 선고 및 공개</li> <li>• ICC .....</li> <li style="padding-left: 20px;">- ICC 상소심재판부, 아프가니스탄 수사 개시 허가</li>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사건: ICC 상소심재판부, ICC의 재판적격성 인정 확정</li> <li style="padding-left: 20px;">- ICC 소장단, <i>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i> 사건을 담당할 1심재판부 V를 구성</li> <li style="padding-left: 20px;">- Al Hassan 사건: ICC 전심재판부 I, 공소사실 변경 수락</li> <li style="padding-left: 20px;">- ICC 전심재판부 II, 장-피에르 뱌바의 보상 및 피해 청구 기각 결정</li> <li style="padding-left: 20px;">- ICC 상소심재판부, 그바그보와 블레 구데의 석방 조건 변경</li> </ul>	<p>84</p> <p>87</p> <p>91</p>
--	-------------------------------

## ▶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법 관련 국내법 .....</li> <li style="padding-left: 20px;">- 여권법 시행령</li> <li style="padding-left: 20px;">- 해양경비법 시행령</li> <li style="padding-left: 20px;">- 검역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li> <li style="padding-left: 20px;">- 출입국관리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li style="padding-left: 20px;">-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li> <li style="padding-left: 20px;">- 국제개발협력기본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외무공무원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li style="padding-left: 20px;">-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li style="padding-left: 20px;">- 재외동포재단법</li> <li style="padding-left: 20px;">-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li> <li style="padding-left: 20px;">-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li> <li style="padding-left: 20px;">-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li> </ul>	<p>103</p>
---	------------

- 국제법 관련 판례 ..... 111
-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가 국내에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한 판단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대상인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
-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이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본 판결

## ▶ 국제법 관련 새소식

- 외교부 소식 모음 ..... 126
-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 157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 162
-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 ..... 166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 169



# 2020년 1/4분기 발효된 양자간 조약

## I. 2020년도 1/4 분기 신규 발효조약 목록

- 2020년도 1-3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 조약 중 발효된 조약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상호 신뢰에 관한 협정
  -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 II. 조약별 개관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12일 / 2019년 12월 27일, 세종/하노이에서 교환
- 발효일 : 2020년 1월 1일 (조약 제2447호)

### ● 주요내용

-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물량 중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완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배분되는 국별할당물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12일 / 2019년 12월 30일, 세종/워싱턴에서 교환
- 발효일 : 2020년 1월 1일 (조약 제2448호)

### ● 주요내용

-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물량 중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완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에 배분되는 국별할당물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3.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 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7월 16일 두산베에서 서명
- 발효일 : 2020년 1월 13일 (조약 제2452호)

●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 연수 프로그램에 타지키스탄공화국 국민 초청, 타지키스탄공화국에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 물자 제공, 시설 건축 등의 무상원조를 자체 비용으로 수행함.
-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역에 한국국 제협력단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파견인력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함.

4.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상호신뢰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18일 베른에서 서명
- 발효일 : 2020년 1월 15일 (조약 제2451호)

● 주요내용

- 이 협정은 대한민국 또는 스위스 내에서 상업용으로 제조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인체용 의약품에 적용됨.
- 당사국은 제조소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절차로서 상대 당사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증명서를 신뢰함.

5.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서명
- 발효일 : 2020년 2월 6일 (조약 제2453호)

●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문에 명시함.
- 한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그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서명
- 발효일 : 2020년 2월 12일 (조약 제2454호)

● 주요내용

-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당사국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경유 및 체류하기 위한 사증 취득이 요구되지 않음.
-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람 등은 입국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적절한 입국 사증을 취득하도록 요구됨.

7.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2월 27일 서울에서

서명

- 발효일 : 2020년 2월 29일 (조약 제2455호)

● 주요내용

-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함.
- 한쪽 체약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 2020년도 1/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개관

## I. 2020년도 1/4분기 신규 가입 다자조약 목록

- 2020년도 1/4분기 대한민국 정부가 신규로 가입한 다자조약은 다음과 같다.
  -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완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 II. 협약 개관

1.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완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발효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THAI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12일 (세종)
- 발효일 : 2020년 01월 01일
- 관보게재일 : 2020년 04월 08일

### ● 주요내용

- 이 협정안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울관세할당물량 408,700톤 중 388,700톤에 대한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국, 미합중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5개국의 국별할당물량 및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국별할당물량을 배분 받는 위 5개국으로 하여금 2014년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우리나라 쌀 수정양허표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하도록 함.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발효  
(AMENDMENTS TO ANNEXES A AND C TO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7년 05월 (제네바에서 채택)
- 발효일 : 2018년 12월 18일
- 기탁처 : 국제연합 사무총장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수락서 기탁일 : 2019년 11월 22일
- 발효일 : 2020년 02월 20일
- 관보게재일 : 2020년 03월 09일

● **주요내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관련 내용을 추가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단쇄염화파라핀 관련 내용을 추가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씨(C)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 관련 내용을 추가함.

3.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3년 10월 10일 (구마모토에서 채택)
- 발효일 : 2017년 08월 16일
- 기탁처 : 국제연합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2019년 11월 22일
- 발효일 : 2020년 02월 20일
- 관보게재일 : 2020년 03월 09일

● **주요내용**

- 당사국의 수은 수출은, 수입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사용 등의 목적에 한정하여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이 협약의 비당사국이 해당 수은이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사용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포함하는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이 협약에 예외로 명시되었거나 협약에 따라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에 등재된 수은첨가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에 규정된 단계적 철폐일 후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음.

- 이 협약에 따라 면제가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별 공정별로 협약에 명시된 단계적 철폐일 후 제조공정에서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 영세 및 소규모 금채광과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수은을 섞어 아말감(amalgam)화 하는 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사용·배출 및 방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함.
-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기 중으로의 배출과 토양 및 물로의 방출을 통제하고, 협약에 등재된 배출원 또는 방출원을 보유한 당사국은 국가계획에 최적가용기술 등을 도입하고 이행함.
-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을 위한 용도에 해당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임시 보관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
- 수은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지침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해서만 회수, 재활용, 재생 또는 직접 재사용되도록 함.
-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정보, 배출 및 방출의 감축이나 제거에 대한 정보, 실현 가능한 대체재에 관한 정보 등의 교환을 활성화 함.
- 당사국총회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준 동향과 이동성 등 비교 가능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협약의 효과성을 평가함.

# 해양경계획정 관련 몬트리올대학 법대 주관 전문가 워크숍 참석

김재우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영사)

2020년 2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몬트리올에서 몬트리올대학 법대의 수잔 라롱드(Suzanne Lalonde) 교수가 조직한 「Fifty Years After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Has an equitable solution to maritime delimitation boundary been found?」 제하의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재판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판결(이하 “북해대륙붕 판결”)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는 자리였다.<sup>1)</sup> 여기에는 버나드 옥스만(Bernard Oxman) 마이애미대 교수, 파얌 아카반(Payam Akhavan) 맥길대 교수, 콜린 소즈(Colleen Swords) 전 캐나다 외교부차관보/외교장관 법무보좌관, 아망 드 미스트랄(Armand de Mestral) 맥길대 명예교수, 한국의 이석우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고 필자도 이들 저명한 학자 틈에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북해대륙붕 판결은 중간선/등거리선 방식이 대륙붕 경계획정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대륙붕 경계획정 시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여 경계획정을 해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반면, 정확히 40년 후인 2009년, ICJ는 북해대륙붕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와 대조적으로 루마니아 v. 우크라이나 흑해 경계획정 판결(이하 “흑해 판결”)에서 잠정중간선/등거리선 설정 → 관련 사정을 고려한 조정 → 관련 해안선 길이와 수역 면적의 불비례성 테스트<sup>2)</sup>의 3단계 경계획정 공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국제재판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에서는 예외 없이 3단계 공식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3단계 기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케이스에 있어서는 3단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소수의견이 재판관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3)</sup> 이번 워크숍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 의식적으로 배제되었는데 잠정중간선/등거리선 설정을 해양경계

2) 3단계 기법의 마지막 단계는 *disproportionality test*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비례성 테스트라고 번역한다. 여기서는 원어에 충실하게 불비례성 테스트라고 사용한다. 불비례성 테스트는 1단계 및 2단계를 통해 확정된 잠정 경계선이 비례에 맞도록 조정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잠정 경계선이 현저하게 불비례할 경우 조정을 검토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불비례성 테스트라는 용어가 정확하다고 본다.

3) 예를 들어, 2012년 11월19일의 ICJ의 니카라과 v. 콜롬비아 판결에서 Xue 재판관은 쟁점이 된 콜롬비아의 섬들이 니카라과 본토에 근접해 있는 지리적 구조,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관련 해안선 길이의 현격한 격차 등으로 인해 잠정 중간선 설정에서 시작하는 3단계 기법의 적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선언을 첨부하였다(다만, Xue 재판관도 재판부의 경계획정 결과는 형평하다는 점에서 판결 결론에는 동의하였다).

1) 다만, 실제 워크숍에서는 북극 문제, 남중국해 문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등 해양경계획정 이외의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북극 문제가 중요한 해양관심사이며 참석한 캐나다 해양 전문가들은 북극 전문가이기도 했다.

획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주장, 3단계 기법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제기된 해양경계획정 관련 주요 주장 중 중간선/등거리선 원칙 중시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제재판소의 실행에 있어서도 ICJ의 니카라과 v. 콜롬비아 해양경계획정 판결(2012년 11월 19일) 결과를 예로 들면서 3단계 기법을 적용해도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2012년 3월 14일과 2014년 7월 7일에 있었던 벙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sup>4)</sup> 재판부가 ① 큰 틀에서는 3단계 기법을 채택하였지만 ②제2단계의 “관련 사정을 반영한 조정” 단계에서 벙골만 연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형평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40년의 시차를 두고 탄생한 두 주요 판결의 상충되어 보이는 이론을 조화롭게 수용하였다는 요지로 발표하였다. 2012년 ITLOS의 판결에 임시재판관으로 참여했던 버나드 옥스만 교수와 두 건 모두에서 방글라데시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파얌 아카반 교수 앞에서 관련 판결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옥스만 교수는 이틀 회의 중 첫날 회의 참석 후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였고 발표 당일 계속 자리를 지키던 아카반 교수는 긴급한 통화를 하느라고 필자의 발표시간 약 30분 간 자리를 비웠다.

이하는 “Revisit to the Bay of Bengal Cases: Continental Shelf beyond 200nm, grey area and beyond”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필자의 발표내용이다.<sup>5)</sup>

4)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Bay of Bengal (Bangladesh/Myanmar), Judgment, ITLOS Reports 2012, p.4 및 In the matter of the Bay of Bengal Maritime Boundary Arbit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and the Republic of India (July 7, 2014)

1969년 북해대륙붕 판결 이후 국제재판부들은 다수의 해양경계획정 판결을 통해 해양경계획정 관련 판례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양경계획정 관련 판례법을 통해 축적된 법리에 기초하여 ICJ는 2009년 2월 3일의 흑해 판결에서 그 유명한 3단계 획정 기법을 확립하였다.

흑해 판결에서 제시된 3단계 기법은 그 이후 2건의 벙골만 경계획정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판결을 통해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표준기법으로 자리잡았다.

그중 두 건의 벙골만 판결은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북해대륙붕 판결과 흑해 판결의 주요 법리를 조화롭게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벙골만 판결은 큰 틀에서 3단계 기법을 활용하면서 북해대륙붕과 유사한 벙골만의 특수한 구조를 반영하여 각도이분법(angle bi-sector) 방식을 적용, 잠정등거리선을 조정함으로써(잠정등거리선을 사실상 무시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벙골만 판결은 최초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한 국제판결이라는 점에서도

- 5) 동 원고는 학술논문이 아닌 발표문이므로 구체적인 논문 인용은 생략한다. 참고로 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1. Sitting on the Dhaka Bay: The Dispute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Samuel Zeidma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 A Commentary on Maritime Boundary Arbitration between Bangladesh and India Concerning the Bay of Bengal (Marcin Kaldunski,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 Natural Prolongation and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m: Implication of Bangladesh/Myanmar Case (Yao Huang & Xuexia Liao,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 The Bangladesh/Myanmar Case: Continuity and Novelty in the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Robin Churchill, Cambridg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의미가 있다. 국제재판을 통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벙골만 판결은 국제재판을 통한 해양경계획정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

1971년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결과 방글라데시가 독립함에 따라 방글라데시와 주변국인 미얀마, 인도와의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방글라데시와 주변국 간 몇 번에 걸친 교섭에서도 특별한 성과가 없었는데 특히 2008년에 한국의 대우그룹이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분쟁수역에서 자원탐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이 고조되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분쟁은 긴밀히 연관된 분쟁이었는데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와의 분쟁은 ITLOS로, 인도와의 분쟁은 중재재판부<sup>6)</sup>로 제소하였다.<sup>7)8)</sup> ITLOS는 2012년 3월 14일에,<sup>9)</sup> 중재재판부는 2014년 7월 7일에 중재결정을 발표하였다.

\*\*\*\*\*

두 건의 재판에서 모두 영해기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으나,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6) 동 중재재판부는 네덜란드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사무 기능을 담당했다.  
 7) 미얀마가 분리하여 국제재판을 진행한 이유는 소송비용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ITLOS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설 재판소를 활용하므로 변호인 비용 이외에 재판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중재재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송 당사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8) 이하에서 2012년의 방글라데시/미얀마 케이스와 판결은 문맥에 따라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 또는 “ITLOS 판결”로, 2014년의 방글라데시 v. 인도 케이스와 판결은 문맥에 따라 “방글라데시 v. 인도 사건” 또는 “중재결정”이라고 한다.  
 9) 이는 ITLOS 창설 이래 최초의 해양경계획정 판결이며 두 번째의 본안판결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생략하였다.<sup>10)</sup>

영해의 경계획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접경 지역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의 생 마르틴 섬의 지위였다. 생 마르틴 섬은 인구가 약 7,000명인 상당히 큰 섬이었는데, ITLOS는 이 섬이 영해 경계획정에서는 완전한 효과(full effect)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EEZ 경계획정에서는 이 섬에 전혀 효과가 부여되지 않았다.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을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에서는 흑해 판결에서 확립된 3단계 기법이 적용되었다.

잠정 등거리선 설정의 제1단계에서, 방글라데시는 벙골만 안쪽의 오목한 곳에 위치하면서 지리적 형태상 다시 내부가 오목한 이중만곡(double concavity)이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등거리선을 설정하면 폐쇄효과(cut-off effect)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잠정등거리선 설정이 부당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반대하였다. 대신 방글라데시는 판례법에 따라 각도이분법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에서는 215도, 방글라데시 v. 인도 사건에서는 180도 설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TLOS와 중재재판부는 모두 방글라데시의 주장을 기각하고 판례법을 인용하면서 등거리선이 각도이분법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등거리선을 조정하는 제2단계에서, ITLOS와 중재재판부는 모두 방

10) 방글라데시 v. 인도 케이스에서는 해양경계획정 케이스 사상 처음으로 재판부의 현지 실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글라데시가 지리적 구조로 인해 등거리선에 따른 경계획정 시 폐쇄효과를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두 재판부는 잠정등거리선을 조정하기 위해 각도이분법을 적용키로 하였는데, ITLOS는 방글라데시가 주장한 바와 같이 215도선을, 중재재판부는 177.5도선을 적용하였다.

상기 과정에서 인도 측은 ITLOS가 이미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에서 방글라데시의 폐쇄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으므로 방글라데시는 200해리 이원으로서의 출구를 갖게 되고, 따라서 중재재판부가 방글라데시의 폐쇄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잠정등거리선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재판부는 ITLOS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으며 자체 판단으로 중재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타 요인들은 잠정등거리선을 조정하기 위한 관련 사정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에서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토사들이 두텁게 쌓여 있는 벵골만 해저의 퇴적 시스템을 고려토록 제기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v. 인도 사건에서 방글라데시는 영해기점이 되는 해안선이 홍수와 해안작용으로 불안정한 상황과 벵골만 일대에서 방글라데시 어민들의 전통적인 어업권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어업권의 경우 중재재판부가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재판부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미얀마는 대륙붕한계획정위원회(CLCS)가 변계획정(delineation)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ITLOS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ITLOS는 해양경계획정이 CLCS의 변계획정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will be supportive)

유엔해양법협약의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재재판부는 ITLOS의 논리를 재확인하였다.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에서 벵골만 해저에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토사가 두터운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해리 이원 대륙붕 전체의 관할권을 주장하였으나 ITLOS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 방법론과 관련하여, ITLOS와 중재재판부는 대륙붕의 200해리 이내와 이원 구역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200해리 이내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한 기법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논리에서 두 재판부는 잠정등거리선을 설정하고 잠정등거리선의 조정 사유를 검토, 방글라데시의 폐쇄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등거리선을 방글라데시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방글라데시/미얀마 사건에서 방글라데시 측은 방글라데시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관할권에 있어 최대의 자연연장(maximum prolongation)을 향유할 수 있는 반면 미얀마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자연연장을 향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잠정 등거리선의 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ITLOS는 그러한 지질학적·지구과학적(geological or geomorphological) 요인은 일반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방글라데시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도이분법으로 조정된 해양경계획정선을 200해리 이원으로 연장할 경우 해저, 즉 대륙붕의 관할권은 방글라데시가 갖는 반면 상부수역은 미얀마 또는 인도의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이므로 미얀마 또는 인도가 관할권을 갖는 “회색지대(grey area)”

가 생성된다. 두 재판부는 미얀마와 인도의 상부 수역 관할권은 회색시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저, 지하, 해저 자원에 관한 법적 체계는 관련국들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협정 체결이나 적절한 협력 체제 수립을 예로 들었다.

불비례성 테스트의 제3단계에서는 두 재판부 모두 관련 해안선 길이와 수역 면적 간 현저한 불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1969년 북해대륙붕 판결 이후 국제재판에 의한 해양경계획정 관련 결정은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려는 입장과 개별 사안의 특수 상황을 반영한 탄력성 있는 해법을 찾으려는 입장 간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해대륙붕 판결은 구체 상황을 중시한 입장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 이후 다수의 국제판례는 구체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늘려왔다. 북해대륙붕 판결 이후 후속 판례법을 통해 국제재판부는 잠정등거리선/중간선 설정 및 관련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2단계 해양경계획정 기법을 발전시켰다. ICJ는 2009년의 흑해 판결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해양경계획정 기법을 EEZ와 대륙붕의 단일 경계획정을 포함한 3단계 해양경계획정으로 발전시켰다.

ITLOS의 방글라데시/미얀마 판결은 2009년 흑해 판결 이후 3단계 획정 기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단계 기법을 국제재판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의 표준기법으로 정착토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v. 인도 중재재판부는 3단계 기법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해양경계획정의 관점에서 방글라데시가 위치한 벵골만 심부는 북해대륙붕의 독일 측 지역과 비슷한 지리적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해대륙붕 소송시 서독은 지리적 상황의 유사 사례로 벵골만을 예로 들기도 했다. 벵골만 사건에서는 거꾸로 방글라데시가 잠정 등거리선 대신 각도 이분법 적용을 제안하면서 북해대륙붕 사건에서의 서독과 유사한 입장을 제출하였다. ITLOS는 국제법리는 등거리선/중간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도 이분법은 등거리선/중간선이 불가능할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ITLOS는 방글라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잠정 등거리선을 설정하였다. 중재재판부 또한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였다. 이런 점에서 두 재판부의 접근법의 골격은 북해대륙붕 판결에서 ICJ의 접근법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벵골만 사건의 두 재판부는 제2단계에서 방글라데시 해안선의 오목한 모양(concavity)이라는 관련 사정을 반영하여 잠정등거리선을 조정하기 위해 각도이분법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벵골만 사건의 두 재판부와 북해대륙붕 사건에서의 ICJ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였지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점에서 벵골만 판결은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두 기념비적 판결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벵골만 판결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실질적으로 다룬 최초의 케이스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벵골만 판결 이전에는 2007년에 니카라과가 온두라스와의 해양경계 분쟁에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를 ICJ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ICJ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리에 관한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조항에 부합해야 하며 CLCS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경계획정을 판단하지 않았다. 반

면, 벵골만 사건의 두 재판부는 당사국들이 CLCS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변계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경계획정 문제(delimitation)와 변계획정 문제(delineation)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은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벵골만 사건의 두 재판부는 CLCS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변계획정에 관한 권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제재판소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ICJ와 다소 다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재판부 결정의 분절성은 그 자체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국제재판부를 선정하느냐 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향후 국제재판부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 국가들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권원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원이 중첩되는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처럼 벵골만 사건의 두 재판부는 지질학적·지구과학적 고려를 경계획정의 고려요소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국제재판

부는 과거 판결에서 지질학적·지구과학적 요소를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며 지질학적·지구과학적 요소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해리를 넘어가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의 검토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의 거리는 더 이상 고려요소가 아니며 지질학적·지구과학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장래의 케이스에서는 지질학적·지구과학적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각도이분법과 관련하여, 벵골만 사건의 두 재판부가 215도라는 숫자와 177.5도라는 숫자를 제시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방글라데시 v. 인도 중재재판부의 중재재판관이었던 Rao 박사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다.

벵골만 경계획정 결과 회색지대가 만들어졌다. 회색지대는 두 국가의 대륙붕 관할권이 200해리 이원으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실질적인 결과이다. 벵골만 사건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를 최초로 획정한 사건이므로 회색지대 문제 또한 최초로 검토한 사건이다. 다만, 회색지대가 벵골만 특유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케이스가 또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 대한 국내학계의 최근 논의 동향 분석 - 시제법의 확장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정 동 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국제법연구센터 연구원)

## I. 서론

국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탄생하여 변화하고 소멸한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이나 법인, 국제기구 등과는 달리 보다 오랜 생명을 가진 국제법 주체이기 때문에, 세월의 경과에 따라 법규범의 내용이 변하여 법의 변화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여타 국제법 주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이하고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물론 법의 해석을 통해 법과 현실간 간극을 일시적으로 메꿀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법의 시간적 저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시제법(時際法, *intertemporal law*)이라고 하며, 시제법의 문제는 국제법 뿐 아니라 헌법<sup>1)</sup>, 형법<sup>2)</sup> 등 국내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사법(國際私法)이 장소적 저축법내지 충돌법으로서 어느 지역의 실정법을 원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면, 이와 구별되는

시간적 저축법이 시제법인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저축규정을 경과규정 또는 시제규정이라고 부르며, 섭외적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기초로 나타나는 충돌 규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본다.<sup>3)</sup>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적 성질은 학자들에 따라 이론(*theory*), 원칙(*principle*), 규칙(*rule*), 또는 이론인 동시에 법원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론’이란 어떠한 주제에 대한 주장 또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제법과 국내법을 불문하고 일정한 법체계에 내재하는 원리이거나, 개별적인 법규의 근거에 존재하는 기초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그것이 특정한 개별적인 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규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시제법이 이론, 원칙, 규칙 중 어떠한 말과 결합하여 사용될지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른 문제로 보여진다.<sup>4)</sup>

필자는 시제법의 법리 및 적용 관련 주요 외국 학자들의 시각을 첫째, 시제법을 국제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Fitzmaurice, Jessup, Ian Brownlie, Malcolm Shaw,*

1) 우리나라 헌법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형법 제 1조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3) 박기갑, 국제사법총론-법률충돌이론을 중심으로 (삼우사, 1996) pp.106-108.

4) 박배근, “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국제법학회는 총』, 제 53권 제1호(2008), p.15.

Jennings and Watts가 편집한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R. Higgins), 둘째, 시제법을 조약 체결시와 분쟁해결시 변화된 적용법을 선택하는 문제로 보는 견해(Lauterpacht, T.O. Elias), 셋째, 시제법의 확장 적용, 즉 조약해석에 있어 발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Y.Tanaka) 로 나누어 소개한 바 있다.<sup>5)</sup>

본 논문에서는 시제법의 적용 원칙을 살펴본 후, 시제법의 법리 및 적용 관련 국내 국제법 학계의 최근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자들간에 이와 같은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시제법 원칙들간의 상호관계를 보는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시제법의 법리 및 적용관련 연구가 현대 국제법이 추구하는 가치(법적 안정성과 동적 현실적합성간 간극의 해소)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시제법의 적용 원칙

국제법상 시제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 계기는 1928년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에 회부된 네덜란드와 미국간 팔마스 섬(Palmas 섬, 네덜란드 명칭은 Miangas 섬)영유권 사건(이하 팔마스 섬 사건)이었다.<sup>6)</sup> 동

사건의 판결은 단독 중재재판관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영토주권에 관한 개념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시제법 원칙에 대한 언급으로 후일 국제사회에서의 영토분쟁 해결에 관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판결 중 하나이다. 동 판결에서 Huber 재판관은 권원의 성립과 권원의 지속을 별개로 보았다. 따라서 설령 16세기 무렵 스페인이 이 섬을 발견함으로써 권원이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19세기의 국제법<sup>7)</sup>에 의하면 발견은 불완전한 권원(inchoate title)에 불과하므로 합리적 기간내에 발견된 지역의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에 의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세기 간 팔마스 섬에 대하여는 네덜란드 외 타국의 주권 행사가 없었으며, 네덜란드의 주권 행사에 대한 타국의 항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주권 행사는 평화적이고 배타적이었으며, 공개적이었다고 판시하면서, 17세기 이래 네덜란드가 팔마스 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주권 행사를 하였다면 네덜란드의 권원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동 사건에서 Huber재판관은 “법적인 사실은 그 당시의 법(law contemporary with it)에 의해

5) 정동은, “국제법상 시제법이론과 국제법사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18, No.3, 통권 제 54호(2019.9), pp.22-23.

6) 팔마스 섬은 오늘날 필리핀 민다나오 섬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소도이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결과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받았는데, 이 섬은 강화조약에 첨부된 필리핀 경계지도상 약 20해리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1906년 필리핀을 통치하던 미국의 L.Wood장군이 이 섬을 방문하였을 때, 네덜란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본국에 보고하였다. 이후 미국과 네덜란드는 약 15년간 이 섬의 영유권에 관한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자, 양국은 이 사건을 중재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은 PCA를 통해 Max Huber단독 중재관(이하 Huber재판관)에 회부되었다. 미국은 이 섬이 1898년 파리조약을 통한 스페인 할양과 함께 미국령으로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1) 스페인은 16세기 발견을 통해

이 섬의 영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파리조약에 의해 미국에 할양되었다. (2) 팔마스 섬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은 17세기 스페인과 네덜란드간 일련의 조약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3) 팔마스 섬은 미국령 필리핀에 더욱 인접해 있으므로 미국령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네덜란드는 1677년 동인도회사와 원주민과의 협정이래 200여년 이상 평온하게 이 섬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그간 스페인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 섬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공저, 국제법판례 100선, 제 4판 (박영사, 2016) p.293).

7) 19세기 말에 체계화된 고전적 국제법에 따르면 영역 취득의 방법에는 할양, 병합, 정복, 선점, 시효, 침부라고 하는 6개의 권원이 있었다.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의미가 아닌, 국가권력이 확립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고, 이에 대응하여 점유는 국가권력의 지배가 실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팔마스 섬 판결에서는 선점과 시효로 일컬어지는 권원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에 공통된 특징에서 도출된 “평온하고 계속적인 주권의 발현”(peaceful and continuous display of State authority)이라고 하는 방식이 이른 바 슈퍼권원(super title)으로 사용되었다(스기하라 다카네 & 사카이 히로노부 편(박덕영&오미영 역), 국제법 기본판례 50 (박영사, 2014) p.54).

평가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시점에 유효한 법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이른 바 시제법 제 1원칙)<sup>8)</sup>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를 비롯한 주요 국제사법기관에서 널리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동 재판관은 “일련의 연속되는 기간에...어떠한 법을 특정한 사건에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른 바 시제법의 문제)에 관하여는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구별해야 한다...권리의 존속, 즉, 권리의 지속적인 발현은 법의 발전(evolution of law)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이른 바 시제법 제 2원칙)라고 덧붙여<sup>9)</sup> 시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법의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판결에서의 Huber재판관의 시제법 원칙에 대한 언급은 일단 성립된 영토에 관한 권원도 후일의 변화된 국제법에 따라 항상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국제관계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Huber재판관의 판결 직후 Jessup은 미국국제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시제법의 제 2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법의 변경이 영토의 재취득을 필요하게 만들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영토의 각 부분에 대한 자신의 권원을 검토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sup>10)</sup> 또한, Brownlie는 시제법의 의미 확장이 논리적으로 불가피할지라도 이를 적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시제법 제 2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진공상태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묵인, 금반언 등과 같은

국제법상 규칙들에 의해 그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sup>11)</sup> 한편, 시제법의 법리에 관하여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Higgins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관건은 당사자의 의사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조항(general clause), ICJ의 서남아프리카 사건 판결(1996년)<sup>12)</sup>, 유럽인권재판소의 Tyrer사건 판결(1979년)<sup>13)</sup> 등에서 조약 규정의 진화론적 성격이나 살아있는 문서로서의 국제인권규약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Huber재판관이 판시한 시제법 규칙을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 확장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14)</sup>

8) 본 논문에서 시제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시제법 제 1원칙을 의미하며, 시제법 제 2원칙은 ‘시제법의 확장 적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시제법의 확장 적용이 시제법의 예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론, 원칙, 규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상이하나, 필자는 논문의 편의상 시제법 제 2원칙을 지칭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9) Islands of Palmas Case (Netherlands/U.S.A.),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II, p.845.

10) P.Jessup, “The Palmas Island Arbitration”, AJIL, Vol.22 No.4 (1928), p.740.

11) J.Crawford, Brownlie’s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sup>th</sup>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218-219.

12) 서남아프리카 사건(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Judgment, ICJ Reports 1996)에서 시제법과 관련한 쟁점은 서남아프리카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위임통치가 시작된 이후 인종 차별이나 분리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는데, 위임통치국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의무가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였다. 즉 이는 남아공의 서남아프리카에 대한 위임통치가 시작되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시제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동 사건에서 타나카(Tanaka) 재판관은 인종차별 및 인종분리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의 소급적 적용은 의무의 문제에만 관련되고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기득권 보호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의 소급 적용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논리를 취했다. 이러한 논리만 보면 이는 시제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동 재판관은 비차별에 대한 새로운 국제관습법의 인정은 서남아프리카에 대한 남아공의 위임장 제 2조 2항과 국제연맹규약에 대한 유권해석(authentic interpret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40년 전에는 다소 불명확했던 것을 단순히 명확하게 만든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시제법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 논리를 취하였다(supra note 4, p.31).

13) 타이러 사건(Tyrer v. The United Kingdom(Application no.5856/72), Judgment, 25 April 1978)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 Isle of Man에서 시행되던 청소년에 대한 신체형벌(학교에 맥주를 가지고 온 것을 고자질한 선배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5대의 회초리형에 처해진 타이러 case)이 유럽인권협약 제 3조의 모멸적인 처벌(degrading punishmen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석해야 하였던 바, 동 재판소는 “협약은 살아있는 문서(a living instrument)로서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적 해석(evolutionary interpretation)의 태도는 동 재판소의 그 이후 여러 판결에서도 반복되어 지금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확고한 해석 원칙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된다(ibid., pp.32-33).

14) R.Higgins, “Some Observations on the Inter-Temporal Rule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제법 제 1원칙은 동시대성의 원칙(principle of contemporaneity)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구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국의 국제법학계와 ICJ등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의 다수를 접하고 있다. 이와 관련, Fitzmaurice가 1951년부터 1954년 사이의 ICJ판결과 의견을 분석하여 제시한 조약 해석의 6원칙 중 하나인 동시대성의 원칙은 “조약의 용어는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당해 용어가 가졌던 의미에 따라, 또는 당해 용어에 부여되었던 의미에 따라, 그리고 당시의 언어 관행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는 이 원칙이 시제법의 원칙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해석의 원칙”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해석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시제법 제 2원칙은 시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법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제법의 확장(extention of intertemporal law)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법과 현실간 역동적 상호관계를 감안할 때, 이 두 원칙은 Elias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원칙이 다른 원칙이 없을 경우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나, 제 2원칙이 제 1원칙에

대한 제약 요인(limiting factor)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이고 통제적인(both complementary to and limitative of each other)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Elias는 시제법 법리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두 원칙간 상호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6)</sup>

### III. 시제법의 법리 및 적용 관련 국내 국제법학계의 견해

시제법의 법리 및 적용 관련 국내 학자들의 견해는 시제법 제 1원칙과 제 2원칙의 상호관계 및 시제법의 확장 적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신중론(김대순, 박배근)과 둘째,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원칙적인 긍정론(이근관, 이재민, 정인섭), 셋째, 국제인권법, 국제강행규범, 탈식민주의, 국제법상 노후폐절 또는 폐기 및 형평의 원리, 근대국제법학자들의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하여 시제법의 확장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도시환, 백충현, 박기갑, 오병선, 오시진)인 바, 일부 학자들의 경우 후술하겠지만 시제법의 법리가 한일 과거사 등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국제법 및 외교 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갖는 함의 또는 이에 기반을 둔 이론적 내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sup>17)</sup>

in International Law”, in J.Malkarczyk (e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hreshold of the 21th Century: Essay in honour of Skubiszewski*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181.

15) G.Fitzmaurice, “Law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nal Court of Justice 1951-4: Treaty Interpretation and Other Treaty Points”,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Vol.33(1957) p.210-212 그는 조약 해석의 6원칙으로서 ① 문헌의 실재성(actuality of textuality), ②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의미(natural and ordinary meaning, ③ 통합(integration), ④ 효과성(effectiveness), ⑤ 추후관행(subsequent practice), ⑥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의 Fitzmaurice 후임 특별보고관 이었던 Waldock은 조약의 해석에 관한 상세한 원칙 규정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가능한 몇 개의 근본적 조항을 통해 조약 해석의 틀만을 제공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결국 Waldock의 여섯 번째 보고서에 따른 초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4, vol.I, pp.217-226.

16) T.O.Elias, “The Doctrine of Intertemporal Law”, *AJIL*, Vol. 74, No.2(1980), p.291.

17) 이러한 분류는 오병선, “국제법상 시제법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 57권 제 1호(2012) pp. 64-72 등 참고하되, 시제법의 확장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에 관한 논의 등은 동 분류와는 달리 필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제법의 법리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모든 논의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대표적인 주장의 경우에는 이를 가급적 상세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 1.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신중론

### 1) 영토 분쟁에 있어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신중론(김대순 교수)

김대순은 Huber의 시제법 이론이 권리의 창설과 그 권리의 유지를 구분함으로써, 국가는 당대의 국제법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상 영토의 권원을 재수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정복에 의한 영토의 취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와 같이 정복에 기초하여 취득한 권원은 현대국제법이 허용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식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과거 당해 영토를 상실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상대방 국가가 항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더 이상의 목인을 거절함으로써 시효에 의한 취득을 저지하는 경우, Huber 재판관의 이론은 이미 확립된 많은 권원을 몹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영토 문제에 대하여는 과거 영토를 취득한 국가와 이를 상실한 국가간에 있어서 영토 분쟁이 시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여,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시제법을 확장 적용하는 것에 회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영토 분쟁의 법적 해결이 성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포르투갈이 16세기에 정복을 통해 취득한 인도 남서부의 Goa(인도 자신도 1947년 독립후 이 지역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원을 승인)를 1961년 인도가 침략하여 병합하였을 때, UN총회 및 안보리도 이러한 인도의 행위를 비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포르투갈이 1974년 Goa에 대한 인도의 권원을 승인하였던 사건을 일례로 들고 있다.<sup>18)</sup>

### 2) 시제법의 확장 적용이 가지는 중요성을 평가하면서도, 국가실행 및 국제재판소의 지금까지의 국가관행 및 국제사법기관의 판례에 비추어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있어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는 견해 (박배근 교수)

박배근은 영역권원(팔마스 섬 사건 및 멩끼에·에크레오 섬 사건), 경계확정 사건(Grisbadarna 사건), 주권면제(Trendtex 사건), 조약법(모로코내 미국인 권리 사건, 그리스와 터키간 에게해 대륙붕 사건) 분야에서의 시제법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sup>19)</sup>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그는 시제법 원칙은 법률불소급 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법 논리이나, 국제법학술원(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이하 IDI)이 독일 Wiesbaden 회기(1975.8)에서 채택한 “국제공법에 있어 시제법 문제 관련 결의”(The Intertemporal Problem in Public International Law) 전문에서 “국제 분야에서 시제법 문제의 해결은 발전과 안정의 두가지 요건을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언급한 문언<sup>20)</sup>을 인용하면서, 국제법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IDI의 동 결의 보고관이었던 Soerensen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시제법의 ‘정적(靜的) 요소와 동적(動的) 요소간 균형잡힌 혼합’(a balanced mixture of statics and dynamics)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 것이 시제법 문제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접근법이 되기를 기대하였다.<sup>21)</sup>

19) 필자는 지면과 시간적 제약상 본 논문에서 시제법 관련 국제사법기관의 주요 판례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없었으나, 다음 기회에 ICJ, PCA,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시제법의 법리와 적용 관련 어떠한 판결을 내렸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 동 결의의 전문은 “Whereas any solution of international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field must take account of the dual requirement of development and stability...”로 표현하고 있는 바, 국제법상 시제법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Dr. Maarten Bos, A Methodology of International Law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North Holland), 1984) pp.296-297 참조.

18) 김대순, 국제법론 제 20판 (삼영사, 2019), pp.986-987.

또한, 박배근은 조약의 발전적 해석을 주장한 서남아프리카 사건에서 타나카 재판관의 반대의견(인종차별 및 인종분리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의 소급적 적용은 의무의 문제에만 관계되고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기득권 보호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법의 소급 적용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비차별에 관한 새로운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남아프리카에 대한 위임장 제 2조 2항과 국제연맹 규약에 대한 유권해석(authentic interpret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40년 전에 다소 불명확했던 것을 단순히 명확하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함으로써, 결국 시제법 원칙의 적용을 예들려서나마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견지)은 조약해석에서 해석 당시의 ‘전체적인 법체계의 구조’를 강조한 나미비아 사건에서의 ICJ의 권고적 의견(국제연맹 규약의 해석은 사후적인 국제법의 발전에 영향받으며, 국제법 문서들은 해석 당시에 지배적인 전체적 법체계의 구조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지) 및 Tyrer사건 등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에 기초한 판결(유럽인권협약은 살아있는 문서(a living document)로서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시제법의 예외로 설명한다.<sup>22)</sup> 그러나, 그는 감치코보-나지마로스 계획 사건 판결에서 조약의 발전적 해석이 문제되었을 때 ICJ가 유럽인권재판소와는 다른 입장(헝가리가 체코슬로바키아(1977년 당시)간 체결한 1977년 조약을 더 발전되고 엄격한 환경법 및 국제수로법의 맥락에서 해석해 줄 것을 ICJ에 요청하였으나, ICJ는 이를 배척하고 조약 해석에 있어 동시대성의 원칙을 채택)을 취했음에 주목하면서, 동 판결에 대한 Bedjaoui재판관의 분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동 재판관은 ICJ가 이 사건

에서 ‘고정적 참조’(fixed reference)와 ‘유동적 참조’(mobile reference)중에서 ‘고정적 참조’를 채택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ICJ의 태도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Bedjaoui재판관은 강행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고정적 참조’가 ‘유동적 참조’보다 우월하며, 1971년 나미비아 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언급된 ‘발전적 해석’<sup>23)</sup>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모든 상황에서는 조약의 발전적 해석, 즉, 조약해석에 있어 ‘유동적 참조’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배근은 결론적으로 국제법에서 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역사적인 권원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영토문제나, 해양법, 국가문제 또는 국제인권법과 같이 최근에 규범의 내용이 많은 변화를 겪은 법 분야 및 국제법의 법원(法源)중 하나인 조약을 규율하며, 해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조약법의 분야에서 시제법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Huber재판관이 제시한 시제법 제 1원칙이 흔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그는 동 재판관이 제시한 시제법 제 2원칙은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법의 발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생각의 중요성이 전술한 IDI의 시제법 관련 결의나 1966년 ICJ의 서남아프리카 사건 판결에서의 타나카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도 표출된 바 있으나,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대표하는 시제법 원칙

21) IDI, *Annuaire* 1973 (Basel, 1973), p.21 (Dr.Maarten Bos, *ibid.*, p.287에서 재인용).

22) *supra* note 4, p.32.

23) 조약의 발전적 해석이란 조약이 ‘성질상 발전 및 추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다양성 및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약 문언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는 작용을 뜻한다. R.Gardiner, *Treaty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242-243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해석 원칙들은 비엔나 협약 제 31조(해석의 일반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동 규칙은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발전적 해석론은 효과적 해석론(effective interpretation)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비엔나 협약상 해석의 일반 규칙과 동일한 정도의 국제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발전적 해석론이 국제관습법의 위상을 가질 정도로 국가관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

을 정면에서 부인하거나 그에 대한 예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논리<sup>24)</sup>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sup>25)</sup>고 분석함으로써, 시제법의 확장 적용 문제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대한 원칙적인 긍정론

### 1) 조약법상 강박이론에 따른 제 2차 한일협약의 위법성 및 식민주의적 과거의 평가 및 극복을 위한 초시간적(transtemporal) 접근법 주장(이근관 교수)

#### (1) 조약법상 강박이론에 따른 제 2차 한일협약(이하 을사보호조약)의 위법성

이근관은 1918년 이전 시기에 국가를 의인화하는 학설(예컨대 국가법인격 실재설을 주장한 Gierke가 그 대표적 학자)의 영향하에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였으나, 이러한 구분은 국가만을 진정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던 전통적 이론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을 비롯한 여타 국가 이외 실체의 모든 인격을 국가에 귀속·흡수시킨 결과, ‘국가유아론’(state solipsim)적 경향을 낳음으로써 결국 제 1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구분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점차 그 경계가 흐려지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국가의 법인격에 대한 의제론적 파악이 주류적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낮은 것임에 틀림 없으나, 19세기 중·후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의 구분은 쉽사리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사라

지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전쟁의 불법화 관행, 국가 의인화 경향의 쇠퇴 및 강박조약으로서의 베르사이유 조약에 대한 비판의 대두 등을 들고 있다.<sup>26)</sup>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조약은 오래전부터 국제법적 효력이 부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현재 상당수의 조항이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비엔나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Lauterpacht, Fitzmaurice, Waldock 등 3명의 영국학자들이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중에서 Waldock보고관은 1963년 ILC 제 2차 보고서에서 “1905년의 보호조약에 대한 수락을 받아내기 위하여 한국의 황제 및 그의 대신들에 대하여 행한 강박”을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의 행사라고 주장되는 예들”의 하나로서 예시하였으나, 이후 Waldock의 제 3차 보고서부터는 동 조약에 대한 지적이 삭제되었다. 1935년 조약법에 관한 Harvard대 초안의 주석내에 을사보호조약이 국가대표에 의한 강박조약의 사례로 열거되어 있는데, Waldock의 제 2차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Harvard대 초안 주석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27)</sup> 이근관은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유효성을 검토할 때에는 국가에 대한 강박(당시 국제법상 유효)과 국가대표에 의한 강박

26) 이근관,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pp.263-274, in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p.263-274.

27)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직후 프랑스 학자 Francis Rey의 논문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ee(Revue General de Droit International, 1906)에서 을사보호조약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조약으로 설명되었는데, Harvard대 초안 작성시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조약의 사례를 찾다가 이 논문의 지적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대한 강박 역시 주로 국가기관인 사람에 대한 강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양자를 실제로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국제법에서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만을 무효로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강박조약의 효력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을사보호조약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조약이나 국가에 대한 강박조약이냐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이후의 역사적 실재는 대한제국 전체가 일제의 뜻대로 강제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 10판 (박영사, 2020), p.360).

24) 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국제법 학자들 중 도시환, 백충현, 박기갑, 오병선, 오시진의 경우를 시제법의 확장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병선과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25) supra note 4. p.34

(당시 국제법상 무효)의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부정확한 이론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 협약의 체결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다라도 이것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전형적 예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조약법상 강박이론에 대한 역사적·계보학적 고찰은 을사보호조약의 위법성 및 무효성을 시제법적 시각, 즉 당해 협약이 체결되던 당시에 성립하고 있던 국제법의 관점에서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sup>28)</sup>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식민주의적 과거의 평가 및 극복을 위한 초시간적 접근법

이근관은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 사건(2002)<sup>29)</sup>에 있어서의 ICJ 판결의 다수 의견이 시제법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동 판결에 대한 알카사우네(Al-Khasawneh)재판관의 개별의견을 상세히 소개하고, 탈식민주의적 관점<sup>30)</sup>에서 동 개별

의견이 가지는 함의를 평가하고 있다.<sup>31)</sup>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국과 Old Calabar지역의 왕과 족장간 1884년 체결된 ‘보호조약’(1884년 조약)이 어떠한 성격과 효력을 지니며, 1913년 영·독조약이 1884년 조약에 규정된 영국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무효인가의 문제였다. 1884년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는 보호조약의 전문과 제 1조상 “호의와 보호”(gracious favor and protection)에 대한 언급에 비추어볼 때, 이 조약의 체결에 의해 영국은 단지 보호할 권원을 획득한데 불과하고 “*nomo dat quod non habet*”(No one gives that which he does not have.)의 원칙에 따라 Old Calabar의 영토를 처분할 권한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ICJ는 나이지리아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ICJ는 프랑스와 모로코, 튀니지아, 마다가스카르간에 체결된 “protectorat”에 관한 조약 및 영국과 바레인, 카타르간에 체결된 “protected State”에 대한 조약과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체결된 “보호조약”(treaties of protection)의 차이를 설명<sup>32)</sup>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피보호국이 보호조

28) 이근관, *supra* note 26, p.287

29) 동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보호령이었던 카메룬은 제 1차 세계대전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분할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자 모두 신탁통치령으로 전환되었으나, 프랑스령 부분은 1960년, 영국령 부분은 1961년에 독립하면서 양자는 연방국가를 창설하였다. 한편,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이지리아도 1960년 독립하였다. 카메룬은 1994년 나이지리아가 바카시(Bakkasi) 반도에 무력으로 침공한 것 등을 이유로 동 반도의 귀속 및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하였으며, 제소한지 2개월 후 차드호 지역과 육상 경계선의 모든 획정을 분쟁의 주체에 추가하여 추가 소장으로 제출하였다. 카메룬은 바카시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되었으므로 잠정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약 1개월 후 ICJ는 잠정조치를 명하였으며, 2002년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supra* note 7, p.176).

30) Koskenniemi는 19세기의 국제법의 어두운 단면으로서 국제법이 제국주의적 프로젝트(imperialistic projects)에 동원되어 국제법의 담론이 강대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탈식민주의 및 비교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Martti Koskenniemi, Walter Rech and Manuel Jimenez Fonseca(eds.), *International Law and Empire: Historical Explorations*(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vii 이와 관련, Carl Schmidt는 이미 1951년에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400여년 동안 유럽의 국제법은 ‘신세계의 정복’(conquest

of new world)라는 근본적인 사건의 전개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유럽중심적 국제법질서’(traditional Eurocentric order of international law)를 비판하고 있다(*ibid.*, p.iii).

31) 이근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영토법리 비판—카메룬-나이지리아간 영토분쟁사건(2002)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7(1) (2010), p.3.

32) 19세기 말 전통 국제법 이론 및 당시 유럽국가들과 아프리카 지역내 정치적 실체의 실행(유럽 국가들은 할양조약과 보호조약을 구분하면서, 전자만 영토주권의 권원으로 인식하였기에 보호국가는 보호지역의 토지와 주민을 획득할 수 없었다)에 따르면, 보호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은 영토주권의 권원이 되지 않았다. 1884-5년 베를린 회의에서 채택 일방의정서 제 35조는 보호관계의 대상이 되는 영역과 식민지 영토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하였다. 대부분이 유럽국가였던 동 의정서 당사국들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경우, 실효성(effectiveness)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지역을 병합해야 했지만, 이 경우 병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보호관계 대상인 영역에는 실질적 지배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보호관계를 설정하면 해당 영역에 대한 행정은 현지의 정치적 실체가 부담함으로써, 유럽열강들은 경제적 부담이

약 체결 이후에도 국제법상 주권을 계속 보유하는데 비해, 후자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에서 국지적 지배를 행하는 토착 통치자와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즉, ICJ의 판단에 따르면 1884년 당시 영국은 Odi Calabar 지역을 보호하기 보다는 직접 통치 방식을 취했으며, 보호조약의 체결 당시 이미 영토주권을 영국이 가진 상태에서, 다만 형식만 보호조약의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ICJ는 “당시의 법(under the law at that time)에 의하면, 영국은 1913년에 (남부 구역을 포함) 현재의 나이지리아와 관련하여 독일과 자신의 국경을 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해석을 시제법의 원리를 원용<sup>33)</sup>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다. 유럽의 식민국가와 토착 통치자간에 체결된 조약과 관련하여 ICJ는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판결의 관련 부분(이러한 조약은 대등한 자 간의 합의가 아니며, 원주민의 자치를 기초로 한 식민지역의 내부적 조직의 한 형태(a form of internal organization of a colonial territory)에 불과하다)과 1975년 서부 사하라 사건에서의 자신의 의견(1884년 스페인이 서부 사하라의 토착민 지도자와 조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당시 서부 사하라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스페인은 그 지역의 통치자와 체결한

조약을 통해 파생적 권원(derivative roots of title)을 획득하였다)도 인용하고 있다. ICJ가 이러한 견해를 인용한 것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1884년 당시 Old Calabar가 무주지(terra nullius)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영국이 당해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취득하였다는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2002년 판결에서 ICJ는 Huber 재판관의 팔마스 섬 사건 판결을 인용하면서 영국이 Old Calabar에 대해 취득한 권원이 시원적(原始的)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는 무주지 선점과 유사한 것임을 시사하였다. ICJ는 2002년 판결에서 1928년 팔마스 섬 사건 관련 PCA의 판결과 1975년 서부 사하라 사건 관련 자신의 판결을 병렬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이근관은 양자간에 식민국가와 토착 통치자간 체결된 조약에 의해 부여된 권원의 성격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한다.<sup>34)</sup>

이근관은 ICJ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알-카사우네(AI-Khassawn도) 재판관이 가장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동 재판관의 개별의견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소개한다. 동 재판관은 ICJ의 다수의견이 2002년 사건에 포함된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점들을 ‘형식주의적·기계적으로 접근’(a formalistic appraisal)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1884년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ICJ 재판관의 다수의견이 Huber 재판관의 판결문을 원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Huber의 견해가 ‘유럽중심적 국제법’(Euro-centric conception of international law)<sup>35)</sup>에 기초하고 있으며, 당시의 다양한 국가실행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

적으면서도 병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영토주권의 획득 없이도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식민통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베를린회의 일반의정서 제 34조에 따라 통치를 받은 다른 당사국은 통치를 한 당사국의 보호하에 있는 영역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식민지 쟁탈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간섭을 배제하는 장점도 누릴 수 있어 보호관계 설정 조약의 확대 배경이 되었다. 강병근, “19세기말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국가적 지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평론』 2018-1 (통권 제 49호), pp.9-10.

33) “이러한 영토취득 방식이 실령 오늘날의 국제법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제법의 원칙(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에 따라 당시 니제르 삼각주 지역에서 체결된 조약의 법적 효과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날 존중되어야 한다.”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ICJ Reports 2002(이하 “2002 Judgment”) p.405, para.205.

34) 이근관, supra note 31, p.18

35) Arnulf Becker Lorca는 1960년대부터 국제법의 보편화(universalization)현상에 따라 유럽중심적 국제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상이한 지역 차원에서 국제법사를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한다. A. B.Lorca, “Eurocentrism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p.1035, in Bardo Fassbender and Anne Peters (eds.), The Oxford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다. 그는 특히 ICJ의 다수의견이 시제법을 무비판적으로 원용하였다고 비판<sup>36)</sup>하면서, 현대 국제법 규칙에 위배되고 또한 이러한 규칙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행태가 시제법을 구실로 보호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근관은 탈식민주의적·비판적 접근방법을 영토법리에 적용하여 2002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사건을 고찰한 결과 도달한 잠정적 결론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화(decolonization)가 외견상 거의 완전히 달성된 현대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ICJ를 비롯한 국제사법기관은 여전히 유럽중심적 국제법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식민당국 단독의 결정 또는 인접한 식민당국 상호간의 합의, 식민지역에 거주했던 토착 원주민의 시원적 권리(original title)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법적 근거가 제기되는 사건들에서 ICJ는 식민당국의 행위나 합의에 압도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은 이른 바 제국주의 시대로서 국제법이라는 규범내지 담론체계가 결코 중립적·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법이 유럽식 민주주의의 이론적 무기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영토분쟁 사건을 다룸에 있어 ICJ는 자신의 판결이 갖는 현대적 적실성보다는 시제법적 고려에 매몰됨으로써 과거 식민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 및 유산을 이미 탈식민화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확인·강화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카타르와 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에서 ICJ의 3인 공동 반대외견으로 Bedjaoui, Ranjeva, Koroma 재판관이 설파하였듯이, “[과거 식민당국이 식민지의 영토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엄밀한 비판적 고찰을 행해야 하며, 이 경우 비판적 고찰의 잣대는 ‘오늘날의 해석 방식’(modern method of interpretation)과 현대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국제법에는 식민주의 또는 보호국주의 국제법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sup>37)</sup>

다만, 이근관은 식민주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할 때 오늘날의 시각이나 잣대만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는 바, 이 경우 오늘날의 규범적 척도를 가치관이 상이했던 과거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단죄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식민주의적 과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거와 오늘 두 시점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초시간적”(transtemporal) 관점에 의해 통합할 필요성을 제시한다.<sup>38)</sup> 이에 대하여 오병선은 시제법의 개념이 제시하는 두 시점에 기초한 접근법과 비교할 때 초시간적 접근이 보다 유동적인 시점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정의와 함께 법적 안정성도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이러한 접근법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물론 타방 당사자도 시간이 흐른 후 동일한 접근법으로 새로운 시점에서 항상 반대 논리를 주장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게 된다고 하면서 이근관이 제시한 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sup>39)</sup>

36) “추가적인 문제는 시제법 규칙(또는 원칙)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식민주의적] 실행을 현대국제법적 관점에서 사법적 심사로부터 면제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A further question is the extent to which the operation of the rule(or 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should shield such practice from judicial scrutiny...). 오늘날의 분쟁 해결을 요청받은 재판관들은 국가간의 주권평등, 자결, 비차별 및 (비록 절차적, 실체적 관점에서 볼 때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지만) 원주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식민주의적] 과거와는 다른 국제법 규칙의 적용 여부 및 정도를 검토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2 Judgment, p.500, para10 (이근관, supra note 31, p.19에서 재인용)

37)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Judgment of 16 March 2001, Joint Dissenting Opinion of Judges Bedjaoui, Ranjeva and Korama, para.217 (이근관, supra note 31에서 재인용).

38) 이근관, supra note 26, pp.25-26.

39) supra note 17, p.61.

## 2)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시제법의 확장 적용이 가지는 시사점(이재민 교수)

이재민은 WTO보조금 분쟁인 EC-LCA(Large Civil Aircraft) 사건<sup>40)</sup>에서 시제법이 확장 적용된 법리를 다루고 있다. 동 사건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에어버스 금융지원, 즉 “사업개시 금융지원”(Launch Aid/Member State Financing, 이하 LA/MSF) 조치 관련 합법성 판단이 동 조치 실시 당시인 1990년대 초반 발효중이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조, 16조, 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Tokyo Round Subsidies Code, 이하 보조금 코드)에 근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보조금 규정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SCM협정)<sup>41)</sup>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유럽연합은 시제법 제 1원칙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합법성 여부는 조치 당시 유효하였던 보조금 코드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유럽연합의 시제법 원칙 주장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SCM협정 제 5조<sup>42)</sup>는 WTO 협정 발효 이후에도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1995년 이전에 발생한 보조금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기 때

문에, 국제법상 시제법의 원칙은 그러한 보조금에 대한 SCM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유럽연합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패널은 양 기준 중 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이재민은 동 사건 패널이 WTO협정 발효 이전에 채택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협정 발효후 협정상 규범과 합치하지 않으면 이는 위반을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팔마스 섬 판결에서 Huber재판관이 제시한 시제법 원칙중 후자, 즉 시제법 제 2원칙을 사실상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주로 국제법상 영토 취득과 관련하여 정립된 시제법 법리가, 국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와 같은 일반적인 통상조치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WTO분쟁기구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sup>44)</sup>

### 3)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행위시법 적용 원칙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시제법의 확장 적용이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정인섭 교수)

정인섭은 권리의 창설 여부는 행위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Huber재판관의 판시중 첫 번째 명제 관련, 이는 소급효금지원칙의 한 측면으로서 모든 법 운영상 기본원리의 하나로 수락되어 왔으며,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은 시제법 원리의 핵심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을 불법이라고 선언한 UN총회 결의(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GA Res.

40) 동 사건은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이 유럽연합내 민간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 사에 대하여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국이 WTO보조금 협정 위반을 근거로 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상재는 EC and Certain Member States-Large Civil Aircraft(DS316), WTO Dispute Settlement: One-Page Summaries, 2019 Edition, pp.132-133.

41) SCM협정은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며, 법률상(de jure) 특정성이 있는 경우와 사실상(de facto)특정성이 있는 경우 모두를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협정의 상세한 분석은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 4판 (법영사, 2014), pp.343-360.

42) 동 5조는 SCM 제 1조상의 보조금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동 협정 제 2조에 따른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과 같은 부정적 영향 또는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ibid., p.350).

43) 이재민, “최근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 원칙 및 법리”, 『국제법학회논총』, 제 55권 제 4호(2010) p.203.

44) ibid., p.205.

2625)(1970))도 UN헌장 체제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국제합의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만일 과거 무력사용 시대의 영토취득을 소급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면 국제사회는 대혼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단 창설된 권리도 이후 법의 변화에 따른 요건을 만족시켜야 존속할 수 있다는 Huber재판관의 두 번째 명제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주장으로 첫 번째 명제와 모순된다는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sup>45)</sup>고 하면서,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이미 확립된 권리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제법 제 2원칙의 전면적인 적용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역시 국제사회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으며,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법운영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합의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나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은 비엔나 협약 제 53조(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및 제 62조(사정의 근본적인 변경)에서 규정한 것처럼 과거의 국가간 합의도 무효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의 창설과 존속을 구별할 필요성은 늘 있으며, 행위시법의

기계적인 적용은 항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시제법의 적용이란 지난 날 제국주의 시대의 법적 논리를 현재의 탈식민민의 시대에도 과거의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수용하라는 요구와 다름 없다고 하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명백히 불평등한 결과만을 초래할지라도 그대로 수용되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표시한다. 설령 과거 무력을 사용한 영토취득 자체의 불법성을 현대의 국제법을 기준으로 소급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상태가 민족자결원칙<sup>46)</sup>에 위배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7)</sup>

### 3. 시제법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

#### 1) 국제인권법상 소급효의 부적용 및 조약법상 강박이론에 따른 시제법 법리의 비판(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

##### (1)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소급효의 부적용

도시환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하여 ‘행위 또는 법 상태의 유효성은 그 시점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시제법의 법리를 비판하면서, 예컨대 UN은 1968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국제협약’(U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45) 박기갑·김자영은 1928년 팔마스 섬 판결이후 상설국제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나 ICJ가 내린 상당수의 판결문에는 시제법 이론이 언급되고 있으나 우리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만일 분쟁당사국이 시제법 적용을 거부하거나 이를 일부 변경할 경우 재판부가 어떻게 할런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러한 전제는 시제법의 적용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강조한 Higgins의 논리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세는 supra 14 참조) 둘째, 시제법 원칙내지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Huber재판관의 논리 전개상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인식 요소는 서로 보완관계가 아닌 상호 모순 내지 충돌관계라는 점이다(이러한 관점은 시제법 제 1원칙과 제 2원칙간 관계를 상호보완적이지도 후자가 전자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본 Elias의 견해와 상이하다. 상세는 supra 16 참조). 박기갑·김자영, 영유권 취득·상실에 있어서 국가의 일방적 행위가 갖는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p.90.

46) 민족자결은 과거 주로 탈식민민의 맥락에서 주장되었으며, 이제는 현대 국제법의 기본 원칙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어떠한 집단이 자결권의 행사를 통해 독립된 국가를 구성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락된 판단 기준은 없다. 민족자결권의 행사와 국가의 영토적 일체성의 존중은 항상 미묘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예컨대, 신 유고연방(세르비아)내 코소보가 2008년 독립을 선언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ICJ는 권고적 의견(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e, Advisory Opinion, 2010 ICJ Reports 403)에서 영토적 일체성의 존중이란 국가 사이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실제 제 10판(박영사, 2020) p.563.

47) *ibid.*, pp.569-570.

against Humanity)을 채택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 범죄 관련 시효부적용 원칙의 보편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 관련, 피고측에 의한 시효의 원용은 시간의 경과가 오히려 원고측의 사실 입증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Theo von Boven(네덜란드 Maastricht대 국제법 및 유럽법 명예교수로서 구유고전범재판소 사무국장, UN 고문방지 특별 보고관 등 역임)이 누누이 언급한 와 같이, 시효의 적용은 종종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당연히 주어져야 할 배상을 피해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는 시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환은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피고들과 일부 학자들이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소추에 대하여, 이를 합법성의 원칙에 따른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sine lege* [no crime without law])를 위반한 것으로 항변<sup>48)</sup>하였는데 당시 재판부가 인도에 반한 죄의 처벌은 시제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sup>49)</sup>한 사례를 일례로 들면서, ‘위안

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급효의 부적용을 통해 시제법의 법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50)</sup>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시제법의 확장을 적극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조약법상 강박이론에 따른 시제법 법리의 비판

도시환은 강박에 의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론(Francis Rey)에 대한 비판론자인 아리가 나가오(강제는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종류의 모든 조약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건인 바, 오늘날 국제법에서는 사정의 강제와 육체의 강제를 구분하여 후자만이 무효일 뿐이고 을사보호조약 이전 대한제국 대신에 대한 협박 사실은 없었다고 하여 동 조약의 유효성을 주장), 노노 후쿠주(전통 국제법 학계가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론을 제시한 Rey의 주장을 인지하고 지지해 왔다는 것은 과대평가라고 비판), 사카모토 시게키(국가에 대한 강박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국가원수나 대신 등 국가기관에 가하는 강박을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인식)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전통 국제법 시대에는 실증주의와 규범주의간 상반된 입장과 무관하게 조약의 체결권자의 의사(意思)의 자유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라는 전제하에 을사보호조약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여야만 하는데, 일본 국제법 학계나 사학계가 이에 침묵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주의적 국가실행을 선취적으로 제시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한다.<sup>51)</sup>

도시환은 한일 강제병합 관련 조약들은 정당하지 못한 무력 사용의 결과로서 조약체결시 유효하

48) 1945년 런던회의(London Conference)의 나치 전범에 대한 처리문제 논의 결과로 성안된 Nuremberg Charter(이하 헌장)는 평화에 관한 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법적으로 다루고자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를 설치한 바, 이는 동 범죄의 기소 및 처벌 관련 형사관할권에 대한 국가의 독점(monopoly)을 최초로 넘어선 조치로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동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장을 적용하여 판시함으로써, 피고측 변호인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사후법(ex pot facto law)의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재판소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장은 제정 당시에 존재하던 국제법의 표현이며, 둘째, 죄형법정주의는 주권에 대한 제약이라기 보다는 정의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이다(The maxim of nullum crimen sine lege is not a limitation of sovereignty, but is in general a principle of justice),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147-148.

49) Cassese는 현재까지의 국가실행을 감안할 때 모든 국제법

죄에 대한 시효의 부적용을 포함하는 국제관습법은 아직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고문과 같은 특정한 국제범죄에 대하여는 특별국제관습법(specific customary rules)에 따라 시효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ibid.*, p.319.

50)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 53권 제 3호(2008), pp.55-56.

51) 도시환, “을사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 60권 제 4호(2015), pp.138-139.

였던 법실증주의<sup>52)</sup>에서도 금지되었으며, 어떠한 규범적 정당성도 무력을 사용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될 수 있는 실정법(lege lata)으로서의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을사보호조약의 경우, 국제법적 측면에서 조약의 유효를 결정하는 성립요건으로서 비준의 불비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효력요건의 하자에 더하여, 일본이 주장해 온 시제법의 법리 역시 현저히 노후되고 부적절하여 이러한 규범은 폐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국제법 관계를 형성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라는 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53)</sup>

## 2) 강행규범(침략행위 및 조약법상 일방당사자의 동의 부재) 위반에 따른 일본의 한국 병합 관련 시제법의 기계적 적용 비판(백충현 교수)

### (1)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법적 평가: 강행규범으로서의 침략 금지와 시제법 적용 문제

백충현은 일본의 한국 병합 관련 법적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주로 일본의 학자 또는 정치가들은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한국 병합이 적

법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 도덕의 관점에서도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전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는 1910년 한·일간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자유지와 평등을 기초로 체결”되었고, 따라서 체결 당시에 법적으로 유효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의 한국 병합이 하나의 역사적 기정 사실(fait accompli)로서 후대에 이르러 규범적 또는 법적 (재)평가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나, 이제는 보다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한국 병합 및 다른 제국주의적 행태가 비합법적이었으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점진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한국 병합 행위가 비록 외형적 형식을 갖추어 합법적 한계 내에서 행해진 듯 보인다 하더라도,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적법성과 정당성 문제에 대한 인위적 구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를 시제법 또는 불소급 원칙이 추구하고 있는 법의 근본 이념을 버리고 현실 타개만을 위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으나, 적법성 및 정당성간 구분은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다. 비록 시제법 또는 법규범의 불소급 원칙이 국제법의 확립된 규칙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국제법상 강행규범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행위(침략 금지 또는 조약당사자간 자유로운 상호 동의 등)에 관해서는 예외의 근거가 될 수 없다.<sup>54)</sup> 셋째, 일본의 한국병합은 불법일 뿐 아니라 정당하지도 못한 행위로 보는 입장으로서, 이는 다수의 한국 학자들의 견해이고, 소수이지만 일부 일본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예컨대, 사

52)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법실증주의는 19세기에 일반적으로 자리잡게 된 법관념으로서 자연법 이론에 대항하면서 발전하였다. 오시진은 법실증주의의 세 가지 테제(Thesis)로서 첫째, 분리가능성 테제: 법과 도덕의 분리, 둘째, 사회환경 테제: 사회적 사실로 존재, 셋째, 법 연원의 단일주의 테제: 의사주의를 분석한 후, 법실증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중 하나로 규범적 법실증주의(normative positivism)의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오시진,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일고찰”, 국제법학자대회(2016.10.21.) 발표문, pp.334-353.

53) 도시환은 식민지 시대에 체결된 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전통국제법 방법론에 여러 가지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시제법 문제는 기존 조약체제와 그 토대로서의 국제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후하고 부당하며 부적절한 규범은 폐절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묵시적 동의의 기초이자, 국제법 관계를 형성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라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시제법문제의 해결에 적용되어야 할 지침이라고 본 오병선의 논지를 인용하고 있다(supra note 50, p.141).

54) 국제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필요가 역사적 흐름에 대한 변화를 압도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시제법 또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법의 일반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Guggenheim은 소급효 금지 원칙이 국제법의 맥락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Tavernier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법재판에서 ‘소급효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었던 선례를 지적한 바 있다. 백충현,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pp. 241-242 in 이태진 외, supra note 26.

부로(Ienaga Saburo) 교수는 한일관계의 발전에 대하여 “이전에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일련의 불평등한 강제적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 불법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백충현은 일본의 한국 병합에 대한 규범적 평가에 있어 정당성 문제를 합법성과 인위적으로 구별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적법성과 정당성은 서로 구별하여 논의할 개념이 아니며, 국제적 행위 혹은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정당성은 언제나 합법성의 기본적 가치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국가간 조약관계의 성립에 있어 침략 금지 또는 동의의 자유와 같이 근본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원칙이 문제가 될 때는 적법성과 정당성의 밀접한 연관성에 기초한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up>55)</sup> 그는 결론적으로 1904년 제 1차 한일협약, 1905년 을사보호조약(제 2차 한일협약), 1907년 제 3차 한일협약 등 일본이 대한제국과 체결한 일련의 조약들은 병합의 완성을 위한 부분적인 성취이며, 1910년 일본의 공식적인 한국 병합은 이미 그 이전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침략완결의 단순한 확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sup>56)</sup>

## (2) 강박에 의해 체결된 병합조약에 대한 한국의 동의 부재 문제

백충현은 1945년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견해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조약 무효화의 근거로 보지 않고, 후자에 대한 강박만을 조약 무효화의 원인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분은 무력사용을 합법적이라고 용인하는 관념의 당연한 논리적 결과였다고 설명한다<sup>57)</sup>, 즉, 국가에 대

한 강박의 경우 조약의 무효화 조치를 부인하는 것은 평화조약의 유효성을 담보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조약 이외에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수단으로 체결된 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19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법실증주의하 유럽 국제법학계에서도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 및 경찰권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체결된 1910년 병합조약은 평화조약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속에서 당사자간 자유로운 상호동의에 따라 체결된 것도 아니어서 법적으로 유효성을 합리화할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sup>58)</sup>

백충현은 결론적으로 일본의 한국 병합은 정의에 반하고, 침략행위를 금지한 당시의 강행규범 위반으로서 시제법 또는 소급효 금지원칙의 기계적인 적용을 할 수 없는 지극히 불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일본과 한국간 일제강점기에 체결된 조약들이 정당하지 못한 무력사용의 결과임이 분명하고, 조약 체결 당시 유행하였던 법실증주의하에서도 금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떠한 규범적 정당성도 무력을 사용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sup>59)</sup>

## 3)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ICJ의 시제법 법리 적용 비판(박기갑 교수)

### (1) ICJ의 시제법 법리 적용에 대한 비판

박기갑은 전술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 사건”에서 ICJ가 명시적으로 시제법 적용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이 판결은 바카시반도의 영유권과 관련 부분에서 ICJ가 유럽중심적 시각에서 식민주의적 과거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

55) 백충현, *ibid.*, pp.223-224

56) 백충현, *ibid.*, p.221

57) 그러나, 국가에 대한 강박은 결국 그 국가를 대표하는 자원에 대한 강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과 구별할 수 없다는 견해도 서구 국제법학계에서 제기되었다(대표적인 예로서 Herbert Weinschel, “Willensmangel in Voelkerrechtliche Vertraege, Zeitschrift fuer Voelkerrecht

(1930) p.50).

58) 백충현, *ibid.*, p.237

59) 백충현, *ibid.*, p.243

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sup>60)</sup> 즉, ICJ는 1884년 영국과 Old Calabar의 왕과 부족장간에 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취득한 Old Calabar에 대한 권원이 시원적(始原的)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는 무주지 선점에 유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식민경영국과 토착민 지배자간 조약 또는 합의는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단지 식민지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는 이근관과 마찬가지로 시제법 적용의 당위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ICJ의 논리에 대하여 알-카사우네 재판관의 다음과 같은 비판적 개별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동 재판관은 “ICJ의 시제법 논리는 타자의 개념<sup>61)</sup>에 기초한 유럽중심적 개념의 산물로서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하다”(…such an approach is clearly rooted in a Eurocentric conception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notions of otherness…the concept of intertemporal law is an irretrievably elusive one)라고 지적하면서, Huber재판관이 고안한 시제법 논리는 그 속에 정적인 요소(static element)와 동적인 요소(evolutionary element)라는 어울릴 수 없는 두 요소를 혼재<sup>62)</sup>시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혼란스러운 개념이어서, 결국 비엔나협약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도 지속적으로 시제법을 외면<sup>63)</sup>했으며, ICJ의 일부 판결에서도 배척되었

을 뿐 아니라 시제법의 가장 중요한 적용 영역인 형사법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기갑은 알-카사우네 재판관이 언급한 ICJ의 무비판적 시제법 적용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동조하면서, 영토적 권원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시제법 이론과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등은 식민지배세력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국가의 지위 내지 식민통치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민세력이 개입한 경우 시제법이나 결정적 기일 등이 갖는 가치는 평가절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64)</sup>고 언급한다.

#### (2) ICJ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는 식민지배 사실의 단순화 경향 비판

박기갑은 ICJ가 비유럽지역에서의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 그 당시의 정치적 관계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식민경영국의 행위나 법적 문건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가령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에서의 ICJ판결 (ICJ는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간 수역의 남쪽에 위치한 Hawar섬은 바레인이, 자난(Janan)섬은 카타르의 주권에 속한다고 판시)에 있어, 1939년 영국 정부의 결정(1937.7.11. 영국 정부가

60) 박기갑, 식민경영국의 행위가 영유권 및 경제획정 관련 국제판결에 미친 영향-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p.33.

61) 국제법의 전통적인 주체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타자의 관점에서 본 국제법 관련, Anne Orford, *International Law and It's Ot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62) 이와 같은 비판은 전술한 감치코보-나지마로스 계획 사건 판결(동시대성 원칙에 따른 조약해석 판시)의 개별의견에서 Bedjaoui재판관이 언급한 조약 해석에 있어서의 '고정적 참조' 및 '유동적 참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3) 유럽인권협약이 채택된 1950년 이후로 인권의 종류 및 범위가 확장되었는 바, 이러한 인권 분야의 발전은 1950년 동 협약 채택 당시에는 당사국들이 의도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유럽인권협약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태도는, *Tyrer v. United Kingdom* 사건(1978년)이후 조약의 해석에 있어 문언주의(textualism)와

의도주의(intentionalism로 대표되는 근원주의(Originalism)에서 탈피하여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현재 상황을 참작한 발전주의적 해석론이 자리잡게 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G.Letsa, "Intentional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ECHR", in M. Fitzmaurice et.al.(ed.), *Treaty Interpreta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30 Years on*(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p.26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인권재판소가 지속적으로 시제법을 외면했다는 알-카사우네 재판관의 지적은 Al-Adsani사건(2001년)이나 Markovic 사건(2006년)에서의 제한적 해석에 따른 판결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사건에서 동 재판소가 시제법의 확장 적용 입장을 취한 최근의 경향과는 상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64) J.Castellino and S.Allen, *Title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 Temporal Analysis*(Ashgate, 2003), p.25.

“하와르 섬은 바레인에게 귀속된다”는 결정을 당시 카타르와 바레인 지배자에게 각각 통보)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3인 재판관(Bedjaoui, Rangjeva, Koroma)들로부터 비판받았다고 하면서, 공동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동 재판관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한다. 첫째, 하와르 제도 영유권 판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과 쟁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939년 영국의 상기 결정에만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둘째, 재판부의 다수의견은 영국의 결정을 검토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으로 접근하여 동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당시 걸프지역에서의 영국과 카타르간 실질적 관계, 즉 역사적·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단일 근거에만 기초하여 대국 중심주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ICJ의 법리(1939년 영국 정부의 결정이라는 단일한 법적 근거에 무비판적이고 압도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여 영유권 문제 결정)는 상기 공동 반대의견 뿐 아니라 재판관의 개별의견을 통해서도 비판 받았는 바, 그 요지는 1939년 영국 정부의 결정과 유사한 행위는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엄밀한 비판적 고찰을 행해야 하며, 이 경우 비판적 고찰의 잣대는 “오늘날의 해석방식과 현대국제법의 규칙과 원칙”(…by the yardstick of modern methods of interpretation and on the basis of the rule and principl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이다.<sup>65)</sup>

또한, 박기갑은 전술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 사건의 ICJ 판결에 대한 알-카사우네 재판관의 비판과 같이, ICJ는 지금까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개입된 영토분쟁 및 경계 획정 관련 사건에서 시제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식민지배 당시

상황을 지극히 단순화시키고 있거나, *uti possidetis juris* 원칙 (“so that you may rightly possess”를 의미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로마법상의 원칙)<sup>66)</sup>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sup>67)</sup>

### (3) ICJ의 ‘제국주의적 국제법’ 담론이 일본과의 영유권 및 과거사 문제에 있어 가지는 함의

박기갑은 탈식민지화를 달성한 현대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ICJ가 여전히 유럽중심의 이른 바, ‘제국주의적 국제법’의 울타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식민경영국인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사실이라고 보는 바, 이는 ICJ의 다수의견이 보호관계 설정을 통한 강대국의 피보호국을 대리한 행위들을 판단할 때, 비유럽지역 피보호국들의 식민 지배 관련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지 않고, 보호국의 지위나 행위를 식민경영국보다 낮추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점이 을사보호조약에 따라 피보호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일본과의 국제소송 대응 논리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난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ICJ가 지금까지의 일반적 성향과 같이 시제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보호국으로서 일본이 행한 법적 행위들에 압도적 중요성을

66) 동 원칙은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국경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 비록 사실상의 지배가 없었던 지역이라도 법적으로는 통치권이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 3국이 선점 가능성을 무산시켰는 바, 1964년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on) 결의 제 16호에서도 동 원칙이 수용되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 당시의 국경을 존중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지 주민의 실정과는 무관하게 구 식민세력이 편의적으로 획정한 경계를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동 원칙이 서구적 시각의 연장이라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원칙을 수용하여 독립 직후에 우려되는 국경분쟁과 혼란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 즉, 이들 국가들은 안정이라는 가치를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인섭, *supra* note 46, pp.558-559).

67) *supra* note 560, p.72

65) *supra* note 60, p.82

부여하게 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강박으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나,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불가능 주장 등은 이러한 일본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경우 당시 적용되었던 국제법 이론에 따라 보호령(protectorate)은 적법한 체제였고 따라서 한국 정부가 강력히 부인하는 일제 강점 36년의 한반도 통치는 국제법상 면죄부를 받는 형국으로 끌려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sup>68</sup>고 하면서, 이러한 ICJ의 경향을 극복하는 대응 논리의 시작으로 당시 한·일간 보호관계의 성격과 보호국 권한의 범위를 연구<sup>68</sup>하여, 보호국의 권한을 넘어선 법률관계의 효력 및 보호국인 일본의 영토처분 법리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보호국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임을 입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기갑은 결론적으로 ICJ의 판결 분석을 통해 ICJ가 과거 식민경영국 또는 보호국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보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지난 60여년간 확립되어 온 탈식민지화

라는 현대 국제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ICJ를 비롯한 국제사법기관은 여전히 식민경영국 혹은 보호국의 결정에 압도적 가치를 부여한 나머지, 분쟁당사국의 다른 주장(토착민이 보유한 시원적 권원, effectivite 등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를 결여하고 있다. 둘째, ICJ는 비유럽지역에서 ‘전근대적’ ‘주체들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유럽의 식민경영국들이 행한 행위보다 매우 낮은 인식론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당시에 보편화되지 않았던 유럽중심 국제법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강요하여 그 지역 고유의 통치 방식과 주체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셋째, ICJ는 당시 제법 적용에 매몰됨으로써 현대국제법적 적실성의 반영을 배제한 채, 이미 청산된 과거 식민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재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접근은 과거 식민주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제법을 기계적,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과거 식민주의적 세계관과 국제법의 정당성을 재확인해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일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ICJ는 유사한 식민지배 역사를 가진 개별 사건에서 ICJ의 기본적 입장 및 결론은 어느 정도 유지한 채 그 논리가 상당히 변하고 있어<sup>69</sup> 동 재판소의 법리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기갑은 이러한 ICJ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영유권 문제가 ICJ에 의해 정당한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식민경영국의 행위와 피보호국인 비유럽지역 국가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국제법의 차원에서만 판단할 경우 효력상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도 할 수 있는 ICJ의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불균형적 인식태도가 ICJ는 물론 여타 국제사법기관에 깊숙하게 내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68)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아리가 나가오와 타치 사쿠타로우간 이루어진 국제법상 보호국의 개념에 관한 논쟁(이른 바 보호국 논쟁)은 한·일간 보호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타치는 아리가가 그의 저서 “보호국론”(1906)에서 제시한 4분류(첫째, 유럽에서 체결한 보호관계, 둘째, 비유럽지역에서의 보호국, 셋째, 제국령내 자치적 권력의 승인, 넷째, 미개지역에서의 식민지 지배권 설정)관련,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국제법상 보호관계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리가를 비판하고, 보호국을 첫째, 행위능력상 제한을 받더라도 피보호국이 직접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유형과 둘째, 행위능력이 한층 더 제한되어 보호국이 대외관계에 있어 피보호국을 대표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타치는 19세기 독일법의 실증주의 영향(특히 보호관계에 있어 피보호국이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나, 그 행위능력이 제한된다고 본 P.Heilbom의 저서(Das Voelkerrechtliche Protektorat))에 따른 형식논리를 수용하여,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화 정책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니시 다이아 교수(일본 간사이대)의 “국제법으로 본 일본이 조선지배”제하 ‘발표문(고려대아세아문제 연구소 현대일본센터·간사이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2019.12.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pp.5-6).

69) supra note 60, pp.85-87.

아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제기는 한국에게 큰 위험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ICJ의 법리(시제법 포함)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4) 국제법상 노후폐절 또는 폐기 및 형평의 원리에 근거한 시제법의 확장 적용 정당화(오병선 교수)

오병선은 시제법의 규칙이 법의 안정과 변화의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동적 현실적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낡은 규범이나 현저히 부당하거나 부적법한 규범은 노후폐절 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묵시적 동의의 기초이며, 국제법 관계를 형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라는 요청은 법의 일반원칙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시제법의 법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70)</sup>

##### (1) 국제법상 노후폐절 또는 폐기의 개념(Desuetude or Obsolescence)

노후폐절(이하 노폐)은 나중에 형성된 국제관습법이 기존 조약을 개폐한다는 뜻인 바, 관습(custom)이 법적 확신을 수반하는 관행의 누적을 통한 일정한 규칙의 확립이라고 한다면, 노폐는 특정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누적된 결과, 관습이나 조약의 소멸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관습’(negative custom)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70) supra note 17, p.78.

71) ILC는 비엔나협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노폐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폐절’(obsolescence)이나 ‘노폐’(desuetude)가 조약 종료의 사실상의 원인일 수 있지만, 그 것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종료의 법적 기초는 그 조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표시된 그들의 동의이다... ‘폐절’이나 ‘노폐’의 경우는 조약이 그 당사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제 54조 (b)호]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rthur

Glennon은 1945년 UN헌장에 반영된 무력의 사용에 관한 국제법 규칙이 그 이후 발전된 선제적 방어론에 의해 실제 무력 공격이 없었더라도 예방적으로 무력의 사용을 허용하는 예방적 방어(preventive defence)라는 새로운 관습법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정당화 근거로 노폐의 관념을 사용한다. 즉, 국가가 어떤 규칙에 대하여 적응해오지 않았거나 또는 더 이상 이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행 규칙과 충돌하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동 규칙의 노폐 문제가 발생한다. Glennon은 선행하는 의사와 충돌할 때, 다시 말해서 많은 국가들이 어떤 규칙을 위반하는데 합류하여 규범의 의무적 성격을 부인하는 국가실행이 축적될 경우 즉, “(규범의) 비준수(non-compliance)가 비법(非法, non law)화 하는”(non compliance shades into non law.) 시점에 이르게 되면, 후행하는 의사가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선행하는 규칙은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그 규칙에 대한 노폐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sup>72)</sup>

##### (2) 국제법상 형평의 원리

이익 충돌과 법의 해석 문제에 대한 형평적 접근은 국제법상 형평의 문제로서 오병선은 국제법상 형평의 원리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H. Lauterpacht와 Edith Brown Weiss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Hersch Lauterpacht는 국제법의 분쟁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법의 범위내에서 형평적 법해석과 논증과정을 통해서(through a process of equitabl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reasoning)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건에 맞추어 국제법을 발전 및 적응시키도록 하는 ‘사법적(司法的)입법’(judicial law-mak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Lauterpacht는 물론 국제재판소가 국제사회의

Watts (e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9-1998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및 YBILC (1966-II), p.237.  
72) Michael J. Glennon, “How International Rules Die”, Georgetown L.J.Vol.93 (March 2005) p.942 및 p.960.

객관적 변화에 따라 법을 적응시키도록 할 지위에 있지만, 이에 추가하여 사법행위의 가능성을 가진 특정한 법규와 법리가 있다고 하면서 사정변경의 법리,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 그리고 국제법상 시제법의 측면을 그 예로 들고 있다<sup>73)</sup>. 둘째, 지구적 환경 변화의 법적 규제 속에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하는 환경 보호의 책임을 ‘세대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Edith Brown Weiss의 이론 관련, 오병선은 이를 창설된 권원에 기초한 이익의 보호와 현재 발전된 법규범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시 그 이익의 조정을 형평적 배분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74)</sup>

#### 5) 근대 국제법학자들의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한 시제법 법리의 문제점 비판 (오시진 교수)

오시진은 상기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의 ICJ소수의견에서 나타난 “당시 법”으로서의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근대 국제법학자들의 문명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설령 ICJ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여 보호조약과 같은 식민지배 조약을 유효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유럽국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문명론도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ICJ가 당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던 국제법을 형식적으로 수용한 시제법 원칙을 고수하는 한, 오늘날의 국제분쟁에서도 문명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법적 결과가 과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야기된 오늘날의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명론이 아직까지도 현대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sup>75)</sup>

#### (1) ICJ의 소수의견: 19세기 “당시 법”으로서 문명론

전술한 바와 같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ICJ다수의견은 1884년 영국과 Old Calabar간 체결된 보호조약 자체는 영토취득의 근거가 되지 못하나, 영국은 바카시 반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의해 권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 족장의 동의에 의해 권원이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1913년 영·독 조약에 따라 영국이 이러한 권원을 독일에 양도함으로써, 독일은 1913년 동 반도의 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취한 재판관들은 보호조약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Rezek 재판관은 1884년 조약에 따라 영국이 해당 아프리카 지역의 외교권을 감독할 권한(power to oversee)을 부여받았지만, 동 영토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양도된 것은 아니므로, 바카시 반도의 국경을 획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1913년 영·독 조약은 해당 조항에 한하여 무효(invalid)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Koroma재판관은 ICJ다수의견에서 1913년 조약으로 영국이 독일과 국경을 획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한 것은 상기 보호조약의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전술한 ‘pacta sunt servanda’원칙에 위배되는 바, 영토적 권원은 보호조약에 따라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1913년 조약은 영국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 조약이 된다고 비판하였다. 셋째, Ranjeva재판관

73) Sir Hersch Lauterpacht, *The Function of Law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33)(introduction by Martti Koskenniemi, 2011 edition), pp.264-265 필자의 소견에 의하면, Lauterpacht는 시제법의 법리가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합성을 갖도록 국제법을 발전·적용시키는 사법적 입법 기능을 할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74) Edith Brown Weiss, “Intergenerational equity: a legal framework for global environmental change”, Chapter 12 of *Environmental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New Challenges and Dimensions*, edited by E.B.Weis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1992), (supra note 17, p.81에서 재인용).

75) 오시진, “국제법상 문명론의 현대적 함의: 카메룬-나이지리아간 영토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 60권 제 2호(2015), p.153.

은 “당시 법”의 개념을 해석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ICJ가 1884년 조약의 성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당시 문명국 요건은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기 위한 요건이었는데, 문명국이 주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전통 토착사회, 특히 아프리카 사회들은 국제법상 주체 지위를 향유할 수 없었다고 부연한다. Ranjeva 재판관에 의하면 시제법 원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였을 때 “놀라운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서, 토착 부족장과의 조약 관계에 대해서는 “pacta non sevanda”가 적용되어 보호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든지간에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국가간에 적용되는 법을 국제법으로, 유럽 국가와 비유럽권 토착 통치자간에 적용되는 법을 식민지법(colonial rule)으로 구분하는 것이 식민지배 과정의 법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오시진은 Oppenheim의 1912년 국제법 교과서(Lassa Oppenheim, *International Law: A Treaties*, vol.1, 2<sup>nd</sup> edition)을 인용하여, 당시 국제사회 밖에 위치한 보호국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되며, 이들과의 보호관계는 병합에 이르는 첫 단계(Protectorates...are actually nothing else than the first step to annexation)에 불과하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보호관계의 경우, 보호조약에 의해 권원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선점을 통해 권원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해당 영토를 보존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sup>76)</sup>

## (2) 근대 국제법학자들의 문명론

19세기에는 당시에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들의 견해 또는 학설이 당시 국제법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였는데, Oppenheim은 학자들의 저술이 재판관의 판결문처럼 관습법을 확인하고 조약의 의미를 확정하는데 필요하였으며, 특히 국제법 영역에서 재판관에 의해 만들어진 “판정법”(judge-

made law)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77)</sup> 당시에 Wheaton Lawrence, Westlake, Heffner 등 다수의 저명한 국제법학자들은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유럽 기독교 문명권으로 제한하여, 관행과 관습을 공유하지 않는 비문명권을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8)</sup>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식민지배 과정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자있는 조약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유럽 국가들간에 적용되는 법이 비유럽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 조약이 당연 무효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을 대상으로 볼 때, 당시 법 혹은 시제법을 적용할 경우, 이와 같은 문명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당시 국제사회가 이른바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여 식민 지배를 법적이거나 도덕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배의 법적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했다면, 이는 전술한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구분하는 법체계를 승인하는 것이라도 볼 수 있다.

오시진은 ICJ가 당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국제법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시제법 원칙을 고수하는 한, 오늘날 국제분쟁에서도 문명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명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국제사회에서의 문명 개념, 비법적 개념인 문명이 법체계에 들어오게 된 과정, 문명국과 주권국가간 상관관계, 당시 기준으로 본 문명론의 문제점 등)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서구의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이에 대응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리의 기초와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79)</sup>

77) Lassa Oppenheim,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Its Task and Method”,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1908), p.315.

78) Gong이 지적하였듯이 비유럽국가들이 문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제법의 울타리와 보호 밖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Geritt W.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6.

76) *ibid.*, p.148.

## VI. 시제법 원칙들간의 상호관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제법의 법리 및 확장 적용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의 대립은 결국 시제법 제 1원칙과 제 2원칙간 상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두 원칙중 어떤 원칙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가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시제법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입장과, 그 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법 운영을 통해 법의 동적 현실적합성을 모색하려는 입장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Huber 재판관이 제시한 시제법의 두 원칙은 성격상 서로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한다고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제 1원칙의 경우 법률불소급 원칙의 파생 원칙인 반면에 제 2원칙은 권리의 존속에 관한 법리로서 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후자와 관련, Higgins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동 법리가 제시된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iggins의 논리에 의하면 Huber 재판관의 판시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최초의 권리 창설 이후 권리의 영구적 존속을 위해서는 그 이후의 법이 요구하는 실효적 점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80)</sup> 하지만, 이러한 Higgins의 주장은 시제법의 법리가 단지 영토권원의 취득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권리의 존속을 발현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결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시제법의 확장 적용, 즉 시제법의 제 2원칙에 대한 축소 해석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남아시아 사건 판결 등 일부

사건의 판시에서 ICJ가 시제법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단지 국가만의 의사를 근거로 하지 않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조약의 효과성을 기하도록 하여, 현재까지는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ICJ나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현재 상황에 비추어 조약을 해석할 때 ‘조약 체결 당시 당사국들의 의사를 의제’하여 시제법 원칙과의 양립을 시도하는 판결(서남아프리카 사건, 에게해 대륙붕 사건, Tyrer 사건 등)을 상세히 검토해 보면, ICJ를 비롯한 국제사법기관이 아직까지는 시제법의 예외 인정, 즉 시제법의 확장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를 피하고, 조약 체결 당시 당사국의 의사가 그러했을 것이라고 의제하는 논리를 채택함으로써, 조약의 효과적인 해석과 시제법의 원칙간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이를 인지했다면 당사국들이 그렇게 의도했을 것이라고 의제하는 논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무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sup>81)</sup>

필자의 소견으로는 시제법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영토분쟁이나 조약의 해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시제법의 문제는 국제규범이 형성을 둘러싼 상황중 시간적 요소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 뿐 아니라, 이러한 규범과 주변 세계의 상황 변화가 그 규범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문제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법규범의 변천 문제를 고찰한 Greig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과거는 현재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재의 인식이 일정 시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결국 과거에 체결된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sup>82)</sup> 전술한 바

79) supra note 75, p.154.

80) “The Huber dictum, taken in its entirety, may be taken as providing that by virtue of the principle of the principles of inter-temporal law a State must continue to maintain a title, validly won, in an effective manner-no more and no less.”(supra note 14. p.174)

81) 신수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31조 3항 (c)의 현대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10.12), p.85.

82) D.W.Greig, Intertemporalitiy and the Law of Treaties(The

와 같이 IDI가 “국제공법에 있어 시제법 문제 관련 결의”의 전문(preamble)에서 강조한 것처럼 국제법 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원칙의 유지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견 시제법 제 1원칙과 제 2원칙간에 상호 모순 내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실의 변화에 상응하는 동적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적으로 Elias가 언급한 것처럼 ‘동적 법체계로서의 국제법(international law as a dynamic legal system)에 따라, 제 2원칙이 제 1원칙에 대한 제약요인임<sup>83)</sup>을 인식하되, 두 원칙간 관계의 상보성(complementarity)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관계의 정립과 장기간에 걸쳐 이에 기초한 국가실행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본다.

## V. 결론

국제법상 시제법의 문제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변화라는 일견 상반된 목표를 시제법의 법리를 적용하여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있다. 이러한 시제법의 문제는 영토문제나 조약의 해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바, 이는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국제관계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고전 국제법이 현대 사회에 있어 어떠한 적합성(relevance)을 가지는지 또는 현대사회에서도 합리성을 지니는지를 검증받게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제법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

문이다. 즉, 시제법의 문제는 국제규범과 주변 세계간 상황의 변화가 양자 간에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ICJ가 ‘차고스 군도(Chagos Archipelago)에 관한 권고적 의견(2019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재판소에 부탁된 법적 사실에 적용될 적용 법규의 범위 요소와 관련하여, 동 재판소가 시간적 요소(1965년부터 1968년까지)와 함께 고려한다고 밝힌’법의 진화 ‘(evolution of the law)는 일반적으로 법의 현실과 조약문(text of treaty)간 괴리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는 바, 이는 ICJ가 특정 시점에 확정적 내용을 가진 법규의 적용이라는 법적 안정성 가치와, 역사적 성격의 법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는 법적 합당성 가치 사이에서 후자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84)</sup>

ICJ가 동 권고적 의견에서 채택한 진화론적 조약해석론과 가치중심적 접근법은 시제법의 확장 적용과 시제법 원칙간 상호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법리 연구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제법의 법리와 적용에 관한 연구는 국제법의 안정과 함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천하는 국제사회의 이상과 현실간 괴리를 극복<sup>85)</sup>하고 국제법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은 보편성과 규범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바, 근대 국제법이 유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1), pp.143-144.

83) Elias는 시제법 제 2원칙이 시제법 제 1원칙에 대한 제약요인(a limiting factor)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시제법의 확장 적용을 다양한 근거(국제인권법, 국제강행규범, 탈식민주의, 국제법상 노후폐절 및 형평의 원리, 근대 국제법상 문명론의 비판적 고찰)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필자는 시제법 제 2원칙이 국제규범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시제법 제 1원칙의 상승요인(an uplifting factor)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84) 정경수, “미완의 비식민화 잔여물의 청산-차고스 군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019-III (통권 제 54호), pp.132-133.

85) 시제법의 확장 적용이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관습법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 국가의 국가실행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박기갑 교수가 국제법상 *lex ferenda*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분석한 후 내린 결론(즉, *lex ferenda*를 무조건적으로 제시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은 법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이행 및 준수에 역행한다는 것)은 시제법의 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lex ferenda*가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추가적인 지적은 시제법의 확장 적용론이 추구하는 목표점과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기갑, “국제법상 *lex ferenda*”, 『국제법학회논총』, 제 63권 제 4호 (2018), p.153.

럽 제국주의의 청산과 함께 발전했다면, 현대 국제법의 역사적 소명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 또는 시제법이라는 법리 극복을 통한 제국주의의 잔재인 식민주의 청산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86)</sup>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와 적용에 관한 연구는 나아가서 현실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간 영토 및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평화로운 역내 질서를 구축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sup>87)</sup>으로 기대하여 본다.

86) 이석우, “아프리카의 식민지 문제와 영토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 49권 제 2호(2004), p.96.

87) supra note 5, p.29.

# 최근 국제형사재판소 판결 동향과 시사점 - *Al Hassan* 사건 항소심재판부 판결과 아프가니스탄 수사개시 허가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 미 경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핵심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이다. 대규모로 잔학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ICC는 이러한 불처벌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규정)<sup>1)</sup>은 핵심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의 주요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형사규범을 명문화·명확화하고 있어 국제형사법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CC규정 당사국은 2020년 6월 현재 아시아 19개국, 아프리카 33개국, 동유럽 18개국,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28개국, 서유럽 25개국 등 모두 123개국이다.<sup>2)</sup> 우리나라는 ICC

규정의 83번째 당사국이며<sup>3)</sup> ICC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up>4)</sup>

국제형사법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기구인 ICC에서는 현재 9개의 예비조사(콜롬비아, 나이지리아, 기니, 이라크/영국, 팔레스타인, 필리핀,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I, 베네수엘라 II)와 13개 사태(콩고, 우간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다르푸르, 케냐,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말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II, 조지아, 부룬디, 방글라데시/미얀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논의

---

문 및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ICC가 부룬디 정부의 인도에 반한 죄 조사에 착수하자 부룬디 정부는 ICC를 탈퇴하였다.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얼마 전인 6월 8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ICC가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한 필리핀이 2019년 3월 17일 ICC를 탈퇴하였다. 그외에 감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016년 탈퇴 통보를 하였다가 2017년 동 통보를 취소하였다; 이후 키리바시가 2019년 11월 26일 가입하면서 현재 ICC 회원국은 총 123개국이 되었다.

- 3) ICC규정은 2002년 11월 8일 제234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3년 2월 1일 조약 제1619호로 발효되었다. ICC규정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중이다.
- 4) 최태현,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정과정에서의 한국의 기여”, 『서울국제법연구』 13권 (2006);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현황: 로마회의의 이후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001) 참조.

1) ICC규정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2) 2017년 10월 27일 부룬디가 ICC를 탈퇴하였는데, 이것이 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CC를 탈퇴한 사례이다. 2015년 은쿠룬지자 부룬디 대통령이 3선 도전을 선언한 다음 발생한 유혈 충돌 사태에서 수백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반정부인사들을 고

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말리 사태의 *Al Hassan* 사건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 II. 말리 사태

### 1. 사건의 개요<sup>5)</sup>

말리는 2000년 8월 16일 ICC규정을 비준하였고 2012년 1월 이후 자국에서 저질러진 범죄 상황에 대하여 2012년 7월 ICC에 회부하였다.<sup>6)</sup> 말리에서의 조사는 2012년 1월 이후 가오, 키달, 팀북투의 북부 3개 지역에서 저질러진 전쟁범죄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추관실(Office of the Prosecutor)은 2013년 1월 수사개시 과정에서 “2012년 말리 사태는 1월 17일 전후 북부 말리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사건과 2012년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 실시 직전인 3월 22일 군사정권이 투레 대통령을 축출한 2차 쿠데타 사건 등 두 가지 주요 사건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7)</sup> 동 보고서에는 팀북투에서의 이슬람 성도들의 성지 훼손, 아구엘호크 수용소의 70-153명의 수감자를 처형한 혐의, 그리고 약탈 및 강간 사건 등의 행위도 저질러졌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군사 쿠데타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고문과 강제실종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sup>8)</sup> 소추관은 2012년 1월 이후 말리에서 ICC규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쟁범죄(살인, 신체절단, 잔혹한 대우 및 고문,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

의 판결 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 약탈, 강간 등)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말리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Al Mahdi* 사건과 *Al Hassan* 사건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Al Mahdi* 사건의 피고인 Ahmad Al Faqi Al Mahdi에게 1심재판부 VIII는 2017년 8월 17일 Al Mahdi가 고의로 팀북투 지역의 종교 및 역사적 건물의 공격을 지휘한 것에 대하여 개인 및 팀북투 공동체에 집단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270만 유로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명령을 내렸다.<sup>10)</sup> 그러나 1심재판부는 Al Mahdi가 경제적 빈곤 상태이므로 피해자 신탁기금(the Trust Fund for Victims: TFV)이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신탁기금이 2018년 2월 16일까지 이행 계획 초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1)</sup> Al Mahdi는 징역 9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sup>12)</sup> 2018년 3월 8일 항소심재판부는 이하와 같이 손해배상 명령을 확정하였다.<sup>13)</sup> 항소심재판부는 1심재판부가 개인 배상 신청자의 행정심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신탁기금에 개인별 심사 진행의 지원을 요청한 것은 1심재판부의 재량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sup>14)</sup> 그리고 항소심재판부는 피해자 신탁기금이 담당하게 된 심사절차를 포함하여 배상 절차 전반에 대하여 1심재판부가 사법적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9) Situation in Mali, “Article 53(1) Report” (16 January 2013), para. 7.

10)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Reparations Order”, Trial Chamber VIII, ICC-01/12-01/15-236 (17 August 2017), para. 135.

11) *Ibid.*, paras. 136, 138, p. 60.

12)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ICC-01/12-01/15 <<https://www.icc-cpi.int/mali/al-mahdi>> (2020년 6월 20일 방문).

13) ICC Press Release, “Al Mahdi case: Reparations Order becomes final” (8 March 2018)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pr1363>> (2020년 6월 20일 방문).

14) *The Prosecutor v. Ahmad Al Faqi Al Mahdi*, “Public redacted Judgment on the appeal of the victims against the ‘Reparations Order’”, Appeals Chamber, ICC-01/12-01/15-259-Red2 (08 March 2018), para. 72.

5) Situation in Mali, “Jurisdiction in the general situation”, ICC-01/12, <<https://www.icc-cpi.int/mali>> (2020년 6월 20일 방문).

6) ICC규정 당사국은 ICC에 사태를 회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별한 요건이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ICC규정 제 14조). ICC 재판권 행사 절차 중 주권침해적 요소가 가장 적고 관계국의 많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Situation in Mali, *supra* note 5.

8) *Ibid.*

판단하였다. 또한 이미 배상을 신청한 자와 배상을 신청할 자는 1심재판부의 개인 배상 자격여부에 대한 피해자 신탁기금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1심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Al Mahdi에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신청자도 개인 배상 신청자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명령 사항을 변경하였다.<sup>15)</sup>

## 2. Al Hassan 사건

말리 사태의 두 번째 사건인 *Al Hassan* 사건은 ICC 전심재판부에서 공소장 범죄사실 확인 결정이 확정되었고<sup>16)</sup> 2020년 7월부터 1심재판이 개시된다.<sup>17)</sup> 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

###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말리 사태의 두 번째 사건인 *Al Hassan* 사건의 피고인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는 팀북투에서 이른바 ‘지하드의 점령’을 자행하였던 안사르 에드딘(Ansar Eddine)의 일원이었으며 사실상의(*de facto*) 이슬람 경찰서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팀북투의 이슬람 법정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그 결정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이슬람 경찰력을 동원하여 팀북투에서 이슬람 성도들의 묘소를 파괴하는 것에 가담하였다. 또한

강제결혼 정책에도 참여하여 팀북투의 여성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반복적인 결혼을 하게 하였으며 여성과 소녀들의 강간과 성 노예화에도 가담하였다.<sup>18)</sup> Al Hassan은 2017년 말리에서 지하디스트를 쫓던 프랑스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말리 정부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3월 27일 전심재판부 I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2018년 3월 31일 ICC로 이송되었다.<sup>19)</sup>

공소사실 확인을 위한 심리는 2019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다. 2019년 9월 30일 전심재판부 I은 Al Hassan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혐의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sup>20)</sup> 2019년 11월 21일 1심재판부 X가 구성되었으며 올해 7월 14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동 사건에 대한 소추부의 증거제출은 올해 8월 25일부터 개시한다고 결정하였다.<sup>21)</sup>

올해 4월 23일 전심재판부 I은 *Al Hassan* 사건에 대한 소추관의 공소사실 변경 요청을 수락하였다.<sup>22)</sup> 동 결정의 결과 인도에 반한 죄에는 성적 노예화, 강간, 강제매춘 및 강제결혼을 포함한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추가되었고, 전쟁범죄에는 잔혹한 대우, 성적 노예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및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sup>23)</sup>

15) *Ibid.*, paras. 95-99.

16)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Décision relative à la requête de la défense aux fins d’autorisation d’interjeter appel de la Décision relative à la confirmation des charges et transmission du dossier à la présidence en vertu de la règle 129 du Règlement de procédure et de preuve”, Pre-Trial Chamber I, ICC-01/12-01/18-498-Red2 (18 November 2019) <<https://www.icc-cpi.int/Pages/record.aspx?docNo=ICC-01/12-01/18-498-Red2>> (2020년 6월 20일 방문).

17) ICC Press Release, “Al Hassan case: Trial to open on 14 July 2020”, (6 January 2020)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PR1507>> (2020년 6월 20일 방문).

18)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Case Information Sheet” ICC-PIDS-CIS-MAL-02-010/20\_Eng (June 2020).

19) *Ibid.*

20) 동 결정은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기밀로 하였고 결정문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후 2019년 11월 13일 공개되었다.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Rectificatif à la Décision relative à la confirmation des charges portées contre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Pre-Trial Chamber I, ICC-01/12-01/18-461-Corr-Red (13 November 2019).

21)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Decision Setting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Trial”, Trial Chamber X, ICC-01/12-01/18 (6 January 2020), p. 9.

22) ICC, Press Release, “Al Hassan case: ICC Pre-Trial Chamber I accepts amendments to the charges” (23 April 2020).

## 2) *Al Hassan* 사건 항소심재판부 판결 (2020년 2월 19일)

*Al Hassan* 사건 항소심재판부는 2020년 2월 19일 *Al Hassan*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하였다.<sup>24)</sup> 항소심재판부는 동 사건이 재판소의 추가적 조치를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중대성(sufficient gravity)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2019년 9월 27일 전심재판부 판결을 확정하고 재판적격성(admissibility)<sup>25)</sup>을 인정하였다.<sup>26)</sup>

*Al Hassan*은 전심재판부가 재판적격성 심사를 위해 관련되지 않은 주변 사정까지 고려하였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잘못된 ‘해당 사건’의 정의를 채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Al Hassan*은 전심재판부가 중대성 평가에서 자신의 개별적 행동의 본질에 충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항소심재판부는 *Al Hassan*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ICC규정 제17조 제1항 (d)호<sup>28)</sup>의 해석과 관련하여 첫째, 중대성 요건의 목적은 무엇인지, 둘째, 해당 사건의 파라미터(parameters)는 무엇인지, 셋째, 중대성 요건 심사와 관련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up>29)</sup>

항소심재판부는 중대성 요건의 목적은 ICC가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의 모든 요소를 기술적으로(technically) 충족하는 행위이지만 부차적인(marginal) 중대성밖에 갖지 못한 사건을 재판소의 권한으로부터 배제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sup>30)</sup> 그리고 ICC규정 제17조 1항 (d)호는 동 규정의 배타적인 성격(exclusive nature)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 규정은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재판소의 관할범죄로서의 요건을 만족시키더라도 특정한 사실이 재판소의 개입을 요구할 정도로 충분히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sup>31)</sup>

둘째, 해당 사건의 파라미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지금까지 제17조 제1항 (d)호에 따른 중대성 요건을 평가할 목적으로 ‘해당 사건’의 파라미터를 정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다만 동조 동항 (a)호<sup>32)</sup>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있

23) *Al Hassan*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안사르 에드딘/마그레브 알카에다가 팀북투 지역의 민간인 주민에게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맥락에서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죄(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특히 강제결혼을 포함한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팀북투에서 발생한 비 국제적 성질의 무력분쟁 중 저질러진 전쟁범죄(고문, 잔혹한 대우, 인간의 존엄성 침해,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종교를 위해 제공되는 건물 및 역사적 건조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강간, 성적 노예화)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Case Information Sheet”, *supra* note 18.

24)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Al Hassan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entitled ‘Décision relative à l’exception d’irrecevabilité pour insuffisance de gravité de l’affaire soulevée par la défense’”, Appeals Chamber, ICC-01/12-01/18-601-Red (19 February 2020), para. 126.

25) ICC규정 제17조는 재판적격성 요건으로 중대성(gravity)과 보충성(complementarity)을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재판적격성에 관한 예비결정)와 제19조(재판소의 관할권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이를 결정하는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6) ICC, Press Release, “Al Hassan Case: ICC Appeals Chamber confirms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and the sufficient gravity of the case” (19 February 2020).

27)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Al Hassan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entitled ‘Décision

relative à l’exception d’irrecevabilité pour insuffisance de gravité de l’affaire soulevée par la défense’”, *supra* note 24, paras. 34-35.

28) ICC규정 제17조 [재판적격성의 문제] 1. 전문 제10항과 제1조를 고려하여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사건의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결정한다. ... (d) 사건이 재판소의 추가적 조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이 없는 경우

29)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Al Hassan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entitled ‘Décision relative à l’exception d’irrecevabilité pour insuffisance de gravité de l’affaire soulevée par la défense’”, *supra* note 24, para. 41.

30) *Ibid.*, para. 53.

31) *Ibid.*, para. 55.

32)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거나 또는 기소된 경우. 단, 그 국가가 진정으

다고 하면서, 항소심재판부는 수사 중인 피의자와 ICC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의하여 파라미터가 정해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는 다른 파라미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ICC규정 제17조 제1항 (d)호의 목적상 ‘해당 사건’의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해석할 때에도 동일한 고려가 적용된다고 보았다.<sup>33)</sup> 그리고 항소 대상인 기소된 범죄의 상황적 구성요건(contextual elements)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의 평가는 중대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있다고 판단하였다.<sup>34)</sup>

셋째, 중대성 요건의 심사와 관련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재판부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양적(특히 피해자의 수) 및 질적(범죄의 성질과 규모, 범죄 방식, 결과적으로 침해된 인권, 피해자에 대한 영향,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차별적인 동기에 근거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관점이 동 사건에서의 중대성 요건 심사와 관련있다고 판단하였다.<sup>35)</sup> 이러한 점에서 항소심재판부는 “형을 결정함에 있어 재판소는 절차 및 증거규칙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및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규정한 ICC규정 제78조 제1항에 주목하였다. ICC규정 제78조 제1항과 절차 및 증거규칙의 Rule 145(1)(c)와 145(2)(b) 하에서 중대성은 유죄 성립 이후와 같이 다른 절차 단계에서 평가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요소의 일부가 유용한 지

침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재판부는 ICC규정 제17조 제1항 (d)호의 판단과 관련하여 *Bemba* 사건에서의 기준을 인용하면서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 불법행위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담 정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36)</sup>. 그리고 항소심재판부는 동 사건에 참가하는 피해자의 인원수도 ICC규정 제17조 제1항 (d)호의 양적 요건 판단에서의 고려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ICC규정 제17조 제1항 (d)호에 따른 양적 요건과 피해자수의 관련성은 사례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37)</sup> 또한 동 사건에서 주장되는 범죄가 복수의 기본적 인권 침해로 귀결된 점도 고려하였다.<sup>38)</sup>

### 3) 검토

*Al Hassan* 사건 항소심재판부 판결은 지금까지의 ICC의 여러 재판부의 판결과 언뜻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목적이나 관련 요건과 같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중대성 요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점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약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적 의도를 질적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판단 대상의 폭이 좀 더 넓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Al Hassan* 사건 항소심재판부 판결에서 중대성 요건으로 추가된 것은 인권 침해와 차별적 의도이다. 차별적 의도는 절차 및 증거규칙 Rule 145에서 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지만 *Al Mahdi* 사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요건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중대성의 고려에 인권 침해를 포함시키고 있는 규정이나 절차 및 증거 규칙상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가 기소된 범죄의 성격과 범위는 올바르게 고려하였다면서 이 사건에서의 인권 침해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진실성과 인간의 존엄성, 공정한 재

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이보다는 재판적격성 요건의 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Ibid.*, paras. 65-66.

34) *Ibid.*, para. 69.

35) 케냐 사태의 전심재판부 II는 양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수가 아니라 범죄의 실행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악화되어가거나 양적인 요인의 존재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양적 기준만으로 특정 사례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Ibid.*, para. 92.

36) *Ibid.*, para. 93.

37) *Ibid.*, para. 97.

38) *Ibid.*, para. 122.

판을 받을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의 인도적인 대우와 고유의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나 사상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권리들을 제시하면서 동 권리들이 침해되었다고 열거하였다.<sup>39)</sup> Al Hassan 사건 항소심재판부 판결로 인하여 중대성 기준의 한계가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권 침해를 중대성 고려의 판단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ICC가 자신의 역할을 ‘인권을 중요시하는 인권 재판소’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보인다. ICC 관할범죄는 모두 어떠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서 저질러진다. 그러나 반대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ICC 관할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 침해를 중대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항소심재판부 판단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프가니스탄은 2003년 5월 1일부터 ICC 회원국이 되었다. ICC는 2003년 5월 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질러진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1. 사건의 개요<sup>40)</sup>

소추관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보고된 정

보를 근거로 2006년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ICC는 10년 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과 구속,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등이 저질러졌는지 포괄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sup>41)</sup>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소추관은 2017년 11월 20일 ICC규정 제15조 제3항<sup>42)</sup>에 따라 직권으로(*proprio motu*) 수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전심재판부에 2003년 3월 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를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43)</sup> 소추관실은 탈레반과 그 소속 하카니 네트워크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가보안군(Afghan National Security Forces)과 특히 국가보안국(National Directorate for Security), 아프가니스탄 국가 경찰(Afghan National Police)에 의한 전쟁범죄, 마지막으로 주로 2003-2004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ICC규정 당사국의 영토에 있는 비밀 수용 시설에서 CIA가 저지른 전쟁범죄와 함께 미군에 의한 전쟁범죄가 아프가니

39)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Al Hassan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entitled ‘Décision relative à l’exception d’irrecevabilité pour insuffisance de gravité de l’affaire soulevée par la défense’”, *supra* note 24, para. 122.

40) ICC,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ICC-02/17 <<https://www.icc-cpi.int/afghanistan>> (2020년 6월 20일 방문).

41) ICC Statement,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atou Bensouda, requests judicial authorisation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20 November 2017).

42) ICC규정 제15조 [소추관] 3.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집된 증빙자료와 함께 수사허가요청서를 전심재판부에 제출한다. 피해자는 절차 및 증거규칙에 따라 전심재판부에서 진술할 수 있다; ICC 소추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ICC규정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국 당사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가 없더라도 소추관의 수사 개시를 허용하면서도 ICC 전심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서 소추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범죄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소추관은 수사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대상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추관은 우리나라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행위, 운두라스, 가봉, 코모로·그리스·캄보디아 등기선박에 대하여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43) ICC,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supra* note 40.

스탄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sup>44)</sup> 이와 관련하여 ICC의 2016년 보고서에서도 미군과 CIA의 구성원들이 비밀구속시설에서 억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 잔혹한 대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그리고 강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sup>45)</sup> 2017년 12월 7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ICC 피해자 참가 및 배상 섹션(Victims Participation and Reparations Section, 이하 ‘VPRS’)<sup>46)</sup>에서 전심재판부로 이송된 피해자는 총 699명이었다. 2018년 2월 20일 VPRS는 재판관에게 피해자 진술에 대한 최종 통합 보고서를 전송하였는데 동 보고서에는 피해자 진술 과정의 개요와 전송된 진술의 세부사항 및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sup>47)</sup>

소추관의 수사개시 허가 청구에 대하여 2019년 4월 12일 전심재판부 II는 관할권 및 재판적격성 요건은 충족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수사개시 정의의 이익(interests of justice)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수사개시를 기각하였다.<sup>48)</sup> 미국<sup>49)</sup>은 전심재판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년 3월 15일 파투 벤수다 소추관의 입국 사증을 취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sup>50)</sup> 이후 소추관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관련 수사개시 허가’에 관한 ICC규정 제15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항소 허가를 요청하였고 2019년 9월 17일 전심재판부 II는 소추관의 항소를 허가하였다.<sup>51)</sup>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소추관의 수사개시 허가 요청을 기각하고 수사 착수가 정의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2019년 4월 12일 전심재판부 II의 결정을 뒤집고 2020년 3월 5일 수사개시를 허가하였다.<sup>52)</sup> 동 결정에 따라 2003년 5월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반정부 세력인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 정부, 미군의 행적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항소심재판부 결정에 대한 내용은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 2. 아프가니스탄 사태 항소심재판부 결정

2020년 3월 5일 항소심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질러진 범죄 혐의에 대하여 소추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항소심재판부는 소추관이 2017년 11월 20일 요청한 범위 내에서 2003년 5월 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

44) ICC Statement,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atou Bensouda, requests judicial authorisation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supra* note 41.

45) ICC,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Report on Preliminary Examination Activities 2016” (14 November 2016), paras. 211-213.

46) ICC규정 제43조 [사무국] 6. 사무국장은 사무국내에 피해자·증인 담당부를 둔다. 이 담당부는 소추부와 협의하여 증인, 재판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리고 그러한 증인이 행한 증언으로 인하여 위협에 처한 다른 자들을 위한 보호조치와 안전조치, 상담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부에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정신장애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포함한다.

47) ICC,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supra* note 40.

48) ICC, Press Release, “ICC judges reject opening of an investigation regarding Afghanistan situation” (12 April 2019)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pr1448>> (2020년 6월 20일 방문).

49) 미국은 ICC의 당사국이 아니다. 1998년 7월 17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라크, 리비아, 예멘, 카타르 등 7개국이 반대하였다.

50) Human Rights Watch, “US Threaten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Visa Bans on ICC Staff” (15 March 2019) <<https://www.hrw.org/news/2019/03/15/us-threatens-international-criminal-court>> (2020년 6월 20일 방문); The Guardian, “US to deny visas for ICC members investigating alleged war crimes” (15 March 2019)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9/mar/15/mike-pompeo-us-war-crimes-investigation-international-criminal-court>> (2020년 6월 20일 방문). 이번 전심재판부의 결정은 ICC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51) 소추관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ICC Press Release, “Afghanistan: ICC Pre-Trial Chamber II authorises Prosecutor to Appeal Decision Refusing Investigation” (17 September 2019)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pr1479>> (2020년 6월 20일 방문).

52) ICC, Press Release, “Afghanistan: ICC Appeals Chamber authorises the opening of an investigation” (5 March 2020)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pr1516>> (2020년 6월 20일 방문).

영토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혐의와 아프가니스탄의 무력충돌이 연관성이 있으며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sup>53)</sup> 항소심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2017년 11월 20일 소추관의 수사 개시 요청에 대해 현 단계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한 조사가 ‘정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2019년 4월 12일 ICC 전심재판부 II의 기각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전심재판부는 ‘정의의 이익’을 근거로 처음으로 수사개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수사개시 허가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된 ‘정의의 이익’은 ICC규정 제53조 제1항 (c)호에 규정되어 있다. ICC규정 제53조 제1항은 소추관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a) 소추관에게 이용가능한 정보가 ICC 관할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b) 사건이 제17조(동일 안전에 대한 관계국의 소송절차의 부존재)에 따른 재판적격성이 있는지 또는 있게 될지 여부, (c)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54)</sup> 제53조 제1항은 소추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 개시와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 행사의 지침이 되었으며 ICC규정 제15조 제4항<sup>55)</sup>은 소추관의 재량에 대한 전심

재판부의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소추관이 직권으로 수사개시를 결정한 케냐 사태의 수사 개시 허가 결정에서 ICC 전심재판부는 제53조 제3항 (b)호에 따라 소추관이 정의의 이익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만 전심재판부가 정의의 이익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다.<sup>56)</sup> 케냐 사태 전심재판부 결정은 코트디부아르의 사태에 대한 수사 개시 허가 결정 때에도 답습되었다.<sup>57)</sup> 그러나 이후 2016년 조지아 사태에 대한 수사 개시 허가 결정이나 2017년 브룬디 사태의 수사 개시 허가 결정에서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전심재판부는 범죄와 소추관의 수사개시 허가 신청의 시간 차이, 소추국의 협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지 관련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접근 가능성 등을 정의의 이익에 관한 주요 판단 소재로 언급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항소심재판부는 피해자 대표 및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출서류, 전심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소추관의 항소 근거를 살펴보고 전심재판부가 소추관의 수사 개시 허가 요청을 검토할 때 ‘정의의 이익’을 잘못 고려하였다고 판단하였다.<sup>58)</sup> 항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가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해당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이

53) ICC,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Judgment on th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n the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Appeals Chamber, ICC-02/17 OA4 (5 March 2020), p. 3.

54) 소추관이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오직 다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소추관은 이를 전심재판부에 통지한다.

55) ICC규정 제15조 [소추관] 4. 전심재판부가 수사허가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당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재판부는 수사의 개시를 허가한다. 다만, 이 허가는 사건의 관할권과 재판적격성에 관한 재판소의 추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6)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Decision on Victims’ Participation in Proceedings Related to th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Pre-Trial Chamber II, ICC-01/09-24 (3 November 2010), para. 63.

57)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Côte d’Ivoire, “Request for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pursuant to article 15”, Office of the Prosecutor, ICC-02/11-3 (23 June 2011), para. 59.

58) ICC, Press Release, “Afghanistan: ICC Appeals Chamber authorises the opening of an investigation”, *supra* note 51.

ICC 관할권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59)</sup> 그리고 항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실 발견(factual findings)이 포함되어 있고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질러졌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항소심재판부는 새로운 결정을 위해 사건을 전심재판부로 재송부하기 보다는 수사 자체의 개시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sup>60)</sup>

이와 같은 항소심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미국은 현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탈레반이 2월 하순 평화 합의에 서명한 것<sup>61)</sup>을 예로 들면서 “법적 기관을 가장한 정치 기관에 의한 그야말로 황당한 행위”라고 비판하였고 “ICC의 수사로부터 미군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sup>62)</sup>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가져올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가장 큰 기회인 역사적인 평화 합의에 미국이 서명한 지 며칠 만

에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더욱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63)</sup> 6월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군의 전쟁범죄 수사를 승인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ICC가 미국민을 수사하거나 소추할 경우 수사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행동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의 동의없이 미국민의 수사와 소추에 관여한 ICC 직원들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금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sup>64)</sup> 더 나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부실 재판으로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재를 확대하여 ICC 직원의 가족의 입국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sup>65)</sup> 한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러시아가 ICC를 조종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66)</sup>

이와 같은 미국의 제재에 ICC는 “미국의 결정은 수사를 진행하는 ICC 직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노린 것이며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ICC에 대한 공격은 무도한 범죄 피해자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ICC는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소망이다”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sup>67)</sup> 인권

59) *Ibid.*

60) *Ibid.*

61)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세력은 지난 2월 2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미군의 철수와 함께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포로 교환이 포함되었지만 동국의 이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 포로를 석방하는 약속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을 귀국시킬 때」라며 백악관에서 표명하고 5월까지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하였다.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14개월 안에 완전 철수한다. 단, 합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탈레반 지도자와 회담하겠다고 밝혔다. The New York Times, “Taliban and U.S. Strike Deal to Withdraw American Troops From Afghanistan” (29 Feb. 2020) <<https://www.nytimes.com/2020/02/29/world/asia/us-taliban-deal.html>> (2020년 6월 20일 방문); The Guardian, “US and Taliban sign deal to withdraw American troops from Afghanistan” (29 Feb. 202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29/us-taliban-sign-peace-agreement-afghanistan-war>> (2020년 6월 20일 방문).

62) BBC, “Afghan conflict: Top court backs war crimes probe” (5 March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51751717>> (2020년 6월 20일 방문); CNN, “Pompeo slam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cision to authorize Afghanistan war crimes investigation” (5 March 2020) <<https://edition.cnn.com/2020/03/05/politics/icc-afghanistan-pompeo/index.html>> (2020년 6월 20일 방문).

63) *Ibid.*

64) The New York Times, “U.S. to Penalize War Crimes Investigators Looking Into American Troops” (11 June 2020) <<https://www.nytimes.com/2020/06/11/us/politics/international-criminal-court-troops-trump.html>> (2020년 6월 20일 방문); Aljazeera, “Trump authorises sanctions against ICC officials” (12 Jun 2020)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6/trump-authorises-sanctions-international-court-officials-200611134349115.html>> (2020년 6월 20일 방문).

65) CNN, “Pompeo slam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cision to authorize Afghanistan war crimes investigation”, *supra* note 62.

66) Aljazeera, “Trump authorises sanctions against ICC officials” *supra* note 64.

67) ICC, Statement,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recent measures announced by the US” (11 June 2020)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200611-icc->

단체들 역시 미국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의 워싱턴 디렉터 안드레아 플라소우는 “ICC에 대한 미국의 폭행은 아프가니스탄이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든 심각한 범죄 피해자들이 정의를 요구하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노골적인 방해 공작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sup>68)</sup> ICC 당사국 총회 권오곤 의장도 11일 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잔학한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sup>69)</sup> EU의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역시 “ICC는 국제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심각한 국제적 범죄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모든 나라의 존중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sup>70)</sup>

### 3. 검토

ICC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질러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한편 강대국이 얽힌 사건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항소심재판부의 결정을 통하여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된 것은 ICC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결정으로 ICC는 탈레반과 아

프가니스탄 정부군, 그리고 물론 미국민의 행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며 상술한 바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ICC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역시 ICC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ICC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파투 벤수다 소추관은 이번 결정에 대하여 “아프가니스탄의 분쟁 중에 저질러진 많은 핵심범죄의 희생자들이 마침내 정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늘은 국제형사정의에 있어 중요한 날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파투 벤수다 소추관의 말대로 관련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IV. 정리하며

2020년 2월 19일 Al Hassan 사건 항소심재판부 판결과 2020년 3월 5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수사개시 허가결정은 재판적격성 요건인 중대성과 소추관의 수사개시에 있어서의 정의의 이익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중대성은 “ICC가 관할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 된다. Al Hassan 사건에서 제시된 중대성 기준의 목적은 ICC 관할범죄 중에서도 부차적인(marginal) 중대성밖에 갖지 못한 사건을 재판소의 권한으로부터 배제하는 데 있다. 사법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ICC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나 ICC 자원의 형편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도 충분하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재판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ICC의 목적과 ICC의 재판적격성이라는 실체적 가치를 고려할 때 중대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결정에서 제시되었던 ‘중대성 요건의 목적’으로부터 유도되는 요소들과 앞으로

statement> (2020년 6월 20일 방문).

68) Financial Express, “US President Donald Trump authorises economic sanctions, travel restrictions against ICC officials” (11 June 2020) <<https://www.financialexpress.com/world-news/us-president-donald-trump-authorises-economic-sanctions-travel-restrictions-against-icc-officials/1988952/>> (2020년 6월 20일 방문).

69) ICC, Press Release, “ASP President O-Gon Kwon rejects measures taken against ICC” (11 June 2020) <<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pr1527>> (2020년 6월 20일 방문).

70) Aljazeera, “Trump authorises sanctions against ICC officials” *supra* note 64.

의 관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ICC규정 제53조의 내용이다. ICC규정 제53조 제1항 (c)호는 “... 소추관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c)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가 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소추관이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오직 (c)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소추관은 이를 전심재판부에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C규정 제

53조 제3항 (b)호는 “소추관의 절차종결 결정이 오직 제1항 (c)호 또는 제2항 (c)호만을 근거로 한 경우 전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소추관의 결정은 전심재판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CC규정 제53조 제1항이나 제3항의 해석상 소추관이 당연히 정의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심재판부가 소추관의 수사 개시를 허가 또는 허가하지 않을 때 정의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UN 총회 문서

## I. 주요 결의

제74차 유엔총회 회기 중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채택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 연대 관련 결의
-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의 새 기관, 아루샤 지부의 건설에 관한 결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품, 백신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전세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 II. 주요 내용

### 1.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 연대 관련 결의 (Global solidarity to fight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RES/74/270)

2020년 4월 2일,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 연대”에 관한 결의를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로 채택했다. 동 결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인간의 건강, 안전 및 안녕을 위협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데 있어 유엔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했다. 아울러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의 필요성과 감염병 대응에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여타의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동 결의는 정보, 과학적 지식 및 모범 사례를 교환하고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세계적 유행을 억제하고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 2.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의 새 기관, 아루샤 지부의 건설에 관한 결의 (Construction of a new facility for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Arusha branch, A/RES/74/272)

2020년 4월 13일, 유엔 총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의 새 기관, 아루샤 지부의 설치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A/74/662)를 주목하며,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의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 및 권고 사항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총회는 탄자니아 정부가 새 지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사무총장에게 제76차 유엔 총회 회기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품, 백신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전세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nsure global access to medicines, vaccines and medical equipment to face COVID-19, A/RES/74/274)**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품, 백신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전세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를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동 결의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금융기관을 포함한 유엔체계의 다른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예방 도구, 실험실 시험, 시약 및 지원 재료, 필수 의료 용품, 진단, 의약품 및 향후 개발될 코로나19 백신을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접근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공급망을 신속하게 확장하고 강화하는 접근방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권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 총회는 회원국에 대해 모든 관련 이해당사

자들과 협력하여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연구 개발 자금을 늘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코로나19와 싸우는데 필요한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면서, 회원국들이 진단, 항 바이러스 의약품, 개인 보호 장비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및 유통, 효능, 안전성, 형평성, 접근성 및 경제성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정을 강화하도록 장려했다. 총회는 아울러 동 결의를 통해 코로나19의 통제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을 조정하고 회원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 유엔 체계의 기본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수행하는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인정했다.

총회는 또한 사무총장이 세계보건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에 직면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백신 및 의료장비에 대한 전세계적 접근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유엔 체계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자원 내에 기관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적절하다면, 그러한 노력에 대해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 I. 주요 결의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국제법 관련 주요 결의는 다음과 같다.

- 비확산/북한에 관한 결의
- 남수단 상황 관련 결의

## II. 주요 내용

### 1. 비확산/북한에 관한 결의(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RES/2515)

2020년 3월 30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동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전문가단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2021년 3월 26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보리는 전문가단이 2020년 8월 3일

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월 4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종보고서는 2021년 2월 5일 이전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어 2021년 3월 5일 이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2. 남수단 상황 관련 결의(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21)

2020년 5월 29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남수단 상황 관련 결의를 채택하고 남수단의 상황이 이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한 일련의 제재 조치 및 관련 조치를 결정했다. 안보리는 동 결의를 통해 남수단에서 계속되는 전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재활성화 협정(the Revitalised Agreement) 및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 및 활동 보장 관련 협정(Agreement on Cessation of Hostilities, Protection of Civilians and Humanitarian Access: ACOH)을 위반한 것을 규탄했다.

참고: 안보리 채택 결의 목록 (2020.03~2020.05)

The situation in Libya	S/RES/2526 (2020)	5 June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25 (2020)	4 June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24 (2020)	4 June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23 (2020)	29 May 2020
The situation concerning Iraq	S/RES/2522 (2020)	29 May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21 (2020)	29 May 2020
The situation in Somalia	S/RES/2520 (2020)	29 May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19 (2020)	14 May 2020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S/RES/2518 (2020)	30 March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17 (2020)	30 March 2020
Somalia	S/RES/2516 (2020)	30 March 2020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RES/2515 (2020)	30 March 2020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udan and South Sudan	S/RES/2514 (2020)	12 March 2020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S/RES/2513(2020)	10 March 2020

# UN 사무총장 문서

## I. 국제법 관련 보고서/성명

이번호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발표된 국제법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과 보고서를 소개한다.

- 에이즈 대응의 불평등 해소와 다음 단계의 준비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유엔 총회 제출, 2020. 4. 1. 배포)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연설 (2020. 4. 18.)
-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 (2020. 5. 18.)

## II. 주요 내용

### 1. 에이즈 대응의 불평등 해소와 다음 단계의 준비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Addressing inequality and preparing the next phase of the AIDS response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유엔 총회 제출, 2020. 4. 1. 배포)

2020년 4월 1일, 유엔 사무총장은 에이즈 대응의 불평등 해소와 다음 단계의 준비에 관한 보고서에서 올해가 전세계 에이즈 대응에 있어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에이즈 대응의 가속화와 종식을 위해 전면적 투자를 위해 2016년 총

회 결의 70/266에서 합의한 목표의 마감일이 2020년말까지 임을 상기했다. 사무총장은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이즈의 초창기 대응 모습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에 대응을 함께 강조한다. 본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HIV 감염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히 2020년 HIV 예방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그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사무총장은 총회 결의 70/266의 목표를 달성하고 질병 대응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공통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본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이 고려해야 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 2.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연설(Remarks to the Security Council on the COVID-19 Pandemic, 09 April 2020)

2020년 4월 9일,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코로나19 앞에서 단결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국가불신, 경제적 타격, 선거 훼손, 폭력, 테러, 환경 파괴, 지역 갈등, 인권침해 등 8개 항목의 향후 위기 전망을 제시했다. 사무총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각국이 단결하고 함께 일치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23일 연설을 통해 전세계에 걸친 즉

각적인 휴전을 호소했던 사실을 안보리에 상기시켰다.

### 3.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Remarks to the World Health Assembly, 18 May 2020)

2020년 5월 18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73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 개회에 앞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약간의 연대는 있었지만, 결속을 다지지는 못했으며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해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

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는 인류에 대한 경종”이라며 치명적인 글로벌 위협은 새로운 단합과 연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응에서 여러 나라들이 각각 다른, 때로는 모순되는 전략을 추구했다”며 “많은 나라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가 무시됐고, 그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로 퍼졌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기구”라며 더 많은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 회원국들에게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 UN 국제법위원회 문서

## ○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제72차 회기

국제법위원회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그리고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총 11주) 국제법위원회 제72차 회기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제72차 회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제72차 회기에서 다루질 주제와 ILC의 작업 요약을 소개한다.

### < 순 서 >

-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조약의 잠정적용)
-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대기의 보호)
-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국가책임의 승계)
- General principles of law (법의 일반원칙)
- Sea 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

## Summaries of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 외국 형사 재판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Last update: February 20, 2020*

At its fifty-eighth session, in 2006, the Commission,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a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identified the topic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for inclusion in its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61/34 of 12 December 2000, took note of the Commission’s decision to include the topic in its long-term programme of work.

At its fifty-ninth session, in 2007, the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in its programme of work and to appoint Mr. Roman A. Kolodkin as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The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62/66 of 6 December 2007, took note of the Commission’s decision to include the topic in its programme of work.

At the sixtieth session, in 2008,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preliminar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s well as a memorandum of the Secretariat on the topic. The preliminary report briefly outlined the breadth of prior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an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of the question of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jurisdiction as well as the range and scope of issues proposed for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in addition to possible formulation of future instruments. The Commission held a debate on the basis of this report which covered key legal questions to be considered when defining the scope of the topic, including the officials to be covered, the nature of acts to be covered and the question of possible exceptions.

The Commission did not consider the topic at the sixty-first session.

At its sixty-second session in 2010, the Commission was not in a position to consider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wa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At the sixty-third session in 2011,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second and third reports of the Special Rapporteur. The second report reviewed and presented the substantive issues concerning and implicated by the scope of immunity of a State official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while the third report addressed the procedural aspects, focusing, in particular on questions concerning the timing of consideration of immunity, its invocation and waiver. The debate revolved around, inter alia, issues relating to methodology, possible exceptions to immunity and questions of procedure.

At the sixty-fourth session in 2012, the Commission appointed Ms. Concepción Escobar Hernández as Special Rapporteur to replace Mr. Roman Kolodkin, who was no longer a member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preliminar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t the sixty-fifth session in 2013,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which, inter alia, six draft articles were presented, following an analysis of: (a) the scope of the topic and of the draft articles; (b) the concepts of immunity and jurisdiction; (c) the difference between immunity *ratione personae* and immunity *ratione materiae*; and (d) identified the basic norms comprising the regime of immunity *ratione personae*. Following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the six draft articles to the Drafting Committee. Upon consideration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 1, 3 and 4.

At the sixty-sixth session in 2014,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which the Special Rapporteur undertook an analysis of the normative elements of immunity *ratione materiae*, focusing on those aspects related to the subjective element. In that context, the general concept of a “State official” was examined in the report, and the substantive criteria that could be used to identify such persons were considered, especially in respect of those who may enjoy immunity *ratione materiae*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The report further considered a linguistic point concerning the choice of the most suitable term for designating persons who enjoy immunity, given the terminological difficulties posed by the term “official” and its equivalents in the various languages, and suggested instead that “organ” be employed. Following an analysis of relev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judicial practice, treaty practice and the previous work of the Commission, the Special Rapporteur proposed two draft articles relating to the general concept of “an official” for the purposes of the draft articles and the subjective scope of immunity *ratione materiae*. It was envisaged that the material and temporal scope of immunity *ratione materiae* would be the subject of consideration in the Special Rapporteur’s next report.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the draft articles to the Drafting Committee, and subsequently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 2 (e) and 5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and commentaries thereto.

At the sixty-seventh session in 2015,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our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was devot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remaining aspects of the material scope of immunity *ratione materiae*, namely what constituted an “act performed in an official capacity”, and its temporal scope. The report contained proposals for draft article 2, subparagraph (f), defining an “act performed in an official capacity” and draft article 6 on the scope of immunity *ratione materiae*.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the two draft articles to the Drafting Committee, and subsequently took note of draft articles 2, subparagraph (f), and 6,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At its sixty-eighth session, in 2016,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if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nalysing the question of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the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As at the time of its consideration the report was available to the Commission in only two of the six official languages of the United Nations, the Commission commenced the debate on the report on a preliminary and exceptional basis. The Commission decided to continue and finalize the debate at its sixty-ninth session.

Also at its sixty-eighth session, the Commission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 2 (f) and 6,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which had been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and taken note of by the Commission at its sixty-seventh session.

At its sixty-ninth session, in 2017, the Commission continued its consideration of the fif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Following the plenary debate, the Commission referred draft article 7, as propo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in her fifth report, to the Drafting Committee. Upon its consideration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voted to adopt draft article 7, an annex to the draft articles and a footnote to two of its headings,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At its seventieth session, in 2018,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six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was devoted to addressing procedural aspects of immunity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The Commission only held a partial debate on the sixth report, which was to be completed at the seventy-first session in 2019.

At its seventy-first session, in 2019,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sixth report, on which debate had not been completed at the seventieth session, and the seven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he seventh report summarized the debates in the Commission at the seventieth session and in the Sixth Committee at the seventy-third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completed the examination of the procedural aspects of immunit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diction and the procedural aspects of immunity. Two draft articles concerning the consideration of immunity by the forum State and determination of immunity were proposed (draft articles 8 and 9). In addition, the seventh report addressed the remaining procedural aspects identified in the sixth report, including questions concerning the invocation of immunity and the waiver of immunity and two draft articles were proposed (draft articles 10 and 11). It also examined aspects concerning procedural safeguards related to the State of the forum and the State of the official, communication between the forum State and the State of the official, including the duty to notify to the official's State the intent to exercise jurisdiction by the forum Stat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State of the official and the forum State; and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assistance between the State of the official and the forum State, in particular the transfer of criminal proceedings from the forum State to the State of the official. In that regard, four draft articles were proposed (draft articles 12, 13, 14 and 15). Further, the report considered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official, focusing on fair treatment and one draft article was proposed (draft article 16).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 조약의 잠정적용

---

*Last update: February 20, 2020*

At its sixty-fourth session, in 2012,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decided to appoint Mr. Juan Manuel Gómez-Robledo as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At the sixty-fifth session in 2013,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sought to establish, in general terms, the principal legal issues that arose in the context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by considering doctrinal approaches to the topic and briefly reviewing the existing State practice. The Commission also had before it a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which traced the negotiating history of article 25 of the Vienna Convention both in the Commission and at the Vienna Conference of 1968-69, and included a brief analysis of some of the substantive issues raised during its consideration.

At the sixty-sixth session in 2014,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sought to provide a substantive analysis of the legal effects of the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report, the Commission decided to request from the Secretariat a memorandum on the previous work undertaken by the Commission on the subject in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86.

At the sixty-seventh session in 2015,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considered the relationship of provisional application to other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and the question of provisional application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Commission also had before it a memorandum (A/CN.4/676), prepared by the Secretariat, on provisional application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etwee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1986. The Commission referred six draft guidelines, propo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At its sixty-eighth session, in 2016,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our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continue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provisional application to other provisions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of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regard to provisional application. The addendum to the report contained examples of recent European Union practice on provisional application of agreements with third States.

Upon receipt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containing draft guidelines 1 to 4 and draft guidelines

6 to 9, the Commission took note of such draft guidelines, which had been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at the sixty-seventh and sixty-eighth sessions. Draft guideline 5 on unilateral declarations had been kept in abeyance by the Drafting Committee to be returned to at a later stage.

Also at its sixty-eighth session, the Commission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prepare a memorandum analysing State practice in respect of treaties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posited or registered in the last 20 years with the Secretary-General, which provide for provisional application, including treaty actions related thereto.

At its sixty-ninth session, the Commission referred draft guidelines 1 to 4 and 6 to 9,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in 2016, back to the Drafting Committee, with a view to having a consolidated set of draft guidelines, as provisionally worked out thus far, prepared. The Commission subsequently provisionally adopted draft guidelines 1 to 11, as presen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at the current session, with commentaries thereto.

At its seventieth session, the Commission referred draft guidelines 5 bis, 8 bis and eight draft model clauses propo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in his fifth report, to the Drafting Committee, and instructed it to complete the first reading of the entire set of draft guidelines, including those adopted provisionally at the sixty-ninth session (2017), taking into account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of Governments and the debate in the plenary o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adopted the entire set of draft guidelines on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with commentaries, as the "draft Guide to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on first reading. The Commission further took note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Drafting Committee that a reference be made in the commentaries to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during the second reading, a set of draft model clauses, based on a revised proposal that the Special Rapporteur would make at an appropriate time, taking into account the comments and suggestions made during both the plenary debate and in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dec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to 21 of its statute, to transmit the draft guideline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to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comments and observations, with the request that such comments and observations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by 15 December 2019.

At its seventy-first session, in 2019, the Special Rapporteur presented an oral report on the informal consultations held on 10 and 18 July 2019 to consider the draft model clauses on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The Commission took note of the oral report and decided to annex the proposed draft model clauses to the Commission'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with a view to seeking comments from Governments in advance of the commencement of the second reading of the draft Guide to Provisional Application of Treaties at the next session of the Commission.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successiv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 대기의 보호

---

*Last update: December 11, 2019*

At its sixty-fifth session, in 2013,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in its programme of work and to appoint Mr. Shinya Murase as the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The Commission included the topic in its programme on the understanding that:

- ❖ Work on the topic will proceed in a manner so as not to interfere with relevant political negotiations, including on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nd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he topic will not deal with, but is also without prejudice to, questions such as: liability of States and their nationals,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the transfer of funds and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The topic will also not deal with specific substances, such as black carbon, tropospheric ozone, and other dual-impact substances, which are the subject of negotiations among States. The project will not seek to “fill” gaps in the treaty regimes;
- ❖ Questions relating to outer space, including its delimitation, are not part of the topic;
- ❖ The outcome of the work on the topic will be draft guidelines that do not seek to impose on current treaty regimes legal rules or legal principles not already contained there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s would be based on such understanding.

At the sixty-sixth session in 2014,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sought to address the general objective of the project, including providing the rationale for the work on the topic, delineating its general scope, identifying the relevant basic concepts and offering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o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topic.

At the sixty-seventh session in 2015,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upon a further analysis of the draft guidelines submitted in the first report, presented a set

of revised draft guidelines relating to the use of terms, the scope of the draft guidelines, and the common concern of humankind, as well as draft guidelines on the general obligation of States to protect the atmosphere an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guidelines 1, 2, 3 and 5 to the Drafting Committe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draft guideline 3 w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possible preambl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provisionally adopted draft guidelines 1, 2 and 5 and four preambular paragraphs,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At its sixty-eighth session, in 2016,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analysing the obligations of States to prevent atmospheric pollution and mitigate atmospheric degradation, the requirement of due diligenc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questions concerning sustainable and equitable utilization of the atmosphere, and the legal limits on certain activities aimed at intentional modification of the atmosphere. The report also contained a proposal of five draft guidelines on the obligation of Stat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stainable utilization of the atmosphere, equitable utilization of the atmosphere, and geo-engineering, together with an additional draft preamble paragraph.

Following its debate on the third report, the Commission referred the five draft guidelines, together with the preambular paragraph, to the Drafting Committee. Upon its consideration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considered and provisionally adopted draft guidelines 3, 4, 5, 6 and 7 and a preambular paragraph,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At its sixty-ninth se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ourth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building upon the previous three reports, proposed four guideline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and other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llowing the debate in the Commission, which was preceded by an informal dialogue with atmospheric scientists organized by the Special Rapporteur,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the four draft guidelines, as contai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fourth report, to the Drafting Committee. Upon its consideration of the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provisionally adopted draft guideline 9 and three preambular paragraphs, together with commentaries thereto.

At its seventieth session, the Commission referred draft guidelines 10 to 12, as contai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fifth report, to the Drafting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debate in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subsequently adopted, on first reading, a draft preamble and the entire set of draft guidelines, including the draft guidelines adopted at its sixty-eighth (2016) and sixty-ninth (2017) sessions, as a whole as the "Guidelines on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with commentaries thereto.

The Commission dec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to 21 of its statute, to transmit the draft guidelines,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to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comments and observations, with the request that such comments and observations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by 15 December 2019.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successiv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 국가책임의 승계

---

*Last update: December 11, 2019*

At its sixty-ninth session, in 2017,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decided to appoint Mr. Pavel Šturma as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At the same session,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sought to set out the Special Rapporteur’s approach to the scope and outcome of the topic, and to provide an overview of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topic. Following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articles 1 to 4, a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Chair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articles 1 and 2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Committee,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At its seventieth session, in 2018,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his report, which was composed of four parts, the Special Rapporteur at first addressed certain introductory issues, including the legality of succession (Part One). He then discussed the general rules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particularly in relation to attribution and in rela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continuing and completed breaches (Part Two). Thereafter, the Special Rapporteur considered certain special categories of State succession to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responsibility (Part Three). The future programme of work on the topic was then addressed (Part Four). The Special Rapporteur proposed seven draft articles corresponding to the issues considered in Part One (draft article 5), Part Two (draft article 6), and Part Three (draft articles 7 to 11) of his report.

Following the debate in plenary,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articles 5 to 11, as contained in the secon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took note of the interim report of the Chair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article 1, paragraph 2, and draft articles 5 and 6,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which wa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for information only.

At the same session, the Commission decided to request from the Secretariat a memorandum providing information on treaties registered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may be of relevance to its future work on the topic.

At its seventy-first session, in 2019,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addressed introductory issues, and discussed questions of reparation for injury resulting from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mmitted against the predecessor State, considering, in particular, claims for reparation in different categories of State succession, as well as various approaches to reparation for injury arising from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mmitted against the nationals of the predecessor State. The Special Rapporteur proposed several new draft articles and made a number of technical suggestions. The Commission also had before it a memorandum by the Secretariat providing information on treaties which may be of relevance to its future work on the topic.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articles 2, paragraph (f), X, Y, 12, 13, 14 and 15, and the titles of Part Two and Part Three, as contained in the third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rafting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expressed in the plenary debate. The Commission subsequently considered a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the topic and provisionally adopted draft articles 1, 2 and 5, which had been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at the sixty-ninth and seventieth sessions. The Commission also received an interim oral report on draft articles 7, 8 and 9,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Committee at the present session. The report was presented for information only.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General principles of law

### 법의 일반원칙

*Last update: December 11, 2019*

At its seventieth session, in 2018,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decided to appoint Mr. Marcelo Vázquez-Bermúdez as Special Rapporteur for the topic.

At its seventy-first session, in 2019, the Commission had before it the first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which addressed the scope of the topic and the main issues to be addressed in the course of the work of the Commission. The report also addressed previous work of the Commission related to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provided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over time, as well as an initial assessment of certain basic aspects of the topic. Three draft conclusions were proposed. The Commission decided to refer draft conclusions 1 to 3, as contai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first report, to the Drafting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views expressed in the plenary. The Commission subsequently received an oral interim report of the Drafting Committee on draft conclusion 1,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The report was presented for information only.

The work of the Commission on the topic as described above has been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under the item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

*Last update: December 11, 2019*

At its seventy-first session, in 2019,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ecided to include the topic “Sea-level rise in international law” in its programme of work, on the basis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programme of work. The Commission also decided to establish an open-ended Study Group on the topic, to be co-chaired, on a rotating basis, by: Mr. Bogdan Aurescu, Mr. Yacouba Cissé, Ms. Patricia Galvão Teles, Ms. Nilüfer Oral and Mr. Juan José Ruda Santolaria. The Commission further received and took note of a joint oral report of the Co-Chairs of the Study Group on its consideration of an informal paper on the organization of its work containing a road map for 2019 to 2021.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ICJ,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 채택

2020년 3월 20일, ICJ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재판관,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판소의 권한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유엔 및 주재국인 네덜란드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3월 및 최소 4월 16일까지는 법원의 심리(hearings)나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다.

< 관련보도자료 >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https://twitter.com/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https://www.youtube.com/channel/UCIj1k1k1k1k1k1k1k1k1k1k)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https://www.linkedin.com/company/international-court-of-justice)

###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9

20 March 2020

### **In view of the COVID-19 pandemic, the ICJ has adopted measures to ensure the continuous fulfilment of its mandate**

THE HAGUE, 20 March 2020. In view of the COVID-19 pandemic,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a series of measures to help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and to protec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its judges and staff members and their families, while at the same time ensuring that it can continue to fulfil its mandate. The measures are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authorities of the host country, the Netherlands.

As part of these measures, there will be no hearings or meetings of the Court in March and at least until 16 April.

It has also been decided to suspend all official travel of Members of the Court and Registry staff, to cancel all visits and to implement teleworking, thus reducing to a minimum the physical presence of staff at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ICJ. Members of the Court and Registry staff have also been requested to avoid private travel out of the duty station (The Hague).

The adopted measures will be subject to review as the situation develops. Relevant information will be published on the Court's website (press releases) and on social media.

---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J

- ICJ,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 연장 결정

2020년 4월 7일, ICJ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심리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 방문도 5월 말까지 취소된다. 채택된 조치들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추가 검토할 것이다. 관련 정보는 재판소 홈페이지(press releases)와 ICJ의 소셜미디어에 게재될 예정이다.

< 관련보도자료 >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https://twitter.com/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https://www.youtube.com/channel/UCIj-I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https://www.linkedin.com/company/international-court-of-justice)

###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10\*

7 April 2020

### **The ICJ extends the period during which no hearings will be held**

THE HAGUE, 7 April 2020. Given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COVID-19 pandemic, the Court has decided to extend to 31 May the period during which no hearings will be held (see Press Release No. 2020/9). Visits are also cancelled until the end of May.

The adopted measures will be subject to further review as the situation develops. Relevant information will be published on the Court's website (press releases) and on social media.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 Reissued for technical reason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J

- ICJ,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기간 동안 재판소 임무 이행을 위한 조치 일련의 채택

2020년 4월 23일, ICJ는 코로나19(COVID-19)의 유행 기간 동안 재판소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채택했다. 재판소는 지난 몇 주 동안 화상 회의를 진행했으며, 2020년 4월 22일, 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본회의(plenary meeting)를 개최했다.

재판소는 계류중인 사건을 고려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명령을 채택했다. 재판소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제출된 사건 또는 기존에 계류중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관련보도자료 >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https://twitter.com/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https://www.youtube.com/channel/UCIJ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https://www.linkedin.com/company/international-court-of-justice)

###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11

23 April 2020

### **The Court adopts measures to ensure the continued fulfilment of its mandat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HAGUE, 23 April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continues to perform its functions despite the containment measures put in place around the world to halt the spread of COVID-19.

Through the use of modern technologies, the Court has made the necessary arrangements to hold virtual meetings and adapted its working methods to the need to work remote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recent weeks, meetings of the Court's committees have taken place by videoconference. Yesterday, on 22 April 2020, the Court held the first virtual plenary meeting in its history. The President and the Registrar were present in the Deliberation Room of the Peace Palace, the seat of the Court, while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Court participated in the meeting remotely, via videoconference (see the image below). During its meeting, the Court considered pending judicial matters and adopted an order on procedural issues.

The Court wishes to assu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n spite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will continue to discharge its judicial functions and to deal with matters newly submitted to it or already pending before it.

---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J

- ICJ, *과테말라의 육지, 도서 및 해양에 관한 청구(과테말라/벨리즈)* 사건에 대해 준비서면 및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2020년 4월 24일자 ICJ 보도에 따르면, 재판소는 2020년 4월 22일자 명령을 통해 *과테말라의 육지, 도서 및 해양에 관한 청구(과테말라/벨리즈)* 사건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2020년 6월 8일에서 2020년 12월 8일로, 벨리즈 정부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2021년 6월 8일에서 2022년 6월 8일로 각각 연장했다. 이러한 결정은 양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6월 7일, 과테말라와 벨리즈는 특별합의를 통해 ICJ에 양국간 분쟁을 회부했다. 2008년 12월 8일 양국은 “과테말라의 육지, 도서 및 해양에 관한 청구를 ICJ에 회부하는 ... 특별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2015년 5월 25일 체결된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 있다. 벨리즈는 과거 스페인이 중남미를 식민지화 한 이후 스페인의 과테말라 총독부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1783년 스페인이 영국의 해적퇴치를 이유로 영국에게 이 지역에서 벌목을 할 수 있도록 점유권을 주었고, 이후 벨리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821년 과테말라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을 상대로 옛 영토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며 영국과 갈등을 빚었고, 벨리즈는 198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과테말라는 벨리즈의 독립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1에 벨리즈를 공식국가로 인정했으나 영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후 양국은 2008년 미주기구(OAS)의 중재로 분쟁을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 관련보도자료 >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https://twitter.com/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https://www.youtube.com/channel/UCIj1Cj1Cj1Cj1Cj1Cj1Cj1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https://www.linkedin.com/company/international-court-of-justice)

###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12

24 April 2020

###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Guatemala/Belize)*

### Extension of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initial pleadings

THE HAGUE, 24 April 2020. By an Order dated 22 April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extended from 8 June 2020 to 8 December 2020 and from 8 June 2021 to 8 June 2022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Memorial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and the Counter-Memorial of Belize in the case concerning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Guatemala/Belize)*.

This decision was made taking account of the views of the Parties.

In its Order, the Court states that, by a letter dated 8 April 2020, the Ag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requested an extension of 12 months for the filing of Guatemala's Memorial, explaining that the COVID-19 pandemic had resulted in delays in his Government's preparation of that pleading.

It is further stated in the Order that, by a letter dated 15 April 2020, the Agent of Belize responded that the Government of Belize objected to Guatemala's request, adding that, should the Court consider that the impact of the pandemic merits some extension, in his Government's opinion, an extension of two months would be sufficient in the circumstances.

---

####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274-281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8-2019,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lso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under the heading "Cases".

---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J

- ICJ,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사건(*Somalia v. Kenya*) 공개심리 연기

2020년 5월 22일, ICJ는 인도양 해양경계획정 사건(*Somalia v. Kenya*)의 구두변론 일정을 2020년 6월 8일에서 2021년 3월 15일로 연기했다. 재판소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관련 케냐의 변론 기일 연기요청과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소말리아가 2014년 8월 28일, 케냐를 상대로 인도양에서의 양국 간 단일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소말리아는 양국의 해양권원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해양경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외교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을 포함, 인도양 내 소말리아와 케냐에 속하는 모든 해양지역을 구분하는 단일 해양경계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했다. 한편 케냐는 2015년 10월 소말리아의 소제기에 대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ICJ는 2017년 2월 2일, 케냐의 주장을 기각하며 관할권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https://www.linkedin.com/company/international-court-of-justice)

###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13

22 May 2020

###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 Public hearings postponed until March 2021

THE HAGUE, 22 May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decided to postpone to the week beginning Monday 15 March 2021 the oral proceedings in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which were scheduled to open on Monday 8 June 2020.

The Court reached its decision, having duly considered the view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following Kenya's request for a postponement of the oral proceedings in the case owing to the COVID-19 pandemic.

A further press release will be issued in due course regarding the full schedule of the hearings, as well as the admission and accreditation procedures for members of the public and media representatives.

---

###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127-139 of the Court's Annual Report for 2018-2019 and in press releases Nos. 2019/36, 2019/37 and 2019/41,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

###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J

- ICJ,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감비아 v. 미얀마) 사건의 최초 소송서류 제출 기한 연장

2020년 5월 26일, ICJ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감비아 v. 미얀마)의 첫 소송서류 제출 기한을 감비아의 준비서면 기한은 2020년 7월 23일에서 2020년 10월 23일로, 미얀마의 답변서 기한은 2021년 1월 25일에서 2021년 7월 23일로 각각 연장했다. 이 결정은 2020년 4월 24일자 서한을 통한 감비아의 요청을 고려한 것이다. 감비아는 서한에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이유로 준비서면 기한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무기평등원칙(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에 따라 미얀마의 답변서 기한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 관련보도자료 >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https://twitter.com/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https://www.youtube.com/channel/UCIJ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https://www.linkedin.com/company/international-court-of-justice)

###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14

26 May 2020

###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The Gambia v. Myanmar)*

#### Extension of th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initial pleadings

THE HAGUE, 26 May 2020. By an Order dated 18 May 2020,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decided, further to the request of The Gambia, to extend from 23 July 2020 to 23 October 2020 and from 25 January 2021 to 23 July 2021 the respective time-limits for the filing of the Memorial of the Republic of The Gambia and the Counter-Memorial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By a letter dated 24 April 2020, the Agent of The Gambia requested the Court to grant at least a three-month extension for the filing of the Memorial, in light of the COVID-19 pandemic, adding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would entitle Myanmar to a similar extension of time for filing its Counter-Memorial”.

By a letter dated 28 April 2020, the Alternate Agent of Myanmar indicated that, although his Government was of the opinion that the COVID-19 pandemic did not appear to constitute in and of itself a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The Gambia’s request, it took no position on that request and considered that it would be for the Court “to decide whether The Gambia ha[d] established a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an extension of time”.

---

####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ress releases Nos. 2019/47, 2019/49, 2019/54, 2020/3 and 2020/4,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under the heading “Cases”.

---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J

- ICJ,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 (가이아나 v. 베네수엘라) 사건 공개심리 화상 개최

2020년 5월 29일자 ICJ 보도에 따르면,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 (가이아나 v. 베네수엘라) 사건에 관한 재판소 관할권 문제에 대한 공개심리가 2020년 6월 30일에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라 심리는 화상 회의의 형식으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언론과 대중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로 구두 절차를 볼 수 있다. 공개심리 프로그램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29일 가이아나는 영국령 기아나(British Guiana: 가이아나의 옛 이름)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국경을 결정한 1899년 10월 3일 중재판정(the Award Regarding the Boundary between the Colony of British Guiana and the United States of Venezuela, of 3 October 1899: 1899년 중재판정)의 법적 타당성과 구속력에 대해 ICJ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ICJ에 제소했다.

가이아나는 신청에서 영국령 기아나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국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1899년 중재판정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최종적인 합의”라고 주장했다. 가이아나의 주장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1962년에야 처음으로 1899년 중재판정에 대해 “임의적”이고 “무효”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때문에 1966년 2월 17일 “베네수엘라와 영국령 기아나 사이의 국경 외 베네수엘라와 영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1966년 제네바협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30일 구테헤스 당시 유엔사무총장의 주선을 통해 이 두 국가간의 국경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사무총장은 “1966년 제네바협정”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분쟁을 ICJ에 부탁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결정을 전달했다. 가이아나는 사건의 신청에서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한다”고 명시했다. ICJ는 2018년 6월 19일자 명령을 통해 가이아나의 준비서면과 베네수엘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각각 2018년 11월 19일과 2019년 4월 18일로 정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ace Palace, Carnegieplein 2, 2517 KJ The Hague, Netherlands

Tel.: +31 (0)70 302 2323 Fax: +31 (0)70 364 9928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Twitter Account: [@CIJ\\_ICJ](https://twitter.com/CIJ_ICJ) YouTube Channel: [CIJ ICJ](https://www.youtube.com/channel/UCIjICJ)

LinkedIn pag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https://www.linkedin.com/company/international-court-of-justice)

### Press Release

Unofficial

No. 2020/15

29 May 2020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Public hearings by videoconference**

THE HAGUE, 29 May 2020. Public hearings on the ques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in the case concerning the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will open on Tuesday 30 June 2020 at 2 p.m.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seat of the Court.

In view of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the hearings will take place in the Great Hall of Justice using videoconference technology and with the physical presence of some of Members of the Court. Members of the media and the public will be able to follow the oral proceedings on internet through a live webstream.

The programme of the hearings will be announced at a later stage.

---

###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207-215 of the Annual Report of the Court for 2018-2019 and in Press Releases Nos. 2020/5 and 2020/8, which are available on the Court's website ([www.icj-cij.org](http://www.icj-cij.org)).

---

*Note:* The Court's press releases are prepared by its Registry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rough judgments which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

###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참고: 현재 ICJ에 계류 중인 사건 목록 (2020. 6. 15. 기준)

○ 심리 또는 심의 중에 있는 사건 목록

1.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2.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84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3.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II, Section 2, of the 1944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Bahrai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 재판 계류 중인 사건 (사건 도입 날짜순)

1.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2.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3.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4.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5.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6.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7.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8.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9.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10.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11.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12.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84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Bahrain, Egypt,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13. Appeal Rela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AO Council under Article II, Section 2, of the 1944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Bahrain, Egypt and United Arab Emirates v. Qatar)
14. Alleged violations of the 1955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15. Relocation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Jerusalem (Palestine v. United States of America)
16. Guatemala's Territorial, Insular and Maritime Claim (Guatemala/Belize)
17.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Gambia v. Myanmar)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 ITLOS, 새 사무차장에 프랑스 출신의 Antoine Ollivier 선출

2020년 3월 13일, ITLOS의 새 사무차장(Deputy Registrar)에 프랑스 출신의 안토인 올리비에(Antoine Ollivier)가 선출됐다. 올리비에 사무차장은 2019년 9월 20일 선출된 칠레 출신의 시메나 힌리쉬 오아스(Ximena Hinrichs Oyarce) 사무처장(Registrar) 다음 직급으로, 5년 동안 사무차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사무차장은 재판소 규칙에 따라 재판관이 지명한 후보들 중에서 선출된다. 사무차장은 재판소 규칙 제37조에 따라 사무처장을 도와 ITLOS의 재판과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사무처장이 부재중일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1  
13 March 2020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 Press Release

### MR ANTOINE OLLIVIER ELECTED AS DEPUTY REGISTRAR OF THE TRIBUNAL

The Judg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lected Mr Antoine Ollivier, of French nationality, as the Deputy Registrar of the Tribunal today. He succeeds Ms Hinrichs Oyarce, who was elected Registrar on 20 September 2019. Mr Ollivier will serve as Deputy Registrar for a term of five years.

Mr Ollivier currently serves as Legal Officer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nd previously he worked as Special Assistant to the Registrar of the ICJ. He has also worked at the Directorate for Legal Affair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Paris and is the author of several articles and chapter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ICJ and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Pursuant to the Rules of the Tribunal, the Deputy Registrar of the Tribunal is elected from among candidates nominated by the judges of the Tribunal. The Deputy Registrar, whose functions are defined by article 37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assists the Registrar and acts as Registrar in the latter's absence.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TLOS

- ITLOS, 토머스 멘사 전 ITLOS 재판관 서거 발표

2020년 4월 9일, ITLOS는 토머스 멘사(Thomas Mensah) 전 ITLOS 재판관의 서거를 발표했다. 멘사 재판관은 1996년 10월 1일 재판소 위원으로 선출되어 2005년까지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멘사 판사는 ITLOS 초대 재판소장으로서 취임 후 재판소 설립에 크게 이바지했다.

< 관련보도자료 >

ITLOS/Press 302  
9 April 2020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RIBUNAL INTERNATIONAL DU DROIT DE LA MER

# Press Release

## THE TRIBUNAL DEEPLY REGRETS TO ANNOUNCE THE DEATH OF JUDGE THOMAS MENSAH

It is with profound regret tha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nounces the death of Judge and inaugural President of the Tribunal, Thomas A. Mensah (Ghana), in London this week.

Judge Mensah was elected Member of the Tribunal on 1 October 1996 and served as a judge until 2005.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Tribunal, Judge Mensah great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ribunal in its inaugural years.

Following his departure from the Tribunal in 2005, Judge Mensah served as Judge *ad hoc* before the Tribunal in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Bangladesh/ Myanmar)*, *The “ARA Libertad” Case (Argentina v. Ghana)*, *Provisional Measures*, and the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ôte d’Ivoire in the Atlantic Ocean (Ghana/Côte d’Ivoire)*. He also served as a member of various arbitral tribunals.

Judge Mensah held degrees from the University of Ghana, the University of London, and Yale University Law School, where he obtained his JSD in 1964. In 1968, he began his prestigious career a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here he became Assistant Secretary-General and Director of Legal Affairs in 1981. From 1991 to 1992, Judge Mensah was also Special Advisor on Environmental Law and Institutions for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in Nairobi. He was appointed Professor of Law and Director of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nd to the Cleveringa Chair at the University of Leiden in the Netherlands. He further acted as High Commissioner of Ghana to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from 1995 to 1996.

Judge Mensah was a member of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a titular member of the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f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nd a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Maritime Arbitration at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Paris. He published extensively on international law, law of the sea and maritime law.

The Tribunal pays tribute to Judge Mensah's work as President and Judge at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to his noteworthy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중재재판소)

- 흑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 관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중재재판 판정 선고 및 공개

2020년 3월 16일, 흑해, 아조프해 및 케르치 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에 관한 분쟁(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사건에 관한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2020년 2월 21일 중재재판소가 판정이 공개됐다. PCA는 본 중재재판 절차를 위한 사무처(Registry) 역할을 한다. 본 판정은 절차명령 제2호에 따라 판정의 어느 부분이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분쟁당사국이 검토할 기회를 가진 후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에 분쟁당사국은 판정 후 21일의 검토 기간을 가졌고, 이후 본 판정은 PCA 사건보관소(Case Repository)를 통해 공개됐다.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6년 9월 15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흑해, 아조프(Azov)해 및 케르치(Kerch) 해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강탈하고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러시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분쟁을 중재재판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5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설치됐다. 2018년 2월 19일 우크라이나는 준비서면(Memorial)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2018년 5월 21일 러시아는 중재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선결적 항변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20일, 중재재판소는 절차명령 제3호를 통해 러시아가 제기한 항변에 대해 본안절차와는 별도의 선결적 항변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는 2019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헤이그 평화궁에서 러시아가 제기한 재판소의 관할권 존부에 대한 선결적 항변에 대해 심리를 개최했다. 2월 21일, 선결적 항변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본안 판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크림반도에 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주권을 결정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한다.
- b) 아조프해와 케르치 해협에서의 활동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러시아의 항변은 전적으로 선결적 성격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본안절차에서 검토 및 결정하기로 한다.
- c) 이 외에 러시아가 제기한 항변은 기각한다.
- d) 우크라이나는 이 판정에서 결정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의 범위와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정한 준비서면(Memorial)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e)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의 것을 부담하기로 결정한다.

5인 중재재판소는 의장 백진현 재판관(대한민국)을 비롯해, Boualem Bouguetaia 재판관(알제리), Alonso GómezRobledo 재판관(멕시코), 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 재판관(러시아), Professor Vaughan Lowe QC 재판관(영국)으로 구성된다. 이 중 Lowe 재판관은 우크라이나가 지명하였고, Golitsyn 재판관은 러시아가 지명했다.

< 관련보도자료 >

COUR PERMANENTE D'ARBITRAG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PRESS RELEASE

### DISPUTE CONCERNING COASTAL STATE RIGHTS IN THE BLACK SEA,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UKRAINE V. THE RUSSIAN FEDERATION)

THE HAGUE, 16 MARCH 2020

#### Publication of Award Concerning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an arbitration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r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coastal State rights in the Black Sea,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an award concer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has been published on the case repository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The PCA acts as registry for the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had issued the award on 21 February 2020. Pursuant to Procedural Order No. 2,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award, the Parties had 21 days to consider whether any part of the award should be designated as contain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arbitration was instituted on 16 September 2016, when Ukraine served on the Russian Federation a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sup>1)</sup> under Annex VII to UNCLOS in respect of a “dispute concerning coastal state rights in the Black Sea,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The arbitration concerns Ukraine’s claims, as described in its Memorial filed on 19 February 2018, that the Russian Federation has violated (i) “Ukraine’s rights to hydrocarbon resources in the Black Sea and Sea of Azov,” (ii) “Ukraine’s rights to living resources in the Black Sea,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iii) “Ukraine’s rights by embarking on a campaign of illegal construction in the Kerch Strait that threatens navigation and the marine environment,” (iv) “its duty to cooperate with Ukraine to address pollution at sea,” and (v) “Ukraine’s UNCLOS rights and [its] own duties in relation to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

1) The full title of the document is “Notification under Article 287 and Annex VII, Article 1 of UNCLOS and Statement of the Claim and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The Russian Federation raised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grounds that:

- the Arbitral Tribunal lacks jurisdiction because the Parties' dispute in reality concerns Ukraine's "claim to sovereignty over Crimea" and is therefore not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s required by Article 288,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over claims concerning activities in the Sea of Azov and in the Kerch Strait;
-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in light of the Parties' declarations under Article 298(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military activities, law enforcement activities, delimitation, and historic bays or titles;
-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over fisheries claims in light of Article 297(3)(a) of the Convention;
-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over fisherie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navigation in light of Annex VIII to the Convention; and
-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281 of the Convention.

The Arbitral Tribunal decided, in Procedural Order No. 3, that these preliminary objections should be addressed in a preliminary phase of the proceedings. The Parties accordingly filed written pleadings concer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From 10 to 14 June 2019, the Arbitral Tribunal held a hearing concer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at the Peace Palace, The Hague. The Parties' written pleadings and the opening statements presented by the Agents of the Parties at the hearing are also publicly available on the PCA Case Repository (<https://pca-cpa.org/en/cases/149/>).

In its award of 21 February 2020, the Arbitral Tribunal, unanimously:

- a) *Upholds* the Russian Federation's objection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over Ukraine's claims, to the extent that a ruling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merits of Ukraine's claims necessarily requires it to decide, directly or implicitly, on the sovereignty of either Party over Crimea;
- b) *Finds* that the Russian Federation's objection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over Ukraine's claims concerning activities in the Sea of Azov and in the Kerch Strait does not possess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and accordingly decides to reserve this matter for consideration and decision in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 c) *Rejects* the other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its jurisdiction;
- d) *Requests* Ukraine to file a revised version of its Memorial, which shall take full account of the scope of, and limits to, the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as determined in the present Award;
- e) Decides that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sup>2)</sup>

On 21 February 2020, the Arbitral Tribunal also issued Procedural Order No. 6, setting forth the procedural timetable for further written pleadings.

The five-member Arbitral Tribunal is chaired by Judge Jin-Hyun Paik as Presiden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other members are Judge Boualem Bouguetaia (Algeria), Judge Alonso Gómez-Robledo (Mexico), Judge 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 (Russian Federation), and Professor Vaughan Lowe QC (United Kingdom). Professor Lowe was appointed by Ukraine. Judge Golitsyn was appoin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Judges Paik, Bouguetaia, and Gómez-Robledo wer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Article 3, paragraph 2, of Annex VII to UNCLOS.

\* \* \*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1899 Hague Convention on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PCA has 122 Contracting Parties. Headquartered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the PCA facilitates arbitration, conciliation, fact-finding, and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among various combinations of States, State entiti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parties. The PCA's International Bureau is currently administering three inter-State disputes, 109 investor-State arbitrations, and 49 cases arising under contracts involving a State or other public entity, and five other disputes. More information about the PCA can be found at [www.pca-cpa.org](http://www.pca-cpa.org).

The PCA has acted as Registry in numerous arbitrations and conciliations between States, including in 15 proceedings under UNCLOS.

Contact: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E-mail: [bureau@pca-cpa.org](mailto:bureau@pca-cpa.org)

---

2) Award Concerning the Preliminary Objec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para. 492.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ICC 상소심재판부, 아프가니스탄 수사 개시 허가

2020년 3월 5일, ICC 상소심재판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관련 ICC 관할 범죄 혐의에 관한 소추관의 수사 개시를 만장일치로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상소심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2017년 11월 20일 소추관의 수사 개시 요청에 대해 현 단계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정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2019년 4월 12일 ICC 전심재판부 II의 기각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소추관은 전심재판부 II의 기각 결정에 대해 상소했다.

상소심재판부는 아프가니스탄, 피해자 대표 및 기타 참가자의 의견과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소추관의 전심재판부 II 판결에 대한 상소 근거를 고려해 본 결과, 전심재판부가 소추관의 수사 개시 허가 요청을 검토할 때 ‘정의의 이익 요소’(interests of justice factor)를 고려하는 실수를 했다고 판단했다. 상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수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만을 다뤄야 했다고 봤다.

상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의 결정에 모든 사실인정(factual findings)을 포함하고 있고, ICC 관할 범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질러졌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상소심재판부는 새로운 재판을 명령하기 보다는 수사 자체의 개시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상소심재판부는, 2017년 11월 20일자 소추관의 요청에서 확인된 범위 내에서, 2003년 3월 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 영토에서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와 아프가니스탄의 무력충돌과 관련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충분히 연계되어 있으며, 로마규정의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서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범죄들의 조사를 허가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5 March 2020 | پښتو، دری

### **Afghanistan: ICC Appeals Chamber authorises the opening of an investigation**

ICC-CPI-20200305-PR1516

Today, 5 March 2020,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decided unanimously to authorise the Prosecutor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The Appeals Chamber’s judgment amended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I of 12 April 2019, which had rejected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uthorisation of an investigation of 20 November 2017 and had found that the commencement of an investigation would not be in the interests of justice. The Prosecutor had filed an appeal against that decision. Judge Piotr Hofmański, the presiding judge in this appeal, read a summary of the

Appeals Chamber's judgment in open court.

Having considered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against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as well as the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f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representatives of victims and other participants,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the Pre-Trial Chamber erred in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justice factor' when examining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uthorisation to open an investigation. In the Appeals Chamber's view, the Pre-Trial Chamber should have addressed *only* whether there was a reasonable factual basis for the Prosecutor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in the sense of whether crimes have been committed, and whether the potential case(s) arising from such investigation would appear to fall within the Court's jurisdiction. Noting that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contained all the necessary factual findings and had confirm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consider that crimes within the ICC jurisdiction have been committed in Afghanistan, the Appeals Chamber decided to authorise the opening of an investigation itself, rather than to send the matter back to the Pre-Trial Chamber for a new decision.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the Prosecutor is authorised to investigate, within the parameters identified in the Prosecutor's request of 20 November 2017, the crime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Afghanistan since 1 May 2003, as well as other alleged crimes that have a nexus to the armed conflict in Afghanistan and are sufficiently linked to the situation in Afghanistan and were committed on the territory of other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since 1 July 2002.

Judge Ibáñez Carranza filed a separate opinion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5 and its relationship with article 53 of the Rome Statute.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C

-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사건: ICC 상소심재판부, ICC의 재판적격성 인정 확정

2020년 3월 9일, ICC 상소심재판부는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사건에 대한 재판적격성 인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하고 카다피 사건에 대해 재판적격성을 인정한 전심재판부 I의 결정에 대한 카다피의 상소를 기각했다.

상소심재판부는 ICC가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임을 상기했다. 따라서 당해인이 제소의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이미 다른 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ICC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상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 I의 결정을 검토한 결과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에 의한 결정이 최종적이어야만 재판적격성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전심재판부 I의 로마규정 해석에 동의했다.

상소심재판부는, 전심재판부 I이 카다피에 대한 2015년 7월 28일자 리비아 법원의 판결이 카다피의 불출석 상태에서 내려졌다고 판단한 데에는 오류가 없으며, 따라서 리비아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9 March 2020

### **Saif Al-Islam Gaddafi case: ICC Appeals Chamber confirms case is admissible before the ICC**

ICC-CPI-20200309-PR1518

Today, 9 March 2020,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unanimously confirmed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Saif Al-Islam Gaddafi before the Court and rejected his appeal against the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dismissing his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this case.

The Appeals Chamber recalled that the Court is “complementary to 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s”. A case is inadmissible when a person “has already been tried” and no person “who has been tried by another court” for crimes under the ICC jurisdiction shall be tried by the ICC with respect to the same conduct. In reviewing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the Appeals Chamber found no error in it and agreed with its interpretation of the Rome Statute, indicating that the decision issued by a national jurisdiction must be final before a case can be declared inadmissible.

Having considered the submissions of the Defense, the Prosecutor, the victims, Libya’s government and

others, the Appeals Chamber found that the Pre-Trial Chamber did not err in concluding that the Libyan judgment of 28 July 2015 against Mr Gaddafi was rendered *in absentia*.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Libyan Government's submissions to the ICC. Thus, under Libyan Law, the Tripoli Court's judgment cannot be considered final. The Appeals Chamber further agreed with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that the Libyan Law No. 6 (2015) in respect of amnesty is not applicable to the crimes for which Mr Gaddafi was convicted by the Tripoli Court. Accordingly, the Appeals Chamber rejects Mr Gaddafi's appeal.

The Appeals Chamber is composed of Judges Chile Eboe-Osuji, Presiding, Howard Morrison, Piotr Hofmański,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and Solomy Balungi Bossa. Judge Eboe-Osuji and Judge Bossa jointly append a concurring separate opinion. Judge Ibáñez Carranza will, in due course, file a separate opinion to this judgment, related to the question of amnesties and international law.

**Judgment on the appeal of Mr Saif Al-Islam Gaddafi against the decision of Pre-Trial Chamber I entitled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Challenge by Dr. Saif Al-Islam Gaddafi pursuant to Articles 17(1)(c), 19 and 20(3) of the Rome Statute"' of 5 April 2019**

**Concurring Separate Opinion of Judge Eboe-Osuji and Judge Bossa**

**Separate and Concurring Opinion of Judge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Background:** The situation in Libya was referred to the ICC Prosecutor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its Resolution 1970. On 3 March 2011, the Prosecutor announced the opening of an investigation in the situation in Libya, which was assigned by the Presidency to Pre-Trial Chamber I.

On 27 June 2011, Pre-Trial Chamber I issued three warrants of arrest respectively for Muammar Mohammed Abu Minyar Gaddafi,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for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and persecution) allegedly committed across Libya from 15 until at least 28 February 2011, through the State apparatus and Security Forces. On 22 November 2011, Pre-Trial Chamber I formally terminated the case against Muammar Gaddafi due to his death. Saif Al-Islam Gaddafi and Abdullah Al-Senussi are not in the custody of the Court.

On 31 May 2013, Pre-Trial Chamber I rejected Libya's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the case against Saif Al Islam Gaddafi and reminded Libya of its obligation to surrender the suspect to the Court. On 21 May 2014, the Appeals Chamber upheld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On 11 October 2013, Pre-Trial Chamber I decided that the case against Abdullah Al-Senussi is inadmissible before the ICC as it was currently subject to domestic proceedings conducted by the Libyan competent authorities and that Libya is willing and able genuinely to carry out such investigation. On 24 July 2014, the Appeals Chamber confirmed Pre-Trial Chamber I's decision.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C

- ICC 소장단,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을 담당할 1심재판부 V를 구성

2020년 3월 16일, ICC 소장단은 Yekatom과 Ngaïssona 사건을 담당할 1심재판부 V를 구성했다. 1심재판부 V는 버트람 슈미트(Bertram Schmitt) 재판관, 페테르 코바흐스(Péter Kovács) 재판관, 정창호 재판관 등으로 구성됐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Alfred Yekatom은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8월까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범해진 수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8년 11월 17일에 ICC로 인도됐다. Patrice-Edouard Ngaïssona는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범해진 수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8년 1월 23일 ICC로 인도됐다. 2019년 2월 20일, 전심재판부 II는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사건과 *The Prosecutor v.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을 병합했다. 2019년 12월 11일, ICC 전심재판부 II는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사건에서 Yekatom과 Ngaïssona에 대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7 March 2020

### **Yekatom and Ngaïssona case: ICC Presidency constitutes Trial Chamber V**

ICC-CPI-20200317-PR1520

On 16 March 2020, the Presidenc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constituted Trial Chamber V, which will be in charge of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Trial Chamber V is composed of Judge Bertram Schmitt, Judge Péter Kovács and Judge Chang-ho Chung.

Trial Chamber V will be in charge of the conduct of the trial in this case. The Chamber will hold status conferences, confer with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in order to set the date of the trial and adopt the procedure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fair and expeditious conduct of the proceedings.

#### **Decision constituting Trial Chamber V and referring to it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Background:** The arrest warrant for Alfred Yekatom was issued on 11 November 2018 and unsealed on 17 November 2018. He was surrendered to the ICC on 17 November 2018 and appeared for the first time before Pre-Trial Chamber II on 23 November 2018. The arrest warrant for Patrice-Edouard Ngaïssona was issued on

7 December 2018. He was arres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French Republic on 12 December 2018 and transferred to the ICC detention centre on 23 January 2019, upon completion of necessary national proceedings. His initial appearance before Pre-Trial Chamber II took place on 25 January 2019. On 20 February 2019, Pre-Trial Chamber II joined the Yekatom and Ngaïssona cases.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was held on 19-25 September and 11 October 2019.

On 11 December 2019, Pre-Trial Chamber II partially confirmed the charge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brought by the Prosecutor against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and committed them to trial. The public redacted version of the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was published on 20 December 2019.

On 11 March 2020, Pre-Trial Chamber II rejected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or alternatively Leave to Appeal, the "Decision on the confirmation of charges against Alfred Yekatom and Patrice-Edouard Ngaïssona", thereby concluding the proceedings in the case before that Chamber, and ordering the Registrar to transmit the Decision Confirming the Charges and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to the Presidency.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before Pre-Trial Chamber II and the Decision Confirming the Charges were transmitted to the Presidency by the Registrar on 13 March 2020.

Mr Yekatom and Mr Ngaïssona are in the Court's custody.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Al Hassan 사건: ICC 전심재판부 I, 공소사실 변경 수락

2020년 4월 23일, ICC 전심재판부 I은 *The Prosecutor v.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사건(Al Hassan 사건)에 대한 소추관의 공소사실 변경 요청을 수락했다. 전심재판부 I은 결정에서 Al Hassan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인도에 반하는 죄에는 성적 노예화, 강간, 강제매춘 및 강제 결혼을 포함한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추가되었고, 전쟁범죄 혐의에는 잔혹한 대우, 성적 노예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행위 및 ‘일반적으로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규로 구성된 법원의 판결없는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등이 추가됐다. 소추관의 그 외 요청은 기각됐다.

Al Hassan은 2018년 3월 27일에 전심재판부 I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2018년 3월 31일에 ICC로 이송되었다. 공소사실의 확인을 위한 심리는 2019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다. 2019년 9월 30일, 전심재판부 I은 Al Hassan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혐의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1월 21일 1심재판부X가 구성됐으며, 2020년 7월 14일에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3 April 2020 | العربية

### Al Hassan case: ICC Pre-Trial Chamber I accepts amendments to the charges

ICC-CPI-20200317-PR1520

Today, 23 April 2020, Pre-Trial Chamber 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the Court”) issued a confidential decision partially granting the Prosecutor’s request to modify the charges against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Mr Al Hassan). A redacted version of this decision will be made public later. [NB: The redacted version of this decision was made public on 11 May 2020.]

In its decision, the Chamber decided to include in the charges already confirmed against Mr. Al Hassan additional facts for which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he would be responsible for.

Thus, the following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re modified to include additional facts: sexual slavery, rape, persecution and other inhuman acts, including forced marriage; as well as the following charges of war crimes: cruel treatment, sexual slavery, rape, outrages upon personal dignity and passing of sentences without previous judgement pronounced by a regularly constituted court affording all judicial guarantees which are generally recognized as indispensable. The other requests by the Prosecutor were dismissed.

Background: The warrant of arrest for Al Hassan Ag Abdoul Aziz Ag Mohamed Ag Mahmoud was issued on

27 March 2018. He was surrendered to the ICC on 31 March 2018. He is in the Court's custody. 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took place from 8 to 17 July 2019. On 30 September 2019, Pre-Trial Chamber I issued a confidential decision confirming the charge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brought by the Prosecutor against Mr Al Hassan and committed him to trial. The redacted version of the decision was published on 13 November 2019. On 21 November 2019, Trial Chamber X was constituted and wi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trial in the Al Hassan case. The trial is scheduled to open on 14 July 2020.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C

#### - ICC 전심재판부 II, 장-피에르 뱌바의 보상 및 피해 청구 기각 결정

2020년 5월 18일, 전심재판부 II는 장-피에르 뱌바의 보상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뱌바는 ICC 체포영장에 따라 2008년 5월 체포돼 2018년 6월 8일 상소심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심재판부는 뱌바의 주장이 로마규정 제85조 제3항에 따른 보상 청구와 ICC 명령에 따른 동결 자산과 관련 피해에 대한 청구 등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뱌바가 로마규정 제85조의 의미 내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재판의 오류가 있었음을 규명하지 못해 보상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로마규정 제85조의 범위와 권한을 벗어난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전심재판부는 아울러 뱌바 사건은 소송 절차의 기간 또는 더 심각하게는 구금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는 경우에 수반되는 결과의 심각성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기본 테두리 안에서 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재판소 절차의 간소화해야 할 재판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재판소는 로마규정 당사국들이 그러한 제한 사항들을 고려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18 May 2020

### **ICC Pre-Trial Chamber II rejects Mr Bemba's claim for compensation and damages**

ICC-CPI-20200518-PR1523

Today, 18 May 2020, Pre-Trial Chamber 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issued its decision on ‘Mr Jean-Pierre Bemba’s claim for compensation and damages’. Mr Bemba was arrested in May 2008 following an ICC arrest warrant and was acquitted by the ICC Appeals Chamber on 8 June 2018.

The Chamber noted that Mr Bemba’s claim had two components to it: a request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85(3) of the Rome Statute, and a request for damages related to the alleged ICC Registry’s mismanagement of assets frozen by order of ICC Judges.

On the first component, the Chamber considered that Mr Bemba failed to establish that he had suffered a grave and manifest miscarriage of justic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85 of the ICC Rome Statute, and accordingly, declined to exercise its discretion to award compensation to Mr Bemba.

On the second component, the Chamber found that the matter falls outside the scope of article 85 of the ICC Rome Statute and of its competence, and accordingly dismissed it. The Chamber also noted that, sinc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execution of a cooperation request emanating from the Court rests primarily with the requested States, with the role of the Registry limited to facilitating their communication with the Court, its decision is without prejudice to Mr Bemba's right to pursue other procedural remedies and avenues which might otherwise be open to him for alleged damages to his assets as a consequence of measures taken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rt's orders.

Furthermore, the Chamber noted that the Bemba case provides a case in point as to the seriousness of the consequences entailed by the absence of statutory limits as to the duration either of the proceedings or, even more critically, of custodial detention. While stressing the Cour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expeditiousness of the proceedings as a fundamental tenet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o streamline its own proceedings accordingly, the Chamber found it urgent for the State Parties to embark on a review of the Statute so as to consider addressing those limitations.

#### **Decision on Mr Bemba's claim for compensation and damages**

## ● 국제사법기구 최신 동향

### ICC

#### - ICC 상소심재판부, 그바그보와 블레 구데의 석방 조건 변경

2020년 5월 28일, 상소심재판부는 그바그보(Gbagbo)와 블레 구데(Blé Goudé)에게 조건부 석방 결정 한 판결에 대한 그바그보 변호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상소심위원회는 석방 조건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바그보와 블레 구데의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와는 관련이 없다. 상소심위원회는 그바그보 변호인단이 판단 논거의 명백한 오인을 밝히지 못했고, 판결에 대한 재심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상소심재판부는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두 사람의 석방과 관련해 부과된 조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하고 4가지 조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바그와 블레 구데가 이 법정의 모든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1월 15일, 1심재판부는 그바그보와 블레 구데가 2010년과 2011년 코트디부아르에서 범한 인도에 반한 죄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하였다. 1심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따른 그바그보와 블레 구데의 석방을 명령했다. 1심재판부는 소추관이 그바그보와 블레 구데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제출된 증거를 분석한 결과 소추관이 그바그보의 범죄 혐의의 여러 핵심 구성 요소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9년 2월 1일, 상소심재판부는 그바그보와 블레 구데에 대한 무죄판결에 따른 조건부 석방을 결정 한 바 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8 May 2020

### **ICC Appeals Chamber amends the conditions of release of MM. Gbagbo and Blé Goudé**

Today, 28 May 2020, 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or “Court”) decided to dismiss the request of the Defence for Mr Gbagbo for reconsideration of its judgment granting him and Mr Blé Goudé conditional release. The Appeals Chamber however decided to review the conditions of release. This decision does not concern th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acquitting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The Appeals Chamber noted that the Defence of Mr Gbagbo did not demonstrate a clear error of reasoning, nor that there are particular circumstances justifying reconsideration of the Judgment.

The Appeals Chamber however decided to review the continued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conditions imposed on the release of the two acquitted individuals and decided to revoke the following conditions: (1) Not to travel beyond the territorial limits of the municipality of the receiving State without the explicit and prior authorisation of the Court; (2) To surrender all identity documents, particularly their passports, to the

Registry; (3) To report weekly to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or the Registry; and (4) To abide by any additional reasonable conditions imposed by the State of release. The other conditions remain in force. The Chamber added that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shall comply with all orders of this Court.

**Decision on counsel for Mr Gbagbo’s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the ‘Judgment on the Prosecutor’s appeal against the oral decision of Trial Chamber I pursuant to article 81(3)(c)(i) of the Statute’ and on the review of the conditions on the release of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Background:** On 15 January 2019, Trial Chamber I, by majority, Judge Herrera Carbuccion dissenting, acquitted Mr Laurent Gbagbo and Mr Charles Blé Goudé from all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llegedly committed in Côte d’Ivoire in 2010 and 2011. A fully reasoned decision was issued in writing on 16 July 2019. Subsequently, the Prosecutor appealed this decision.

The trial in this case started on 28 January 2016, for alleged charg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rape, other inhumane acts or – in the alternative – attempted murder, and persecution) allegedly committed in the context of post-electoral violence in Côte d’Ivoire between 16 December 2010 and 12 April 2011.

With regard to the present decision, on 1 February 2019, following an appeal by the Prosecutor against the oral decision of Trial Chamber I of 16 January 2019 which ordered release of the acquitted persons without conditions, the Appeals Chamber delivered its judgment on the matter, in which it amended the oral decision and imposed a number of conditions on the release of Mr Gbagbo and Mr Blé Goudé. On 7 October 2019, counsel for Mr Gbagbo requested that the Appeals Chamber reconsider its judgment and order Mr Gbagbo’s immediate release without conditions. A hearing on this matter was held by the Appeals Chamber on 6 February 2020.

# 국제법 관련 국내법

## 〈 순 서 〉

-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8호, 2020. 3. 3., 일부개정)
-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0. 3. 4., 대통령령 제30508호, 2020. 3. 3., 일부개정)
- 검역법 (시행 2021. 3. 5., 법률 제17068호, 2020. 3. 4., 일부개정)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7호, 2020. 3. 24., 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9호, 2020. 3. 24., 일부개정)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60호, 2020. 3. 31.,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기획재정부령 제786호, 2020. 4. 1., 일부개정)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2020. 5. 12., 대통령령 제30669호, 2020. 5. 12., 일부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02호, 2020. 5. 26., 전부개정)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정)
- 외무공무원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06호, 2020. 5. 26., 일부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9호, 2020. 5. 26., 일부개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694호, 2020. 5. 26., 일부개정)
- 재외동포재단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07호, 2020. 5. 26., 일부개정)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35호, 2020. 5. 26., 일부개정)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20. 5. 28., 외교부령 제78호, 2020. 5. 28.,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9., 법무부령 제972호, 2020. 5. 29., 일부개정)

### ▶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8호, 2020. 3. 3.,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국내에서는 1만원, 재외공관에서는 10달러의 수수료

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는 4만8천원, 재외공관에서는 48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상향 조정하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만5천원, 재외공관에서는 1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부착식 여권 명칭을 비전자여권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0. 3. 4., 대통령령 제30508호, 2020. 3. 3.,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용도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법률 제16701호, 2019. 12. 3. 공포, 2020. 3. 4.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외교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검역법 (시행 2021. 3. 5., 법률 제17068호, 2020. 3. 4.,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세균성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7호, 2020. 3. 24., 제정)

#### •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名譽宣揚)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7089호, 2020. 3. 24.,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바,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만 벌하도록 하는 등 양벌규정을 조정하며,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7160호, 2020. 3. 3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공사관 및 영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기획재정부령 제786호, 2020. 4. 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같은 해 10월 28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적용과 관련한 추천방안을 협의하는 계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는 한편,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근거조문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2020. 5. 12., 대통령령 제30669호, 2020. 5.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에 두는 주재관 중 경찰 업무분야로서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재관의 경우 직위공모 방식이 아닌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주재관 선발심사 시 선발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을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재관의 근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긴급한 업무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7302호, 2020. 5. 26.,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상·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 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2조제7호).
- 나. 국가 등의 책무로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5조제4항).
- 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의 조정 및 심사·의결을 명시하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함(제7조).
- 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제9조).
- 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제13조).
- 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하도록 함(제14조).
- 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을 확정하도록 함(제15조).
- 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고려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차.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7305호, 2020. 5. 26., 제정)

### • 제정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 나.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 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 5조).
- 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제6조제1항). <법제처 제공>

▶ **외무공무원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7306호, 2020. 5.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이 되는 파견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9호, 2020. 5.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5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 및 임원의 기준 등 세부적인 등록요건을 정하고,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에 투자한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요건(제211조의2 신설)

- 1) 국내의 집합투자기구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위한 적격 요건으로서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는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자기자본과 미화 5억달러 이상의 운용자산 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인력을 갖추도록 함.
-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통화, 예금, 증권, 금 예탁증서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을 정함.

나. 대규모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 사유 추가(제256조제3호의2 신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 감사(제264조제1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함.

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및 통지(제275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없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그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마.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 요건(제30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1)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위한 적격 요건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적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 2) 금융위원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국(自國)에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제한한 경우 등에는 해당 국가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일반적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694호, 2020. 5. 26.,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한국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80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한국학교를 한국학교가 소재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 등이 재학하는 한국학교로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한국학교의 장은 해당 한국학교의 지원 대상 학생 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재외동포재단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7307호, 2020. 5. 26.,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외동포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7335호, 2020. 5.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연구기관 간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 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완화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허가 없이 획득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유전자원이나 생물자원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비하여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20. 5. 28., 외교부령 제78호, 2020. 5.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베네수엘라의 치안 및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별 구분을 다지역에서 나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외공무원에게 달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 중 가나를 마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과테말라를 라지역에서 다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해당 지역별 구분을 2019년 UN 생계비지수와 ECA 생계비지수를 활용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9., 법무부령 제972호, 2020. 5.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대상이 된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하여 범칙금 상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 국제법 관련 판례

## 〈 순 서 〉

-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위헌확인 [2020. 2. 27. 2016헌마945])
-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가 국내에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대상인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470])
-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 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이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국)])

▶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위헌확인 [2020. 2. 27. 2016헌마945])**

**【 판시사항 】**

- 가. 여행금지국가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예외적 여권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령(2016. 5. 13. 대통령령 제271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 나.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외교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나.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어렵다. 또한 국외 위난상황은 외교적 분쟁,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이에 적합한 수단이다.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국제 테러리즘이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후적 대처만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2007년에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사건 당시에도 국외 위난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여권법에 이 사건 처벌조항을 도입하여 여행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형벌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 경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벌 외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과 동일한 수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가벌성이 제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의 위난상황이 우리나라의 국민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가 국내에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운항정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갑 항공 주식회사 소속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라 갑 회사에 45일의 위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갑 회사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증명되었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가 국내에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 【참조조문】

[1]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5조의3 제1항(현행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참조), 구 항공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1조의3 제1항 [별표 56] 제8호(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제1항 [별표 34] 제48호 참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85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6누39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부담하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이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에는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과 같은 ‘특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은 원고가 항공공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구 항공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6] 제8호 각 목이 위 처분사유에 대하여 정한 운항정지 기간을 감정한 것인데, 이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의 처분양정(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85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보고서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된 이상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욱   노정희   김상환(주심)

###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독일 법인인 갑 유한회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인 을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인 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병 회사는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갑 회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갑 회사가 을 펀드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을 펀드임을 전제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병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징수처분을 하였고, 갑 회사를 병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병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이 독일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독일 법인인 갑 유한회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인 을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인 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병 회사는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갑 회사에 배당금(이하 ‘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갑 회사가 을 펀드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을 펀드임을 전제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병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징수처분을 하였고, 갑 회사를 병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연혁, 을 펀드의 투자자와 투자대상, 을 펀드 계좌의 개설 경위, 갑 회사의 을 펀드에 관한 업무수행 내역, 그에 따른 병 회사의 배당소득 지급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과 갑 회사 및 을 펀드에 관한 독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일 거주자인 갑 회사는 을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을 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갑 회사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병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 지급된 것이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대상인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470])

### 【 판시사항 】

-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의 적용대상인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의 의미(=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 및 이때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 또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의 의미 및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4]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5]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갑 투자회사 등이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을 은행 등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을 은행 등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를 수취하였고, 을 은행 등은 6년 동안 갑 회사 등에 위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위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과세관청 등이 을 은행 등에 배당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 등의 세율을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와 구 지방세법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 등은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위 배당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갑 회사 등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함은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이자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8조는 “이 협약은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현행 1929. 7. 31.자 법 및 1938. 12. 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1929. 7. 31.자 법은 ‘다른 룩셈부르크 또는 외국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운용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되 산업활동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룩셈부르크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지주회사에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다. 한편 1938. 12. 17.자 법령은 최소 10억 프랑의 외국회사 자산이 출자된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를 지주회사가 지급한 이자, 배당, 이사 급여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약 규정 및 룩셈부르크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는 ‘주식 등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1929. 7. 31.자 법 또는 1938. 12. 17.자 법령과 유사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받는 지주회사’를 뜻하며, 이러한 목적 없이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4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세분’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인세분을 부과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96조는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법인세액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분 세액을 특별징수하도록 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분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세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분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갑 투자회사 등이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을 은행 등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을 은행 등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이하 ‘배당 등’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을 은행 등은 6년 동안 갑 회사 등에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과세관청 등이 을 은행 등에 배당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 등의 세율을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와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 등은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갑 회사 등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역, 투자자와 투자대상, 을 은행 등의 갑 회사 등에 대한 배당 등의 지급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 및 갑 회사 등에 관한 룩셈부르크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투자수의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 등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당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갑 회사 등에 지급된 것이어서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갑 회사 등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로 볼 수 없는 데도,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파·범인도피교사])**

**【 판시사항 】**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 /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4호 (가)목].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9조 제3항 제1호). 다만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택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크게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등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수출입 및 반송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6. 2. 3.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이하 ‘개정 교토협약’이라고 한다)의 특별부속서 E(운송) 제2장(환적)의 이행지침에서는, 환적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해당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영역에 도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 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내용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는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1, 2차 원산지신고서가 모두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 국내 갑 회사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인 영국의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 회사인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수입하면서, 판매회사가 발급한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잘못된 기재된 1차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세당국의 보정요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영국 생산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2차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세당국이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영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영국 관세당국이 위 수입물품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나 1, 2차 원산지신고서를 영국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자, 피고가 위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후 생산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수입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이 이루어져 피고로서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이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 확정 [손해배상(국)])**

### 【판시사항】

뉴질랜드 국민인 갑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갑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갑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갑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갑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뉴질랜드 국민인 갑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갑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갑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갑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에이즈예방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데,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갑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교육감이 갑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비록 국가가 갑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갑에 대하여 직접 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감 등과 공동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 【전 문】

(생략)

나. 피고의 항변(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호보종의 법리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국적인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요건과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상호보종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7조는 대한민국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대한민국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대한민국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종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종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뉴질랜드인으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소송법(Crown Proceedings Act 1950) 제1편(실체법) 제3조 제2항 b호, 제6조는 뉴질랜드 정부는 그 공무원 또는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고, 뉴질랜드 국민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은 뉴질랜드 정부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정한 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한바, 뉴질랜드 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정당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생략)

## 새소식 요약

| 기간 : 2020. 3. 1. ~ 2020. 5. 31. |

###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뉴스·공지 > 보도자료] 참조

- 우리 정부는 2.29.(토)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 정부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정에 서명하고, 동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아프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 외교부는 국제정세의 유동성 증대, 대내외 위협 요소 증가 등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들을 발표했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3월 4일(화) 14:30 외교전략센터 현판식 및 개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6(금) 15:30-16:30간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함께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방역 현황에 대한 제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 외교부는 3.13.(금) 11:00-12:50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참석 하에 「한중 코로나 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중간 분야별 경험을 평가 및 공유하고, △방역·임상 정보 교류, 방역물자 수급, 기업인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최경림 G20 국제협력대사(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임무수행)는 올해 G20 정상회의(11.21.-22.,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준비를 위해 3.12.(목) 개최된 제2차 셰르파 회의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가했다.
- 강경화 장관은 3.25(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코로나19 행동 기반(COVID Action Platform)」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약 24만 쪽)의 외교문서를 2020. 3. 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미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4.9.(목) 발표했다.
- 강경화 외교장관은 4.13.(월) 오후 「피터 마우러 (Peter Maure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총재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측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한국과 ICRC간의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세소식 요약

- 외교부는 4.16.(목) 오후 1시(한국시간),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미타 5개국간 고위관리회의(SOM)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6일 현지시간 16시, 한국시간 23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19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 강경화 장관은 4.16(목) 「코로나19와 여성 : 행동방안 (COVID19 and Women : Avenues for Action)」 주제하에 개최된 여성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외교부는 4.17.(금)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및 의료지원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강경화 장관은 4.17(금)(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 약 90분 동안 코로나19 국제협의그룹 외교장관들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동 협의 계기에 외교장관들은 ‘필수적 글로벌 연계 유지에 관한 코로나19 장관급 국제협의그룹 공동선언(Declaration of the Ministerial Coordination Group on COVID-19 on maintaining essential global links)’을 채택했다.
- 강경화 외교장관은 4.20.(월) 오후 「필리포 그란디 (Filippo Grandi)」 유엔난민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한-유엔난민기구[UNHCR]간의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강경화 외교장관은 4.24.(금) 오전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WFP 협력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공조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외교부는 4.29.(수) 오후 강경화 장관 참석 하에 코로나19 신국제협력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동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강경화 장관은 5.4(월) 22:00-01:00(한국시간)간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에 참여했다.
- 강경화 장관은 5.6.(수) 저녁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자 공관장들과의 화상 회의를 갖고, 다자무대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동향과 유엔, WHO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강경화 장관은 5.11(월)(한국시간) 오후 8시부터 약 70분 동안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다자간 화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회의를 5.12(화) 오전(뉴욕시간)에 화상으로 개최하고, 참여 회원국들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조직(T/F) 주관의 「K-방역」 제2차 웹세미나를 5월 13일(수) 17시에 개최한다.

## 세소식 요약

- 외교부는 5.13.(수) 오후 강경화 장관 주재로 유럽지역 7개국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내 코로나19 현황 및 외교분야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코로나 이후 외교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부는 ‘20.5.13(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 외교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와 화상 콘퍼런스를 5.19.(화) 오전(09:00-11:00)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 외교부는 5.20.(수) 오후 강경화 장관 주재로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7개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저유가가 GCC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지원 및 대중동 경제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 출범회의를 5.20(수) 오전 (제네바시각)에 화상으로 개최했다.
- 제76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분야의 협력 제고”를 주제로 5.21.(목) 11:00-18:30 (한국시간) 동안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8.(목)-4.9.(금),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5.22.(금) 11:00-12:00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 김정한 아태국장은 5.21.(목) 저녁(한국시간 기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고위관리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참석국 대표들과 각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정부는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유 요청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방역협력 총괄T/F 통합게시판을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신설했다.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 차별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 화상회의를 5.26(화) 오전(파리시각)에 개최했다.
- 외교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보건안보 : 현 체제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1차 민간자문회의」를 5.27.(수) 오전 개최했다.
-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5.26.(화) 23:00-02:00(한국시각)간 개최된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 고위관리회의[SOM]가 5.27.(수) 20:00~5.28(목) 01:00 (한국시간 기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미국-탈레반간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한 약정」 서명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0-03-02)

1. 우리 정부는 2.29.(토)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 정부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정에 서명하고, 동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아프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 미-탈레반 약정 정식 명칭 : Agreement for Bringing Peace to Afghanistan between the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which is not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as a state and is known as the Talib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우리 정부는 3.10부터 개시될 예정인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간 내부협상에 양측이 진정성있는 자세로 임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미국과 탈레반간 상기 약정에는 2020.3.10.부터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간 내부협상(intra-Afghan negotiations)이 개시된다는 내용 포함

##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익 중심의 외교” (2020-03-03)

□ 외교부는 3.3.(화) 「2020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외교부는 국제정세의 유동성 증대, 대내외 위협 요소 증가 등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들을 발표했다.

※ 6대 핵심 추진 과제 :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형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 첫째, 대통령·총리간 역할 분담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 둘째,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함으로써 비핵화 진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 셋째, ▲한미동맹의 포괄적·호혜적인 발전 추진 ▲최고위급 교류를 활용한 한중관계 관리 및 발전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강화 ▲한러 관계의 획기적 발전 계기 마련 등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로 국익 극대화

○ 넷째, ▲신북방정책의 본격 추진 ▲P4G 정상회의·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및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다섯째,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 ▲보건·환경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다변화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 여섯째, ▲국민 경제에의 실질적 지원 ▲국민 외교 및 공공외교 강화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지속 추진으로 ‘국민·국익 중심’의 외교 실현

□ 금년에는 특히 ▲보건·환경 분야 위협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과 기업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국민들이 외교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는 2020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전략센터 개소식 개최 (2020-03-04)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3월 4일(화) 14:30 외교전략센터 현판식 및 개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 동 외교전략센터는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도전과 외교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외교전략 구축 및 외교 의제와 정책 발굴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에 설립하게 되었다.
- 외교전략센터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위기요인을 식별하고 대응 기준과 지침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주변국과의 지식공동체 구축 및 동북아 안보 아키텍처 구축과 관련한 연구, △중견국 외교전략, 세계여론 및 전략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의 주요 사업인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연내 개최 등 정부의 역내 다자대화와 협력 추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개소식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외교안보연구소 소장과 원내 교수진 및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외부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다.

### 주한외교단 대상 제2차 코로나 관련 우리 정부 대응 현황 설명회 개최 (2020-03-06)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6(금) 15:30-16:30간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함께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방역 현황에 대한 제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47명의 대사들을 포함한 112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3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강경화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 내 확진자 수의 빠른 증가는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와 관련이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정부가 공항에서의 발열검사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장관은 신속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교차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혁신적인 방역 시스템을 소개했다.
  - 아울러,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을 인용하여 국제사회가 한국의 방역 대응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 이어, 강경화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방역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과도한 인적교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한대사관이 한국 내 상황을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는 눈과 귀가 되어 줄 것(be eyes and ears)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조기 발견 △접촉자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통한 지역 사회 확산 방지 등 우리정부의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한외교단이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의 코로나19 지역별 현황 및 확진자 대비 사망자 통계 △외국인 확진자 발생 시 대사관과의 소통 등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 금번 설명회에는 1차 설명회 보다 20명 이상 많은 주한외교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참석자들은 금번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방역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 금번 설명회는 주한 외국인 및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방역 대응 노력을 심층 설명하는 기회가 된 바, 각국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자국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화상회의 개최 결과 (2020-03-13)

- 외교부는 3.13.(금) 11:00-12:50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 참석 하에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중간 분야별 경험을 평가 및 공유하고, △방역·임상 정보 교류, 방역물자 수급, 기업인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서울 외교부 청사와 베이징 중국 외교부 및 위건위 청사간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
- 이번 회의는 강상욱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우리측 보건복지부·교육부·법

무부·국토교통부 및 중국측 위생건강위원회·교육부·이민국·민항국·해관총서 등의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 우리측은 그간 우리가 범정부차원에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방식 등에 기반하여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시행해 왔으며,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중국측은 그간 중국 정부 역시 강력한 방역 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자국의 방역·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 우리측은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중간 긴밀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관계 유지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내 우리 국민·기업인 보호 및 지원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우리 국내 마스크 수급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하였고, 중국측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양측은 상호 유학생의 편의 보장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양측은 그간 한중 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상호 방역물품 지원과 격려메시지 발신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져 온 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간 우호가 더욱 증진되고 양국관계의 토대도 공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이번 대화는 지난 2.20. 한중 정상간 통화시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며, 양측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부처별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 2020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제2차 세르파 회의 결과 (2020-03-13)

- 최경림 G20 국제협력대사(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세르파\* 임무수행)는 올해 G20 정상회의(11.21.-22.,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준비를 위해 3.12.(목) 개최된 제2차 세르파 회의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가하였다.

※ 이번 회의는 당초 이틀간(3.11.-12.) 사우디 코바르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사우디의 여행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약 절반의 회원국이 물리적 참석이 어려워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하고 일정을 만나절로 단축하여 개최함.

\*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해 각 회원국이 지명한 세르파가 ▲정상회의 의제 관련 의견 수렴·총괄, ▲회원국들과의 대외 협상 총괄 등 사전교섭대표 활동을 수행

- ‘세르파’는 히말라야 산악 등반 시 등정 루트 선정부터 등반 시간 최종 설정까지 모든 것을 조언하는 필수 인력을 지칭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 대응 공조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공조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

한 협력 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문(붙임1)에 합의하였다.

- 최 대사는 신속하고 투명한 진단 및 관리를 통해 확진자 수 증가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국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이 무역과 이동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05년 5월 5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을 채택하였으며, 동 규정 서문 및 제2조(목적과 범위)에 ‘국제 공중 보건 위기를 위한 조치 시에는 불필요한 교역과 이동의 제한이 자제되어야 함’이 명시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 △무역 및 투자, △에너지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최 대사는 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 P4G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강경화 장관, 세계경제포럼(WEF) 화상회의에서 발표 (2020-03-25)

- 강경화 장관은 3.25(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코로나19 행동 기반(COVID Action Platform)」 화상회의에 참여하였다.

○ 오늘 회의에는 강경화 장관 외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리처드 해셋 감염병혁신연합(CEPI) 회장, △라

이프 요한손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회장, △짐 스나베 지멘스앤메르크스(Simen&Maerks) 최고경영자, △앨런 조프 유니레버(Unilever) 최고경영자, △찰스 리 홍콩 증권거래소(HKEX) 최고경영자 등이 발표자로 참석

※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행동 기반(COVID Action Platform)」을 출범시키고 정부, 국제기구, 기업(200여개 세계경제포럼 회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

- 강 장관은 「세계 상황 점검(World Update)」이라는 주제 하에서 초기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한국의 현재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개방성·투명성 원칙과 압도적인 진단 역량에 기반하여 대규모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
  - 특히 4월로 연기된 개학을 앞두고 집단 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력한 전 국민적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대규모의 즉각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상황도 소개
-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현황을 설명하였고, 특히 발원자 중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 회장이 한국이 여타 국가들에게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 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메르스·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개발 및 비축분 확보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협력 파트너십으로 2017.1월 다보스 포럼 계기 출범.

###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2020-03-27)

-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 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3.26)
- 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온 현행 여권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18-37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 현행 제도 하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수수료(20,000원) 및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3,000원)와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며,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

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되며,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을 도과한 채 국외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수혜대상 56만명(20~24세: 43만명, 25~37세: 13만 명))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 (2020-03-31)

-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약 24만 쪽)의 외교문서를 2020. 3. 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 ※ 원문해제: 외교문서의 주요내용을 문서철별로 해설·요약(700자 내외)
  - 올해 공개되는 문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협의, △재사할린동포 귀환 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 △동구권 국가

와의 국교수립 관련 문서 등 포함

-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자료실뿐만 아니라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 현재 코로나19로 임시휴관 중, 개관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 외교부는 1994년부터 27차에 걸쳐 총 28,000여권(약 391만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 믹타(MIKTA) 5개국,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2020-04-09)

1.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므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4.9.(목) 발표했다.
  - ※ 므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16차례 외교장관회의, 7차례 고위관리회의, 5차례 국회의장회의 등 교류 외에도 2014.9월 에볼라 발병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 등 20건 이상의 공동성명 발표
2. 올해 므타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된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므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므타 회원국

간 연대와 국제적 정책공조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국제 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케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강조해 온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시민들의 방역조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3.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최근 주요국들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채택된 것으로서, 금번 세계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므타 회원국의 연대 표명과 함께, 향후 회원국간 보건 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그간 우리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므타 회원국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으며,
    - ※ 우리 정부는 멕시코(3.7., 외교장관간 통화), 인도네시아(3.3. 및 3.28. 외교장관간 통화), 터키(3.6., 정상간 통화), 호주(4.7., 정상간 통화) 등 므타 회원국과 고위급 소통 시행
  - 동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4.16.(목), 므타 고위관리회의[SOM] 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5개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강경화 장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통화 결과 (2020-04-13)

1. 강경화 외교장관은 4.13.(월) 오후 「피터 마우러 (Peter Maure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총재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측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한국과 ICRC간의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야기한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의 전면에서 ICRC가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 또한 국내적 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3. 마우러 총재는 한국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ICRC도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전세계 취약 지역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희망하였다.
4. 양측은 한-ICRC간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므타 5개국,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2020-04-16)

1. 외교부는 4.16.(목) 오후 1시(한국시간), 합상옥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므타 5개국간 고위관리회의(SOM)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올해 므타 의장국인 우리측 제의에 따라 개최

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므타 회원국 고위관리회의 대표가 참여했다.

※ 고위관리회의 참석자

- (멕시코) 다미안 마르티네스(Damian Martinez)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 (인도네시아) 페브리안 루드야드(Febrian Ruddyard) 외교부 다자협력국장
- (터키) 외메르 규죽(Ömer Güçük) 외교부 다자경제국장
- (호주) 저스틴 리(Justin Lee) 외교통상부 다자정책국장

2.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각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므타 회원국간 보건·방역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우리측은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검진 역량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방역 강화시에도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인 및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국경간 이동은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아울러, 우리측은 올해 의장국으로서 향후 므타 차원에서 보건 의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므타 보건당국간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회의 참석자들은 서로 상이한 지역에 위치한 므타 5개국간 소통과 협력의 효율성에 공감하고, 향후 보건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후속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3.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우리 정부가 최근 주요국들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므타 5개국간 보건분야 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난 4.9(목)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므타 고위관리회의 대표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의장국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 2019년 우리나라 ODA는 25.2억불, DAC 국가 중 15위 (2020-04-16)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6일 현지시간 16시, 한국시간 23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19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2019년 ODA 확정통계는 올해 12월에 발표 계획

-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528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0%입니다.

□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18년대비 1.6억불 증가한 25.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5위\*(2018년 15위) 수준입니다. (☞참고1)

\* 순위 : 미국(1위), 독일(2위), 덴마크(14위), 대한민국(15위), 벨기에(16위)

-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p 증가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DAC 회원국들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ODA를 축소하고 있어,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4% 수준입니다.

- 한편, 2010~2019년 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11.9%\*이며, '19년 ODA 규모(25.2억불)는 '10년(11.7억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2)

\* 동기간 중 연평균 ODA 증가율은 한국(11.9%), 헝가리(10.5%), 독일(7.0%) 順

### 강경화 장관, 여성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2020-04-17)

- 강경화 장관은 4.16(목) 「코로나19와 여성 : 행동방안 (COVID19 and Women : Avenues for Action)」 주제하에 개최된 여성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Arancha González Laya)」 스페인 외교장관이 주최한 금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호주, 인도네시아, 스웨덴 등 9개국 여성외교장관 참석
  - ※ 회의 참석국 : 한국, 스페인(주최), 호주, 스웨덴, 케냐,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 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관련 노력을 설명하였다.
  -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 △보호 및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우리나라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통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돌봄 및 가사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

- 여성 외교장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인 여성보호 지원과 양성평등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각국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참여 장관들은 향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합의

### 외교부-국립중앙의료원간 업무협약약정 체결 (2020-04-17)

- 외교부는 4.17.(금)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및 의료지원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이번 약정서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각각 서명하였다.
- 동 약정 체결에 따라,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각종 전염성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고, ▲국제보건안보 증진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양 기관은 ▲주요 외교행사시 필요한 비상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의료부문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의료인력 파견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약정 체결은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전염성 질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전문적

인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동 인식 하에 이루어졌으며, 향후 양 기관은 국제 보건안보 증진 및 우리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국제협의그룹 외교장관 전화 협의 결과 (2020-04-17)

1. 강경화 장관은 4.17(금)(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 약 90분 동안 코로나19 국제협의그룹\* 외교장관들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동 협의 체계에 외교장관들은 ‘필수적 글로벌 연계 유지에 관한 코로나19 장관급 국제협의그룹 공동선언(Declaration of the Ministerial Coordination Group on COVID-19 on maintaining essential global links)’을 채택하였다.
  - 동 선언은 ▲글로벌 경제·무역·여행에 대한 혼란 완화, ▲백신·치료제 개발 등 국제적 보건 대응 공조, ▲모범 사례 공유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 협력 필요성을 담고 있으며,
  - 특히, 우리측 제안에 따라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이동 등 필수적인 여행을 허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번 공동선언은 출범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한 동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 향후 참여국간 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를 촉진해 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 ※ 금번 전화 협의에는 한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터키, 영국 등 12개국 외교장관이 참여
    -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외교장관, 에르네스투 아라우주(Ernesto Araújo) 브라질 외교장관, 장-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

스 외교장관, 닐스 안넨(Niels Annen)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루이지 디 마이오(Luigi Di Maio) 이탈리아 외교장관,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장관, 구스타보 메사-콰드라 벨라스케스(Gustavo Meza-Cuadra Velasquez) 페루 외교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 메블뤛트 차부쉬오올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교장관, 도미니크 랫(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

2. 외교장관들은 또한 각 국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강 장관은 동 회의 제안국인 캐나다의 요청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선도발언을 하였다.
  -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지속 모색해왔으며,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4.15(수) 국회의원 총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였다고 소개하고, 현재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조건과 준비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강 장관은 또한, 경제활동 정상화의 기본 전제 조건은 진단(Testing)·추적(Trace)·치료(Treat) 등 ‘3T’를 지속 적극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각 국의 의료·방역 체계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업종별로 중요도·위험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 조치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3. 외교장관들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있어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과 진단·추적·치료(3T)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모범 사례를 상호 적극 공유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자·다

자적으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UNHCR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강경화 장관, 유엔난민최고대표 통화 결과 (2020-04-20)

1. 강경화 외교장관은 4.20.(월) 오후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한-유엔난민기구[UNHCR]간의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국내적 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UNHCR이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난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3. 「그란디」 최고대표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여타 국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UNHCR의 최근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소개하면서, 전세계 난민 및 난민수용국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희망하였다.
  - ※ UNHCR은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 요청 (UNHCR Coronavirus Emergency Appeal)」 발표 (3.25.)
    - △식수보건위생 시스템 강화 △도시 및 난민캠프 등 밀집지역 구호물자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총 2.55억 미불 지원 요청
4. 양측은 한-UNHCR간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

## 강경화 장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통화 (2020-04-24)

1. 강경화 외교장관은 4.24.(금) 오전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WFP 협력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공조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한편, WFP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등 어려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도적 지원 항공 서비스(UNHAS) 운영에 대한 우리측의 기여 확대 계획도 설명하였다.
  - ※ 인도적 지원 항공 서비스(UNHAS: UN Humanitarian Air Service)
    - WFP가 인도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직원, NGO 및 외교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립된 지역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항공 서비스(우리는 2017-19년간 총 250만불 → 2020-22년간 총 500만불로 기여 확대 예정)
3. 비즐리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WFP 활동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가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WFP측은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금년말까지 36개국에서 2억 6,500만명이 식량위기에 직면하는 대기근이 올 수 있다고 설명.

제협력을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2020-04-29)

- 외교부는 4.29.(수) 오후 강경화 장관 참석 하에 코로나19 신국제협력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동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팀장, 4명의 반장 및 팀원 전원 참석
  - ※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는 △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감염병 대응 등 국제 보건 안보 협력 제고를 위해 출범한 외교부내 T/F로, 합상육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팀장으로 ▲총괄기획반, ▲다자외교추진반, ▲방역·개발협력반, ▲조약·법제반 등 4개반 20명의 팀원으로 구성
- 강경화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진정한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와 같은 중견국들의 능동적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고, 이러한 배경하에 발족하는 신국제협력 T/F가 국내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가 높고,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동 T/F가 코로나19 등 국제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국

- T/F는 금일 회의를 통해 △우리 주도하 유엔, WHO, UNESCO내 보건 안보 우호그룹 결성·운영,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확대, △중점지원국 대상 모듈형 긴급 대응 프로그램 추진, △보건협력 모델 협정 마련 등 사업들을 향후 주마다자외교일정(믹타 고위급회의, 인권이사회, UNESCO 집행이사회, 유엔총회 등)과 연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Team Korea로서 협력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보건 안보 위기에 대해 보다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방역·경제·국제정치·IT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외부자문그룹도 구성할 계획이다.
  - 또한, 전 부처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외교 사업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 동 T/F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교부가 추진 중인 양자·소다자 협력과 지역 및 국제기구 외교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회의 참석 (2020-05-05)

- 강경화 장관은 5.4(월) 22:00-01:00(한국시각)간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에 참여하였다.
  - 동 회의는 국제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진단제품을 개발하여 적정 가격에 폭넓게 공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75억 유로\* 모금 목표)

\*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비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 주도로 2018년 출범한 GPMB(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가 분석한 코로나19 대응 목적 신규 재원 필요금액(80억불)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개최된 오늘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40개 공여국\*,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 등이 참여하여 백신·치료제·진단제품 개발을 위한 기여 의사를 밝혔다.

\*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 20여개국,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남아공, 터키, 사우디, UAE 등

□ 강 장관은 ▲국내 진단키트 생산 역량과 해외 수요 국가들에 대한 공급, ▲국내 기업·연구소의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화상세미나 등을 통한 우리 방역 경험·기술 공유, ▲국제 보건기구 및 단체들에 대한 우리 기여 등을 설명하였다.

○ 우리 정부는 백신·치료제·진단과 관련하여 국제 보건 기구 및 단체들에 매년 5,000만불을 기여해 오고 있고,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다년간 기여 등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

○ 또한,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에 대한 기여를 시작하고 관련 보건 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다자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2020-05-06)

□ 강경화 장관은 5.6.(수) 저녁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자 공관장들과의 화상 회의를 갖고, 다자무대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동향과 유엔, WHO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화상회의에는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 공관장 5명\*, 외교부 다자업무 관련 실·국장 및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 주유엔대사, 주제네바대사, 주오이시디대사, 주오스트리아 겸 주빈대사, 주유네스코대사

□ 강 장관은 코로나19가 몇몇 국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경험과 강점을 반영한 코로나 다자협력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상생의 한국형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의 모범적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평가를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해나갈 것을 강조

○ 5월중 유엔(뉴욕), WHO(제네바), 유네스코(파리)에서 우리 주도로 출범 예정인 보건안보 관련 우호그룹들이 행동지향적인 국제공조를 선도할 효과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 5월중 개최되는 WHO 총회 준비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 보건외교 가시성 제고를 위한 다자무대 현장에서의 지속적 노력 요청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국제기구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및 회원국간 논의 동향, ▲글로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기여

를 확대하기 위한 다자외교 수행 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 공관장들은 우리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이 다자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면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K-방역 협력 확대와 보건안보 논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으로 평가 받는 우리나라가 유엔 등 주요 다자무대에서 우리의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전세계적 코로나 대응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7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결과 (2020-05-11)

1. 강경화 장관은 5.11(월)(한국시간) 오후 8시부터 약 70분 동안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다자간 화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화상회의에는 한국과 제안국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일본 등 7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하였다.
    - ※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회의 주재), 마리스 페인(Maris Payne) 호주 외교장관, 에르네스투 엔히키 프라가 아라우주(Ernesto Henrique Fraga Araujo) 브라질 국무장관,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 이스라엘 외교장관, 모테기 토시미쓰(Motegi Toshimitsu) 일본 외무대신 참석
2.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발병 초기 단계시 대응, ▲재확산 방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3.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투명하고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여 왔음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3T(Test(진단), Trace(추적), Treat(치료))’ 등을 통한 국내적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와중에, 최근 집단감염 발생으로 다시 확진자가 두자리 수로 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만큼 코로나19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 또한, 국내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료용품의 해외 지원 및 수출,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전세계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또한, 경제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필수적 이동을 포함한 국가간 인적 교류 재개 및 운송망 회복, 세계 시장의 개방성 유지,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외교장관들은 미국이 금번 외교장관 화상회의 개최를 포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동 화상회의에서 이뤄진 코로나19 대응 관련 허심탄회하고 유의미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

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 (2020-05-13)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출범회의를 5.12(화) 오전(뉴욕시각)에 화상으로 개최하고, 참여 회원국들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

○ 외교부는 우리의 코로나19 모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 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설립을 주도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엔에서 처음 출범하는 코로나19 관련 우호그룹으로서, 우리나라, 캐나다, 덴마크, 카타르, 시에라리온이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여타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

※ 이번 출범회의에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포함한 공동의장국 외교장관,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데이비드 나바로(David Nabarro)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특사, 케빈 러드(Kevin Rudd) 국제평화연구소(IPI) 이사회 의장(前 호주 총리), 유엔 외교단 및 사무국 관계자, 보건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우호그룹 출범을 환영하고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

□ 강경화 외교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행동지향적이고 적실성있는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새로 출범한 우호국 그룹이 유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할 효과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타 공동의장국 외교장관들은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건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

□ 유엔 사무부총장 등 초청연사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건뿐만 아니라 평화 및 안보·개발·인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글로벌 회복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리측 연사로 참여한 이민원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했던 도전과제들과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초한 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공유한바,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표명

□ 이번 출범 회의에 참석한 유엔의 각국 대표들과 유엔사무국 관계자들은 한국정부가 모범적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우호국 그룹 출범 등 유엔 차원의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우호국 그룹의 심도있는 논의가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의 조율된 대응과 효과적인 행동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동 우호국 그룹은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보건안보 과제를 중심으로 유엔 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인간안보 증진을 모색해나갈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정부는 우호국 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코로나19 관련 K-방역 및 선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국제보건 협력을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
- 우호국 그룹은 향후 참여국들간 협의를 바탕으로 ▲대사급 정례 회의를 포함한 각급 협의체 운영, ▲전문가 초청 브리핑 및 간담회, ▲유엔회의 계기별 공동발언 시행 및 부대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 수행 예정

###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TF 제2차 웹세미나 개최(5.13) (2020-05-13)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조직 (T/F) 주관\*의 「K-방역」 제2차 웹세미나를 5월 13일(수) 17시에 개최한다.

\*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6개 참여, 한국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구성 (4.27일~)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코로나19 관련 ‘보건 및 방역 전략’을 주제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위한 발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①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체계·시민참여·의료지원 등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과 현황,
  - ②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홍기호 과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핵심사항 및 고려사항,

- ③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기모란 교수가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코로나19 대응행 대비와 대응,

- ④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의석 교수가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감염관리와 환자 치료 사례에 대하여 발표한다.

- 연사들의 강연이 끝난 후에는 약 35분간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 영어 및 프랑스어의 3개 채널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자 외에도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웹사이트(<http://medicalkorea.mlive.kr>)에 접속하여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 지난 5월 4일 제1차 웹세미나는 73개국 903명(중복 제외)이 시청하였다.

- 대륙별 참가자 수는 ▲아시아 554명, ▲중동·아프리카 122명, ▲러시아 및 CIS 84명, ▲유럽 64명, ▲아메리카 60명, ▲오스트레일리아 및 오세아니아 19명으로 집계되었다.

- 시청자 수가 많은 국가는 미얀마(72명), 필리핀(57명), 쿠웨이트·인도네시아(각각 35명), 우즈베키스탄(34명), 러시아(33명), 우간다(28명), 말레이시아(27명), 미국(21명), 스웨덴(15명) 등으로,

-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부터 선진국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K-방역」 웹세미나를 시청하였다.

- 현장 질의로는 ①코로나19 경험에 비추어, 국가 차원 질병 관리의 최우선 순위, ②두 번째 확산을 대비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거리 두기 사이의 균형, ③재양성 비율, ④검체 채취 및 전문 치료 방법 등이 있었다.

- 웹 세미나의 강연 및 현장 질의응답 영상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영문 누리집\*에 5월 중 게재할 예정이다.

\* <http://ncov.mohw.go.kr> - English - Archive-videos

- 아울러 「K-방역」 웹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정보를 전 세계 보건의로 관계자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7일 제3차 웹세미나를 영어, 스페인어 통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강경화 장관, 유럽 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2020-05-13)

- 외교부는 5.13.(수) 오후 강경화 장관 주재로 유럽지역 7개국 주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내 코로나19 현황 및 외교분야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코로나 이후 외교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화상회의에는 유럽지역 공관장 7명 및 본부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함.
    - \* 주독일, 러시아, 벨기에유럽연합,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대사
- 강 장관은 우리 공관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국제환경(New Normal) 속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새롭게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관장들의 현지 경험 및 분석을 토대로 한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對유럽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 코로나19 이후 권위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 등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이 다시 대두될 위험이 있는 가운데, 개방성,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이 어느 때 보다 중요
-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은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만큼, 비대면 화상 회의 등 새로운 외교 방식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
-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코로나19로 야기될 유럽 국제정치 변화에 대한 전망과 각국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對유럽 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공관장들은 코로나19가 우리 외교의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우리의 방역 성과를 토대로 제고된 국가 이미지 및 소프트파워를 외교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이슈에 있어 우리의 기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국제사회 내 위상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토의함.
  - 공관장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보건분야 선도 국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중견국 외교를 적극 모색하며 우리의 외교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음.
- 이번 화상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유럽 현지 상황 및 각국의 대응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변화되는 국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유럽과의 외교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본부-공관간 유용한 소통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2020-05-14)

- 정부는 ‘20.5.13(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 ‘17.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19.12월 국회비준동의 완료
- 금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 금번 기탁으로 BEPS 다자협약은 ‘20.9.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대상 조약)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
    -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 완료
      - \*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한 국가, 다자협약 서명 의사를 표시한 국가 등
      - \*\*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협상 등을 통해 개정 추진
    -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 증가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
  -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 도입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 전망
  -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 제고 기대

-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에의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 개정대상조약, 개별 조세조약상 다자협약 개정효과를 반영한 통합본 등
  - \*\* ①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ef.go.kr/lw/taxtrt/mltAgreemPrgs.do?menuNo=7050000> 또는
  - ②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메뉴(법령→조세조약→다자협약)를 통해 접근 가능

### 한-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화상 콘퍼런스 개최 (2020-05-15)

- 외교부,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와 화상 콘퍼런스를 5.19.(화) 오전(09:00-11:00)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 1975년 창설된 중남미 2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기구로 중남미 역내 지역통합 관련 사업 실시
  - ※ 주요참석자 : Jaiver Paulinich SELA 사무총

장, 신승철 한중남미협회 회장, 조학희 한국 무역협회 본부장, 김원호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장, Ignacio Bartesaghi 우루과이 카톨릭대학교 경영과학대학장 등

□ 이번 화상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경제·금융정책, ▲중남미지역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복구전망,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경험과 중남미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중남미 경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에 더해 최근 유가폭락과 사회·정치 불안으로 중남미지역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 위기대응 방안 및 가능한 한-중남미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올해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IMF) : -5.2% (전세계 경제성장률 -3%)

□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전략의 주요 대상 지역이자 신흥시장인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등 중남미지역 경제협력체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를 회원국으로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1995년 설립

※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를 회원국으로 역내 경제통합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지향하며 2012년 설립

## 강경화 장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2020-05-20)

1. 외교부는 5.20.(수) 오후 강경화 장관 주제로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7개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저유가가 GCC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지원 및 대중동 경제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GCC : 걸프지역 6개 산유국들(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이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1981.5월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이번 화상회의에는 GCC 지역 공관장 7명\*\* 및 중동·경제외교 관련 본부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

\*\* 주바레인대사, 주UAE대사, 주오만대사, 주사우디대사, 주카타르대사, 주쿠웨이트대사, 주두바이총영사(가나다순)

2.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GCC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외교환경 하에서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우리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및 GCC 국가들의 국경봉쇄로 인한 필수 인력 입국 문제 등 우리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와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GCC 국가들이 탈석유·산업다변화, 민간부문 비중 확대 등 경제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이어서 인프라 뿐만 아니라 보건, ICT, 방산, 원자력, 전자정부, 농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GCC 국가들과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

3. 강경화 장관은 GCC 국가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화되고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관장들이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대중동 경제외교 활성화 관련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이 GCC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코로나19 이후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외교 전략을 본부와 공관이 토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그룹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보건기구 본부\*가 모여 있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이러한 제네바 기반 그룹이 출범하는 것은 처음임.
  - \* 글로벌펀드(Global Fund), 백신면역연합(Gav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 등
- WHO 집행이사국 등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수의 지역별 국가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주축으로,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보건 거버넌스를 위한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임.
  - ※ 우선 우리나라, 싱가포르, 터키, UAE, 모로코, 케냐, 멕시코, 페루 8개국으로 구성된 핵심그룹(core-members)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여타 관심있는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형태로 운영할 예정

###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 출범 (2020-05-20)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형성을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 출범회의를 5.20(수) 오전(제네바시각)에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G4IDR)

※ 외교부는 K-방역 모델 공유 및 보건 분야의 다자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유엔(뉴욕), 세계보건기구(WHO, 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 차원에서 각각 우리 주도 우호그룹을 출범하는 계획 추진

- 유엔 우호그룹\*은 5.12(화) 출범하였으며, 유네스코 우호그룹은 5.26(화) 출범 예정

\*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

□ 이번 출범식에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금번 지지그룹 출범을 축하하였으며, 여타 감염병 관련 주요 보건기구 대표\*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감염병 대응의 기회와 도전요인”을 주제로 패널 토의도 실시되었다.

\* △Peter Sands ‘글로벌펀드’ 사무총장 △Seth Berkley ‘백신면역연합(Gavi)’ CEO △Philippe Duneton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대리 △Lucica Ditiu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 단장 △Jerome Kim ‘국제백신연구소(IVI)’ 소장 등

※ 제네바 주재 유엔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 보건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여

□ 강경화 외교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 같은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 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새로 출범한 동 지지그룹이 제네바 차원에서 국제 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여타 핵심그룹 국가 대표들은 WHO가 위치하고 있는 보건 분야 논의의 중심인 제네바에서 이러한 유사입장국 그룹 출범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WHO 등 유관 보건기구들의 강화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 지지그룹 출범 주도를 환영하고, 동 지지그룹이 코로나19 및 향후 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동 그룹에 대한 WHO의 지지와 지원을 표명하였다.
- 글로벌펀드, Gavi, IVI 등 여타 국제 보건기구 대표들은 지지그룹 출범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코로나19 및 여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 지지그룹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앞서 지난 5.18(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석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 이어, 동 그룹의 출범은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향후 국제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여타 감염병의 위협과 도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그룹은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핵심그룹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WHO 집행이사회 등 주요 보건기구의 의사일정에 맞추어 감염병 대응 분야 인식 제고 및 의제 설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동발언, ▲전문가 초청 행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행사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제76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총회 결과 (2020-05-21)

- 제76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총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분야의 협력 제고”를 주제로 5.21.(목) 11:00-18:30 (한국시간) 동안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지역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역내 최대 규모의 정부간 기구 (62개 회원국)
-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관련 협력 강화” 결의안\*이 채택되어,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 우리 정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노력, ▲해양플라스틱 저감 대책 추진 등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 보건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제도를 갖추어 과거

보다 더 나은 재건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의지를 담은 코로나19 대응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K-방역 모델을 국제 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의료용품 지원 요청 등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산하 아태기술이전센터[APCTT\*] 운영 위원회에 입후보하여 선출되었다.

\* Asian and Pacific Centre for Transfer of Technology

※ 운영위원회 선출국 (10개국) : 한국,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20-05-22)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021.4.8.(목)-4.9.(금),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공동주재로 5.22.(금) 11:00-12:00간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현황 및 계획,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19호)」에 따른 8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핵심활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내년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행사 주최 계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9월 영국, 2017.11월 캐나다, 2019.3월 유엔 본부 개최에 이어 제4차 회의로서, 150여개 재정·병력공여국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임.

-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우리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멘텀을 살려, 기술강국이자 K-방역 등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경험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 우리 군이 모범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정 장관은 전 세계 외교·국방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동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비전통 안보위협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과 노력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하였다.

-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 주최 계기 150여개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주요인사 등 1,300여명을 초청하여 평화유지활동 분야 기술·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키로 하였다.
- 또한 행사 계기 다양한 양자·소다자 협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측 관심의제를 제기하고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기술 시연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고 유엔 조달시장 진출 등 수출지원 효과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2021년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인만큼, 유엔 평화유지 장관 회의의 주최를 통해 유엔 주도 국제평화·안전유지 활동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공약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IORA 고위관리 화상회의 개최 결과 (2020-05-22)

- 김정한 아태국장은 5.21.(목) 저녁(한국시간 기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고위관리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참석국 대표들과 각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 IORA : 인도양 연안 국가들간 경제·사회 분야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로, 한국은 2018년 11월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가입

- 회원국(22개국) :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디브, 호주, 이란, UAE, 예멘, 오만,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 대화상대국(10개국)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집트, 터키, 이탈리아

- 이번 회의에서 IORA 회원국들은 자국내 코로나 확산 현황과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역내 방역협력과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화상대국들의 방역 경험 공유와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 IORA 대화상대국들은 수십년간 유례가 없던 이번 전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와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IORA와도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초한 우리의 방역성과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한편, 이번 감염병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인도양 지역내 다수 국가들과 이들의 대화상대국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이번 감염병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내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환인도양 역내 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통합게시판 신설 (2020-05-25)

- 정부는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유 요청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방역협력 총괄T/F 통합게시판을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에 신설하였다.
  - \* 외교부 영문홈페이지 - Policy Information - Korea's Response to COVID-19
  - 통합 게시판을 각 분야별 수요자가 손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 방역협력 게시판(6개 주제별\*)(Sharing Korea's experience)과, 총괄 T/F 주관 웹 세미나(총 9차례 개최 예정) 영상 게시판(Special Webinar)으로 구성
    - \* △Key strategies(위기대응 주요전략) △TEST(진단검사) △TRACE(격리·역학조사) △TREAT(치료 및 환자관리) △Immigration(출입국관리) △Other policy measures(유관정책)
    - ▲ 외교부 홈페이지 메인에 팝업창 신설
    - ▲ Policy Information- Korea's Response to COVID 19신설
  - 통합 게시판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COVID-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en/>)에도 해당 통합게시판(Korea's Response to COVID-19)을 고정 게시하여, 외국의 수요자가 우리 국내 코로나 19 현황 및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
  - 통합게시판에는 5.25일 현재 코로나-19 대응 자료(30여건) 및 총괄 T/F 주관 2차례 웹세미나 영상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며, 향후 각 부처·기관별로 운영중인 웹사이트 링크 및 T/F를 통한 국제방역협력 결과물(영상, 정책자료 등)을 지속 게시해 나갈 예정
- 우리 정부는 △위기대응 전략총괄, △진단검사, △격리 및 역학조사, △치료/임상경험/환자

관리, △출입국 및 법률자문, △선거·경제정책 등 각 부처 및 기관 전문분야별로 현재까지 총 430여건의 국제방역협력(웹세미나, 영상회의, 유선회의, 자료제공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괄 T/F 통합게시판 신설로 그간의 협력 결과물을 국제사회와 더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주도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 (2020-05-26)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 차별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 화상회의를 5.26(화) 오전(파리시각)에 개최하였다.
  - \* Group of Friends for Solidarity and Inclus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SDG 4의 세부 목표(4.7)로 지정
    -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차별 등에 대처하여 관용, 인권, 성평등, 정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습득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능동적으로 참여·실천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 외교부는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
  -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세르비아, 세네갈이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
  - 출범 후에도 유네스코 여타 회원국들이 자

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 예정

-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출범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유엔에서 출범한 「보건안보 우호그룹 (5.12.)」 및 WHO 내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5.20.)」과 함께 유엔 차원의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 오늘 출범회의에는 강경화 외교장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외교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

- 우호국 그룹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세계시민교육 증진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차별과 혐오 행위가 상호 불신의 벽을 세워 위기 극복에 필요한 국제공조를 저해한다고 비판
- 유네스코 현장에 명시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쌓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
- 인간 존엄의 원칙에 기초한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에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편견에 의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는 인권의 근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역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호그룹 내 다양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 지향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강경화 장관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등 계기에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인들이 언어적, 물리적 공격을 받거나 차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

-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우호그룹 결성 관련 강경화 장관과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에 사의를 표하고,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룹 활동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

- 우호그룹 참여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방지 및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국 그룹 결성이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우호그룹 구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호그룹 출범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강화되고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하였다.

###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1차 민간자문회의 개최 (2020-05-27)

- 외교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보건안보 : 현 체제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1차 민간자문회의」를 5.27.(수) 오전 개최하였다.
- ※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는 △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감염병 대응 등 국제 보건 안보 협력 제고를 위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팀장으로 지난 4.29.

(수) 출범

- ※ 외교부 코로나 신국제협력 T/F는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보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민간 자문회의 개최
- 조세영 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국제환경하에서 어떻게 국제사회의 새로운 요청에 응답하고, 실질적 외교 역량을 강화해나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고, 참석 자문위원들에게 전 세계의 공동 과제로 부상한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방안과,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1차 민간자문회의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코로나19 극복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보건외교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해나가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국제기구 특히 WHO를 중심으로 한 현 국제보건협력 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과정에 대한 분석 및 향후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선진적 의료 시스템과 창의적인 IT 기술을 적극 활용한 방역 기법들이 큰 역할을 수행했음을 감안하여, 이번 자문회의에는 WHO 등 국제기구에서 여러 활동을 해온 국내 보건외교 전문가 뿐 아니라, 과학기술, 경제, 보건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하였다.
- ※ 이번 회의에는 △오명돈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손명세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장 △

지영미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 특별대표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 △김원준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 △김용준 성균관대 경영대학 학장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장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기획단장 등 총 10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

-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 현황, ▲WHO 체제의 진단 및 향후 개선과제 분석, ▲국제보건안보 협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 및 토의하였다.
-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국제협력 과정을 분석, 평가한 이번 회의는 당면한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다가오는 새로운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국제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총 300만불 이상 기여 계획 발표 (2020-05-27)**

-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5.26.(화) 23:00-02:00 (한국시간)간 개최된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하였다.
- \* 영문명: International Donors Conference in Solidarity with Venezuelan Refugees and Migrants in the Countries of the Region amid COVID-19
- ※ 2014년 베네수엘라 위기 발생 이후, 유럽연



계의 개방 유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공유 및 회원국 간 조율된 접근법 개발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이 포함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경제회복을 위한 부양책 등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역내 정보 공유 플랫폼 구상을 구체화하였고, △의료품을 포함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세계적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을 혁신적인 수단으로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의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필수 인력이동 원활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수요 재개 효과가 큰 기업인의 국제적 이동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관련 필수품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는 한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APEC내 주요 우선순위 검토 논의에서 우리측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주도로 설립된 디지털혁신기금\*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기여를 요청하였다.
- \* 2018년 APEC 정상회의(파푸아뉴기니) 시 우리 정상이 창설을 제안하여, ‘디지털 혁신

신(Digital Innovation)’ 관련 사업을 위한 APEC 기금 설립 완료(2019.3월)

- 한편 참석 회원국들은 1994년 보고르 목표\* 이후 APEC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미래비전(Post-2020 Vision) 논의를 지속하고, 11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등을 포함한 향후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 \* 보고르 목표(Bogor Goal) : 제2차 APEC 정상회의(1994.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2020년까지의 달성 목표로 제시
- ※ 202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주요 일정
  - 정상회의(AELM) : 11.12.(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 11.8.(일)-9.(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내 코로나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마련을 추진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활동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호에서는 ‘소수자’(Minorities)에 관한 학술 도서 및 논문을 소개합니다.

○ 주요 도서 및 논문

- Arp, B.,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Bilateral and Multilateral Texts with Commentary*, Leiden, Nijhoff, 2008.
- Hofmann, R. (et al.)(eds.), *Rahmenübereinkommen zum Schutz Nationaler Minderheiten, Handkommentar*, Baden-Baden, Nomos, 2015.
- Hofmann, R. (et al.) (eds.),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 A Commentary*, Leiden, Brill, 2018.
- Khan, K.A., *Minorities and International Law*, New Delhi, Mittal Publications, 2016.
- Khan, B.U. and M.M.Rahman, *Protection of Minorities: Regimes, Norms and Issues in South Asia*,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2.
- Malloy, T.H. and U. Caruso (eds.), *Minorities, Their Rights, and the Monitoring of the European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Essays in Honour of Rainer Hofmann*, Leiden, Nijhoff, 2013.
- Merino, N., *Minorities and the Law*, Chicago, Greenhaven Press, 2015.
- Shahabuddin, M., *Ethnicity and international law : Histories, Politics and Practi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Wei, H.H., *A Dialogical Concept of Minority Rights*, Leiden, Brill Nijhoff, 2016.
- Weller, M. (ed.), *Universal Minority Rights: a Commentary on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eaty Bo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Weller, M. (ed.), *The Rights of Minorities in Europe: a Commentary on the European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Agarin, T., and K. Cordell, *Minority Rights and Minority Protection in Europe*,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6.
- Ahrén, M., *Indigenous People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Caruso, U., and R. Hofmann (ed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Minorities : An Academic Account on the Occasion of its 20th Anniversary (1992-2012)*, Leiden, Brill Nijhoff, 2015.
- McDougall, G., *The First United Nations Mandate on Minority Issues*, Leiden, Brill Nijhoff, 2015.
- Merino, N. (ed.), *Minorities and the Law*, Greenhaven Press, a part of Gale, Cengage Learning, 2015.
- Schliemann Radbruch, C., *Das Völkerrechtliche Institut der Autonomie Innerstaatlicher Gruppen*, Tübingen, Mohr Siebeck, 2017.
- Socha, P., *Definitionen und Anerkennung Substaatlicher Gruppen im Völkerrecht: Eine Untersuchung der Rechtlichen Anwendung völkerrechtlicher Konstruktionen Substaatlicher Kollektiver Identitäten und aktueller Entwicklungen im Intergovernmental Committee der WIPO*, Göttingen,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2017.
- Swepston, L., *The Foundation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o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 The Preparatory Documents of The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and Its Development Through Supervision*, Leiden, Brill, 2015.
- Thürer, 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Minorities : Challenges in Practice and Doctrine*, Zurich, Schulthess, 2014.
- Watson, I., *Indigenous Peoples as Subjects of*

- International Law*, Milton Park, Abingdon, Oxon, Routledge, 2018.
- Alfredsson, G., “Minority Rights and the UN”, in U. Caruso and R. Hofmann (ed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Minorities : An Academic Account on the Occasion of its 20th Anniversary (1992-2012)*, Leiden/Boston, Brill Nijhoff, 2015. pp. 19-45.
- Barten, U., “What’s In a Name? Peoples, Minorities, Indigenous Peoples, Tribal Groups and Nations”, *JEMIE: Journal on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14 (2015), No. 1, pp. 1-25.
- Craig, E., Who Are the Minorities - The Role of the Right to Self-Identify within the European Minority Rights Framework, In: *JEMIE : Journal of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Vol. 15, No. 2 (2016), pp. 6-30.
- Dessalegn, B., “Comment: The Normative Framework of the African Human Rights Regime on the Rights of Minorities”, *Mizan Law Review*, 8 (2014), No.2.
- Ducoulombier, P., “The Protection of Sexual Minorities in European Law”, in F. Ippolito and S. Iglesias Sánchez, *Protecting Vulnerable Groups : The European Human Rights Framework*, Oxford, Hart Publishing, pp. 201-223.
- Eide, A., “United Nations Standard-setting Regarding Rights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Europa Ethnica*, 71 (2014), No. 3/4, pp. 51-61.
- Ferrari, H., *Partnership For All? Impact of Eastern Partnership on Minorities*,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9 June 2014.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No Peace Without Justice and the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 Between the Millstones: Iraq’s Minorities Since the Fall of Mosul, 27 February 2015.
- Girmay, A., “Constitutional Perils of Ethiopia’s Ethnic Federalism: Insights from Self-Determination Principle in Case of ‘Kunama’ Ethnic Mino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Development*, 3(2015), No. 4, pp. 166-173, april 2015.
- Kuwali, D and G. Alfredss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Minorities: The Question of Protection by Kin-States”, *Europa Ethnica*, 71 (2014), No. 3/4, pp. 62-68.
- Mihlar, F., ‘Everything Has Shattered’ – Rising Levels of Violence Against Shi’a in Pakistan,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11 June 2014.
- Nyambura, C., Looma Ooyaan - No One Cries for Them: The Situation Facing Somalia’s Minority Women,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and IIDA*, 30 January 2015.
- Oeter, S., Conventions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In:Schmahl, S., and M. Breuer (eds.), *The Council of Europe : Its Law and Poli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542-571.
- Pentikäinen, M., “Social Integration of “Old” and “New” Minorities in Europe in Views of International Expert Bodies Relying on Human Rights: Contextual Balancing and Tailoring”, *JEMIE: Journal on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14 (2015), No. 1, pp. 26-47.
- Peroni, L., Minoritie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Democratic Pluralism unfolded, in J. Boulden and W. Kymlicka (eds.), *International Approaches to Governing Ethnic Diver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25-50.
- Rajji, R. el, *The Leaves of One Tree: Religious*

Minorities in Lebanon,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10 December 2014.

Raouf, A., *Still Dispossessed: The Battle of the Chagos Islanders to Return to Their Homeland*,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26 March 2014.

Xanthaki, A., “Indigenous Rights at the United Nations: Their Impact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Europa Ethnica*, 71 (2014), No. 3/4, pp. 69-77.

Rehman, J., “Adjudicating on the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n the Muslim World”, in J.A. Green and C.P.M. Waters (eds.), *Adjudica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 Essays in Honour of Sandy Ghandhi*, Leiden/Boston, Brill Nijhoff, 2015, pp. 119-147.

Scantamburlo, M. and G. Pallaver, *Between Secession and “Full Autonomy”: Party Competition over Self-Determination in South Tyrol*, *EvoNat* Research Brief, No. 3, November 2015.

Varenes, F. De, “R2P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in P. Hilpold (ed.), *Responsibility To Protect :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Leiden/Boston, Brill Nijhoff, 2015, pp. 274-292.

Vezbergaitė, I., *Self-Determination of the Kurdish People: Undermining the Unity of the «Turkish Nation»?*, IFF, Working Paper Online, No. 9, July 2015.

Wang Linzhu, “The Identification of Minorities in China”,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16 (2015), No. 2, pp. 1-21.

Exploring the Legal Framework for Minor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An IACHR perspective, december 2015.

## ○ 기타 문서

### UN

Capotorti, F., Study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U.N. Doc E/CN.4/Sub.2/384/Rev.1.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Council of Europe Thematic Compilation of Commentarie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Framework Convention

Council of Europe Thematic Commentaries of the Advisory Committe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1985 (CoE)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1992 (Co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E) The relevant article for minorities is article 14, regarding non-discrimination, technically, this article must be claimed together with one of the other articles of the Convention

The European Outline Convention on Transfrontier Cooperation (1980) (CoE) Monitored by the Congress of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in Europe, it has also been important for minority rights protection, see Malloy.

Venice Commission, Report on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National Minorities by their Kin-State, 2001.

Venice Commission, Report on Non-Citizens and Minority Rights, 2006

Venice Commission, Report on Dual Voting for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Minorities, 2008

## EU

The Copenhagen 'Criteria' 1993. Accession conditions for applicant states.

The Stability Pact 1995. Most notably, it was designed to offer a framework in which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might attempt to resolve border disputes, address problems of minorities and develop relations with Russia in a post-Soviet era.

The Amsterdam Treaty 1997 (article 13) and the Equality Directives (Race Directive or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and the Equal Employment or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2000 (article 21; EU Network of Independent Experts on Fundamental Rights 2002-2005)

The Reformed Lisbon Treaty 2009 (article 2)

## OSCE

The Copenhagen Document 1990 (CSCE, now OSCE). I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European history very specific and directional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Not legally binding.

Th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OSCE) 1992. Recommendations and/or guidelines:

The Oslo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Linguistic Rights of National Minorities & Explanatory Note, 1998.

The Lund Recommendations on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National Minorities in Public Life & Explanatory Note, 1999.

The Bolzano/Bozen Recommendations on National Minorities in Inter-State Relations, 2008.

The Ljubljana Guidelines on Integration of Diverse Societies, 2012.

## ○ 학술지 및 연속간행물

*Bedrohte Völker* 241406749

*Ethnies (catalogue)*

*Ethnopolitics (no subscription, direct link Taylor & Francis)*

*Europa Ethnica (catalogue)*

*Europäisches Journal für Minderheitenfragen*

*European Autonomy and Diversity Papers (e-journal)*

*European Centre for Minority Issues (ECMI) Working Paper*

*European Centre for Minority Issues (ECMI) Reports*

*European Yearbook of Minority Issues*

*International Annual Report (State of the World's Minorities)*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JEMIE : Journal on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Journal on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MigraLex*

*Der Minderheitenschutz im Östlichen Europa*

*Minorités linguistiques et société / Linguistic Minorities and Society (Canada)*

*Pogrom : Zeitschrift für bedrohte Völker*

*Scholar : St. Mary's Law Review on Minority Issues*

## ○ 데이터베이스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inorities, International Protection*, by Kristin Henrard. <https://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847?rskey=oYJJas&result=2&prd=EPIL>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inority Protection System between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by Anna Meijknecht.

<https://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848?rskey=uONnPm&result=5&prd=EPIL>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inorities, European Protection, by Rainer Hofmann. <https://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

[-e846?rskey=uONnPm&result=1&prd=EPIL](https://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846?rskey=uONnPm&result=1&prd=EPIL)  
Minority Rights Information System (MIRIS) Database.  
<http://miris.eurac.edu/mugs2/index.jsp?TopBarItem=Home>

World Directory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https://minorityrights.org/6065/the-directory/the-directory.html>

〈국제회의〉

○ **UN Peacekeeping Operations Conferen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European Law at the Faculty of Law, Pavol Jozef Safarik University in Kosice is host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N Peacekeeping Operations – Past and Future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Conference.’ The conference will provide a forum for international experts and practitioners to critically discuss the past and future challenges related in particular to the UN GA Res. Uniting for Peace, legal and other aspects of the UN peacekeeping force. The event will take place from 21 – 22 May 2020 at the Rectorate of the Pavol Jozef Safarik University in Kosice, Slovakia. Interested authors are invited to register and submit an abstract of an original paper that has not yet been published nor accepted for publication before 15 April 20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mierove-operacie.pravo.upjs.sk/>를 참고

○ **Cambridge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The Ninth Annual Cambridge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will take place as a series of free webinars during 30 April – 2 May 2020. The event will address the very timely theme of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Risks: Current Challenges in Theory and Practice’. Registration is required and almost all of the events are now fully subscribed, however a very small number of tickets remain for Panel 7 on ‘Regulat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Scientific and Technical Paradigms in International Law’.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cilj.co.uk/conference/>를 참고

○ **Call for Papers: International Society of Public Law.**

The Italian chapt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ublic Law welcomes paper and panel submissions to its third annual conference, on the theme “The future of the State”.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if the COVID-10 situation so allows, in Bologna on 20 – 21 November 2020. Researchers in all career stages, from all areas of law, sociology, political science, economics and informatics are invited to participate by submitting a paper or panel proposal. Proposals, in Italian or English,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conference website ([www.iconsitalia2020.it](http://www.iconsitalia2020.it)) by 30 August 2020. Panel descriptions should not exceed 1000 words and paper abstracts should not exceed 800 words. The outcome of the selection procedure will be communicated by 30 September 20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consitalia2020.it/>를 참고

○ **Third Session of the IFHV’s and Verfassungsblog’s Online Discussion Series “COVID-19 Crisis from a German, Europe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third session of the IFHV’s and Verfassungsblog’s COVID-19 online discussion series reflects on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pandemic for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Universally respected but temporarily neglected?” – COVID-19 as a crisis for human rights and multilateralism” takes place on 26 May 2020, 4 pm (CET) with guests including Philip Alston, Marco Sassòli, Gian LucaBureci and Nico Krisch.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fhv.de/documents/other/IFHV\\_Verfassungsblog\\_COVID19\\_Online\\_Discussions\\_lang.pdf](http://www.ifhv.de/documents/other/IFHV_Verfassungsblog_COVID19_Online_Discussions_lang.pdf)를 참고.

〈국제법 관련 강의〉

○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Winter Courses on International Law**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is proud to announce the opening of registrations for the third edition of the Winter Courses on International Law as of 1 May 2020. The programme will take place from 11 – 29 January 2021. All applicants are required to register online using the registration forms. A limited amount of scholarships are available. Registrations at the full fee and Directed Studies are accepted until 30 September 2020. Scholarship applications are accepted until 31 July 20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gueacademy.nl/>를 참고

○ **Thessaloniki Summer Courses on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The Kalliopi Kouf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Law announces the 6th session of the Thessaloniki Summer Courses on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from 24 June – 3 July 2020 in Thessaloniki, Greece, on the topic of “Social Right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ory to Practice”. The programme is open to advanced law student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Speakers include Manfred Nowak, Fons Coomans (TBC), Zdzislaw Kedzia, Christina Binder, Ralph Wilde, Eric de Brabandere, Christina Deliyianni-Dimitrakou, Aristoteles Constantinides, Karin Lukas, Amaya Úbeda de Torres, Solon Solomon.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oufafoundation.org/announcement-of-2020-summer-courses/>를 참고

〈기타 안내〉

○ **TAU Law International Law Workshop Special Online Roundtable**

TAU Law International Law Workshop Special Online Roundtable: Global Health Governanc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the Shadow of COVID-19. The roundtable will take place on 27 April 2020 at 16:15 Tel Aviv Time. Join via Zo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cebook.com/events/256711835718716/>를 참고.

○ **Call for Pape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is issuing a worldwide call for papers for an Agora symposium to be published in the October 2020 issue of the Journal. The topic –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the Global Pandemic” – recognizes that the present crisis raises foundational questions fo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at extend beyond the immediate challenges to public health and economic stability.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law/information/worldwide-call-for-papers-the-international-legal-order-and-the-global-pandemic>를 참고

○ **Call for Papers: Concepts and Methods Workshop**

Paper proposals are invited for a PluriCourts-iCourts “Concepts & Methods” Workshop on the topic Wh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Defer to States, to be held in Oslo, Norway, on 24 – 25 November 2020.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Cs) sometimes allow national actors a certain discretion in thei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illustrate: The WTO Appellate Body has granted states some latitude to restrict trade under reference to protection of ‘public morals’ (GATT, article XX (a));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ometimes grant states a ‘margin of appreciation’ in apply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uch deference by ICs towards states raises several theoretical,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for philosophical, legal and social science scholarship: when do ICs defer, why, what are the effects – and how should we assess such deferenc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jiltalk.org/announcements-un-audiovisual-library-of-international-law-avl-cfp-concepts-and-methods-workshop-cfp-gojil-student-essay-competition/>를 참고

○ **Call for Contributions –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Current levels of Representation of Women in Human Rights Organs and Mechanisms**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has extended its deadline to 29 May 2020 to receive contributions and inputs from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Member State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special procedure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ivil society and academic institutions, for its report on Current levels of representation of women in human rights organs and mechanism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debate on improving gender balance in international courts and organs. In June 2019, the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Resolution

41/6, in which it requested the Advisory Committee to prepare a report,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G) and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current levels of representation of women in human rights organs and mechanisms such as the Advisory Committee, the treaty bodies and the special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Rapporteur of the Advisory Committee leading the drafting of the report is Professor Elizabeth Salmon from Peru.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AdvisoryCommittee/Pages/LevelsRepresentationWomen.aspx>를 참고

○ **Behavioural Approaches in International Law**

A series of workshops at Leiden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Hamburg will build on the nascent literature that aims to integrate empirical insights regarding the bounded rationality of decision-makers from neighbouring disciplines to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law. The first workshop – held at Leiden Law School on 26 November 2020 – will act as a platform at which scholars can outline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ir project, their methodology, and their preliminary findings. The second workshop – held at the Institute of Law and Economics in Hamburg in early summer 2021 – will give speakers an opportunity to gain feedback on a more developed piece of research, which will form the basis of an article.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iversiteitleiden.nl/nieuws/2020/02/call-for-papers-behavioural-approaches-in-international-law>를 참고

○ **2020 Rosalyn Higgins Prize**

The Law &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now invites submissions for the 2020 Rosalyn Higgins Prize. The Rosalyn Higgins Prize is an annual prize which awards EUR 1.000 of Brill book vouchers and a one-year LPICT subscription to the author of the best article on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ither focusing solely on the ICJ or with the ICJ as one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consideration. The winning article will also be published in LPICT and made freely available online for ninety days to maximize its dissemination.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jiltalk.org/announcements-rosalyn-higgins-prize-un-peacekeeping-operations-conference-un-audiovisual-library-of-international-law/>를 참고

## 〈강의시리즈〉

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의 「강의시리즈」(the Lecture Series)는 다양한 지역, 법체계, 문화 및 특정 법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강의를 제공하며, 거의 모든 국제법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 및 첨부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시리즈」의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지 ([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International Law > Centers for International Law

“Introduction to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Work”, Dr. Gérardine Goh Escolar (First Secretary,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 ○ Law of Armed Conflict

“Crímenes de Guerra”, Sr. Rafael Prieto Sanjuán (Profesor,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 ○ Peace and Security > Terrorism

“Tensions between Sanctions, Counter-terrorism Measures and Humanitarian Action”, Ms. Emanuela-Chiara Gillard (Senior Research Fellow, Oxford Institute for Ethics, Law and Armed Conflict)

## 〈기초강의(Mini-Series)〉

유엔국제법시청각도서관(Audiovisual Library of International Law)의 「기초강의」(Mini-Series)는 국제법의 기본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국제법학자가 국제법의 핵심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강의 및 첨부 자료는 강사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엔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강의」의 모든 강의는 유엔 국제법 시청각 도서관홈페이지 ([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http://legal.un.org/avl/intro/welcome_avl.html))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Law of Treaties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Lights and Shadows”, Mr. Santiago Villalpando (Former Chief Treaty Section Office of Legal Affairs United Nations)

### ○ Law of State Responsibility > Droit de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English)

M. Mathias Forteau (Professeur de droit public Université Paris Ouest, Nanterre La Défense; Memb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des Nations Unies)

- Partie I - Sources et évolu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 Partie II - La réclamation en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 Partie III - Les conditions d’engagement de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 Partie IV - Le contenu et la mise en œuvre de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 Law of State Responsibility > La Responsabilidad del Estado (Español)  
Sr. Jorge E. Viñuales (Profesor Titular de la Cátedra “Harold Samuel” de Derecho y Política Ambiental, Universidad de Cambridge)

- Parte I - Aspectos generales de la responsabilidad estatal por hechos internacionalmente ilícitos
- Parte II - Las condiciones que desencadenan la responsabilidad del Estado
- Parte III - Las consecuencias jurídicas de un hecho internacionalmente ilícito y la invocación de la responsabilidad de un Estado

○ Law of the Sea > The Law of the Sea on the Thirtie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 (English)  
Mr. Tullio Treve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Milan; Former Judg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Part I - Introduction: The Formation of the Contemporary Law of the Sea: The Codification Era
- Part II -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Part III - “Transversal” Approach and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Interest of All States
- Part IV - The Present Post-Codification Era
- Part V - The Law of the Sea after UNCLOS: Open Challenges
- Part VI - Concluding remark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Français)  
Mme 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Geneva; Arbitrator and Counsel befor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 Partie I - La naissance du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et sa consécration
- Partie II - Le développement normatif du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 La question des sources du droit de l’environnement
- Partie III - À propos de certaines caractéristiques du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 Partie IV - Les principes du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Section 1/3)
- Partie IV - Les principes du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Section 2/3)
- Partie IV - Les principes du droit international de l’environnement (Section 3/3)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Droit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Français)

Mme Hélène Tigroudja (Professeure de droit international, Aix-Marseille Université; Membre du Comité des droits de l’homme des Nations Unies)

- Partie I - Introduction en droit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 Partie II - Les sources hybrides du droit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 Partie III - Les mécanismes de protection et de mise en œuvre des droits de l’homme
- Partie IV - L’herméneutique du droit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 Partie V - La mise en œuvre des droits de l’homme en droit interne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glish)  
Mr. Marco Sassòli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Geneva, Switzerland)

- Part I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Part II - The Field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 Part III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Le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Français)  
M. Yves Sandoz (Professor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iversity of Fribourg and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 Partie I - Le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

des origines à la Seconde Guerre mondiale

- Partie II - Les Conventions de Genève de 1949 et leurs protocoles additionnels
- Partie III - Le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 développements récents et perspectives d'avenir

○ International Trade Law > Introduction au droit de l'OMC (Français)

M. Makane Moïse Mbengue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Geneva)

- Partie I - L'histoire du GATT/de l'OMC
- Partie II - L'OMC comm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 Partie III - La structure juridique de l'OMC
- Partie IV - Les caractéristiques du système de règlement des différends de l'OMC
- Partie V - Les principes fondamentaux du système GATT/OMC

이번 호에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유엔의 주요 일정과 향후 지속 또는 개최 예정인 유엔의 주요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유엔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유엔 홈페이지 『Calendar of Conferences and Meetings』 (<https://conf.un.org/DGAACS/meetings.nsf>)를 참고.

※ 일정표 관련 정보는 날짜 및/또는 장소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엔사무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계로 유엔 회의 일정에 많은 변경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 7월

-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Fifty-third session\*, New York, 6 July-21 August.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ntegration segment, New York, 6 Jul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Situations, Twenty-sixth session, Geneva, 6-10 July.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eventy-second session, second part, Geneva, 6 July-7 August.
- International Law Seminar, Fifty-sixth session, Geneva, 6-24 July.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wenty-sixth session, Part II, Kingston, 6-31 July.
- Open-ended working group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Third session, New York, 6-10 July.
- UNCITRAL, Fifty-third session, New York, 6-17 July.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Eleventh session, Vienna, 7-8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eventh session, New York, 7-13 July.
- General meet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secretaria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League of Arab States and its specialized organizations, Geneva, 7-9 July.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Thirty-ninth session, Geneva, 8-10 July.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f Government Experts on Technical Assistance, Twelfth session, Vienna, 9-10 July.
- Committee against Torture, Seventieth session, Geneva, 13-24 July.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sessional working group, Seventy-eighth session, Geneva, 13-17 July.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9/1, 2nd session, Vienna, 13-15 July.

- General meeting of the organizations an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and its subsidiary organs, Geneva, 13-15 July.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se of mercenaries as a means of violating human rights and impe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Fortieth session, New York, 13-17 July.
-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Sixty-seventh session, Vienna, 13-17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High-level segment, including the three-day ministerial meeting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ouncil, New York, 14-17 July.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problems arising from the accumulation of conventional ammunition stockpiles in surplus, Third session, New York, 20-24 July.
- Board of Auditors, Seventy-fourth regular session, New York, 21-22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nagement segment, New York, 21-22 July.
-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Fifty-first session, New York, 22-24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23 July.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23 July.
- Intergovernmental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Fif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irst Session, New York, 27-30 July.
-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Ninety-first session, Venue to be determined, 27 July-7 August.
-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Sixty-seventh session, New York, July.
-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Standing Committee (1 meeting), New York, July.

## 2020년 8월

- Conference on Disarmament, Third part, Geneva, 3 August-18 September.
-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Tenth session, New York, 5-7 August.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102nd session, Geneva, 5-27 August.
- Workshop on the Implementation of GA resolutions 64/72, 66/68 and 71/123, New York, 5-6 August.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CCW),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CCW on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Area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2nd part, Geneva, 10-14 August.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Twenty-seventh session, Geneva, 10-14 August.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wenty-fourth session, Geneva, 17 August-11 September.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Third session, Geneva, 17-21 August.

-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Twenty-fifth session, Geneva, 17-21 August.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Working Group B, 55th session, Vienna, 24 August-4 September.
- Meeting of the Experts of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Annual session, Geneva, 25 August-3 September.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mplementation Review Group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First resumed eleventh session, Vienna, 31 August-2 September.
- Executive Board of UNDP/ UNFPA/ UNOPS,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31 August-4 September.
- Open-ended ad-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representative of all regions to elaborat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Organizational session, New York, August/August.

## 2020년 9월

-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Eleventh session, Vienna, 2-4 Septem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ighty-fifth session, Geneva, 7-25 September.
- Committee on Conferences, Substantive session, New York, 8-14 Septembe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the Smuggling of Migrants, Seventh session, Vienna, 8-9 September.
- UNICEF Executive Board,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8-11 September.
-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orking Group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 Women and Children, Tenth session, Vienna, 10-11 September.
-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Fall session, New York, 14 September-11 December
-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Nineteenth session, Geneva, 14-25 Septem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essional working group, Fourteenth session, Geneva, 14-18 September.
- Executive Board of UN-Women, Second regular session\*\*, New York, 14-16 September.
- Human Rights Council, Forty-fifth session, Geneva, 14 September-2 October.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14-18 September.
- UNCTAD, Working Party on the Strategic Framework and the Programme Budget, Eighty-first session, Geneva, 14-16 September.

- General Assembly,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15 September-December
- UN-Habitat, Executive Board 2nd 2020 regular meeting Nairobi 15-17 September.
- UNEP,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151st meeting, Nairobi, 17 September.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frica, Thirtieth meeting, Addis Ababa or a capital in the region, 21-25 September.
- General Assembly,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to commemorate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21 September.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122nd session, Geneva, 21-30 September.
- IAEA, General Conference, 64th session, Vienna, 21-25 September.
- UNCITRAL,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Dispute Settlement), Seventy-second session, Vienna, 21-25 September.
- General Assembly, General debat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22 September-October.
- General Assembly,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occasion of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New York, 23 September.
- General Assembly,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occasion of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New York, 23 September.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ixty-eighth session, Geneva, 28 September-16 October.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e-sessional working group, Eighty-seventh session, Geneva, 28 September-2 October.
- IAEA, Board of Governors, Vienna, 28 September.
- UNCITRAL, Working Group I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rty-fifth session, Vienna, 28 September-2 October.
- General Assembly,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ew York, September.
-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September/November.
- General Assembly, Fourth Committee, Seventy-fifth session, New York, September/November.
- UNRWA, Advisory Commission (1 day), Venue to be determined, September.

---

● **국제법 동향과 실무** ● 2020, Vol. 19, No. 2 통권 제57호

---

**발행일** 2020년 6월 25일  
**발행처** 외교부 국제법률국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전화 : (02)2100-7536  
전송 : (02)2100-7967  
전자우편 : shkwon15@mofa.go.kr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161-08

**인쇄처** 주식회사 에이퍼브 (02)2274-3666

---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 본지와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